

# PART 3

##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1절 마약류의 개요

2절 2017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5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6절 환각물질 흡입사범 범죄동향 및 분석

## 제1절 마약류의 개요

### 1.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 간 : 2017. 1. 1. ~ 2017. 12. 31.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마약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2. 범죄유형

- 마약류와 그 원료의 밀조, 밀매 및 밀수 행위
-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 3. 기타 특이사항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2017. 4. 1. ~ 6. 30.)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2017. 4. 중순 ~ 7. 하순)

## 제2절 2017년도 마약류사범 검거내역

### 1. 마약류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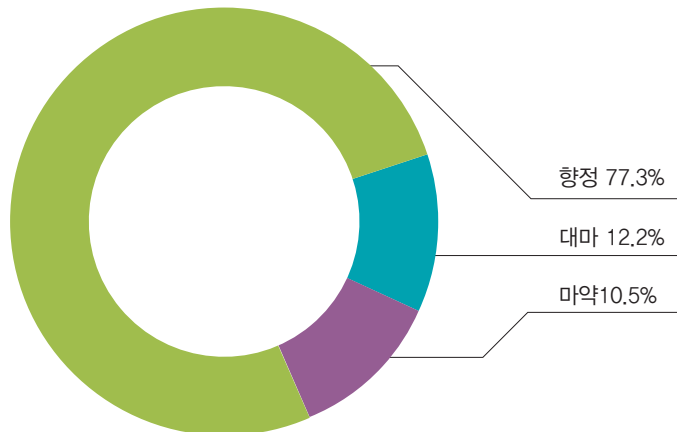
[표 3-1] 마약류별 단속 현황

마약류	구분	건수	합계(명)	인원(명)	
				구속	불구속
합계		12,069	14,123(100)	2,763	11,360
마약		1,397	1,475(10.5)	49	1,426
향정		9,309	10,921(77.3)	2,482	8,439
대마		1,363	1,727(12.2)	232	1,495

※ ( )는 구성비 %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4,123명으로 전년대비 0.6%(전년도 14,214명) 감소함
  - 마약사범은 1,475명으로 전년대비 6.7%(전년도 1,383명) 증가함
  - 향정사범은 10,921명으로 전년대비 7.0%(전년도 11,396명) 감소함
  - 대마사범은 1,727명으로 전년대비 20.3%(전년도 1,435명) 증가함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 2. 범죄유형별 내역

[표 3-2]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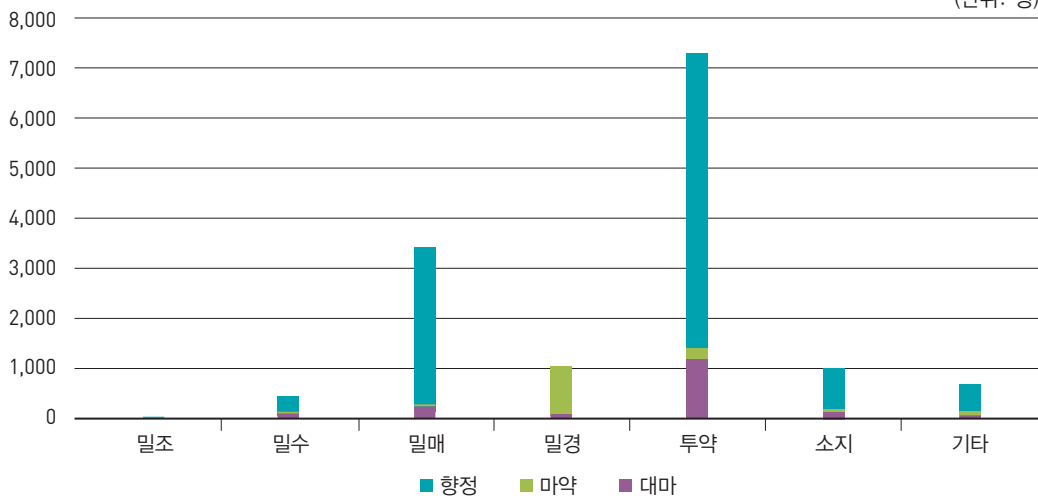
마약류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3 (0.0)	481 (3.4)	3,471 (24.6)	1,030 (7.3)	7,346 (52.0)	1,002 (7.1)	790 (5.6)	14,123 (100)
마약	0	17	39	930	275	58	156	1,475
향정	3	354	3,201	0	5,965	829	569	10,921
대마	0	110	231	100	1,106	115	65	1,727

※ ( )는 구성비 %

- 전체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0.6% 감소하였고, 공급사범도 전년대비 2.0% 감소함
- 투약사범은 7,346명(전년도 7,329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2.0%(전년도 51.6%)를 점유함
-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3,955명(전년도 4,036명)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28.0%(전년도 28.4%)를 점유함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 3. 청별 내역

[표 3-3] 청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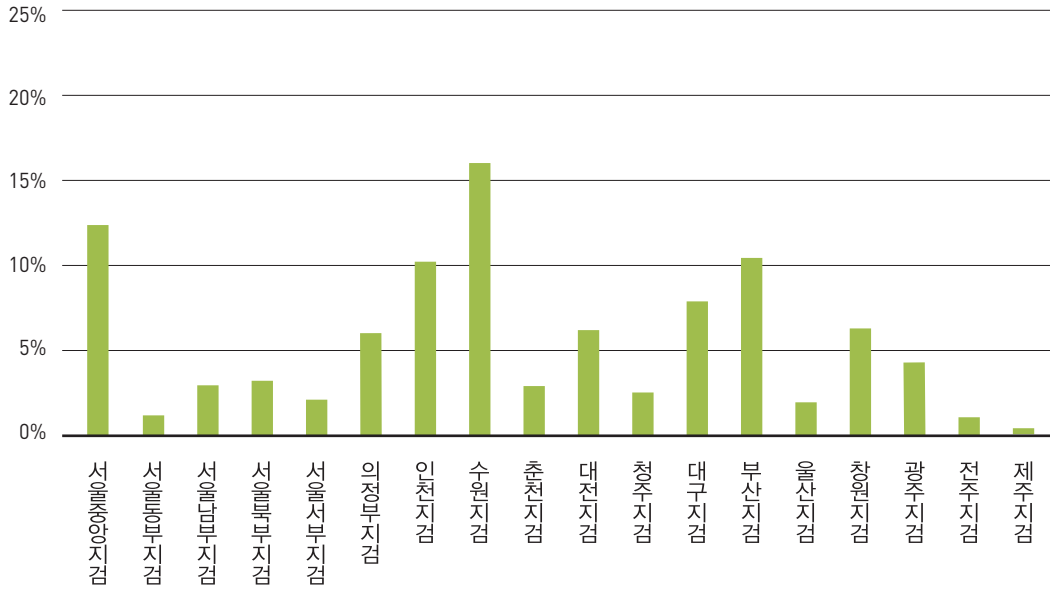
(단위: 명)

청별	구분	2016		2017		증감률 (%)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계		14,214	100	14,123	100	-0.6
서울중앙지검		1,824	12.9	1,757	12.4	-3.7
서울동부지검		213	1.5	241	1.7	13.1
서울남부지검		436	3.1	452	3.2	3.7
서울북부지검		403	2.9	478	3.4	18.6
서울서부지검		342	2.4	331	2.3	-3.2
의정부지검		931	6.5	846	6.0	-9.1
인천지검		1,741	12.2	1,425	10.1	-18.2
수원지검		2,166	15.2	2,298	16.3	6.1
춘천지검		458	3.2	464	3.3	1.3
대전지검		872	6.1	878	6.2	0.7
청주지검		421	3.0	360	2.5	-14.5
대구지검		1,075	7.6	1,107	7.8	3.0
부산지검		1,299	9.1	1,462	10.4	12.5
울산지검		260	1.8	276	2.0	6.2
창원지검		894	6.3	918	6.5	2.7
광주지검		621	4.4	574	4.1	-7.6
전주지검		187	1.3	172	1.2	-8.0
제주지검		71	0.5	84	0.6	18.3

※ 지검 실적에 관내 지청분 및 경찰 송치분 포함

- 청별 단속 점유율은 재경지검(서울중앙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포함) 23%, 수원지검 16.3%, 부산지검 10.4%, 인천지검 10.1%, 대구지검 7.8% 순으로 전체 마약류사범의 55.4%(전년도 56.7%)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됨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 4. 마약류 월별 단속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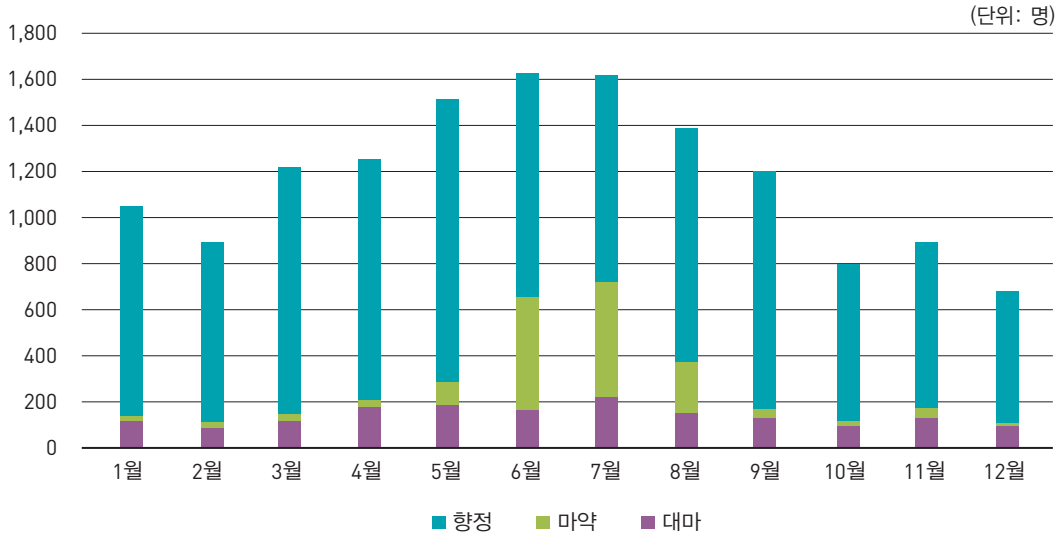
[표 3-4] 마약류 월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월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구성비	
합계		1,475	10,920	1,728	14,123	100
1월		22	922	115	1,059	7.5
2월		26	780	85	891	6.3
3월		31	1,071	116	1,218	8.6
4월		22	1,049	183	1,254	8.9
5월		98	1,225	187	1,510	10.7
6월		468	972	182	1,622	11.5
7월		496	896	221	1,613	11.4
8월		199	1,012	176	1,387	9.9
9월		46	1,022	132	1,200	8.5
10월		17	681	99	797	5.6
11월		34	719	138	891	6.3
12월		16	571	94	681	4.8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6월(11.5%)이 가장 높으며 이어서 7월(11.4%), 5월(10.7%)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 5. 기관별 단속내역

[표 3-5] 기관별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기관별	검찰	경찰	합계
전체 마약류사범	5,190	8,933	14,123
	(36.7)	(63.3)	(100)
마약류 공급사범	1,719	2,236	3,955
	(43.5)	(56.5)	(100)

※ ( )는 구성비 %

-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36.7%, 경찰 63.3%임
- 적발 마약류사범은 전년대비 검찰 1.9%(전년도 5,294명) 감소, 경찰 0.1%(전년도 8,920명) 증가함
- 마약류 공급사범은 전년대비 검찰 10.7%(전년도 1,926명) 감소, 경찰 5.9%(전년도 2,110명) 증가함

## 6.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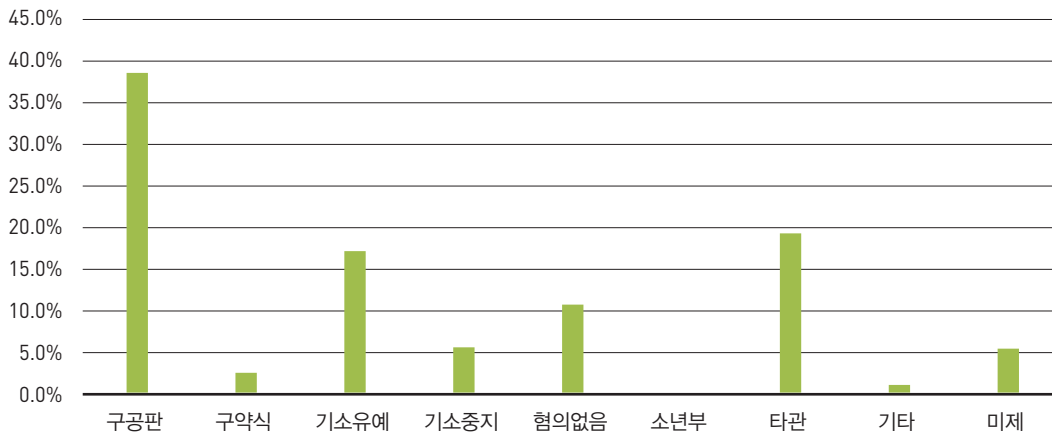
[표 3-6]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마약류	처리계 <sup>1)</sup>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기타	
합계	15,219	5,883	354	2,603	841	1,607	6	2,909	208	808
	(100)	(38.7)	(2.3)	(17.1)	(5.5)	(10.6)	(0.0)	(19.1)	(1.4)	(5.3)
마약	1,479	60	93	1,094	29	90	0	48	44	21
	(100)	(4.1)	(6.3)	(73.9)	(2.0)	(6.1)	(0.0)	(3.2)	(3.0)	(1.4)
향정	11,919	5,141	200	1,135	742	1,358	6	2,525	146	666
	(100)	(43.1)	(1.7)	(9.5)	(6.2)	(11.4)	(0.1)	(21.2)	(1.2)	(5.6)
대마	1,821	682	61	374	70	159	0	336	18	121
	(100)	(37.5)	(3.4)	(20.5)	(3.8)	(8.7)	(0.0)	(18.5)	(1.0)	(6.6)

※ ( )는 구성비 %

[그림 3-5]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1) 처리계는 구수(2017년 이전 접수된 사건)를 포함한 수치임

-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8.7%로 전년대비 2.8% 증가, 구약식률은 2.3%로 전년대비 15.3% 감소, 기소유예율은 17.1%로 전년대비 11.9% 증가함
-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 43.1%(전년도 43.1%), 대마사범 37.5%(전년도 32.0%), 마약사범 4.1%(전년도 3.4%)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구약식률은 마약사범 6.3%(전년도 8.6%), 대마사범 3.4%(전년도 3.4%), 향정사범 1.7%(전년도 2.1%) 순으로 나타남
- 마약류별 기소유예율은 마약사범 73.9%(전년도 74.2%), 대마사범 20.5%(전년도 19.6%), 향정사범 9.5%(전년도 8.6%) 순으로 나타남

## 7. 주요 마약류 압수물 내역

[표 3-7] 주요 마약류별 압수물 현황

(단위: g)

마약류		구분	2016	2017	증감률(%)
합계			117,219	75,981	-35.2
마약	헤로인		0.03	3.73	12,333.3
	생아편		0	537	
	코카인		10,943	131	-98.8
향정	메트암페타민		28,687	30,463	6.2
	MDMA		1,017	688	-32.4
	YABA		703	2,583	267.4
	JWH-018 및 그 유사체		191	184	-3.7
대마	대마초		75,525	40,125	-46.9
	대마수지(해시시)		153	1,267	728.1

- 2017년 주요 마약류 압수실적은 총 75.9kg으로 전년대비 35.3%(전년도 117.0kg) 감소하였으나,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258.9kg으로 전년대비(244.5kg) 5.9% 증가하였음 (표 3-10 참조)
- 메트암페타민은 30.5kg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대마초는 40.1kg으로 전년대비 46.9% 감소, JWH-018 및 그 유사체는 184g으로 전년대비 3.7% 감소함
-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JWH-018 및 그 유사체(AB-CHMINACA, AMB-FUBINACA, 5F-ADB, MMB-2201, 5F-AKB, 5F-PB22, 5-fluoro APINAC), 사일로신(Psilocyn), 알파-PVP, 브로모암페타민, 암페타민 및 그 이성체(N-메틸페네틸아민), 부페드론, 메티오프로파민, 디메틸트립타민, 5-MEO-MIPT, 이소부틸니트리트, 케타민(Ketamine), 클로나제팜(Clonazepam), GHB, 에티졸람, 디아제팜 등 다양한 마약류가 압수됨

## 제3절 마약류범죄 동향 및 분석

### 1. 마약류사범 추세

[표 3-8]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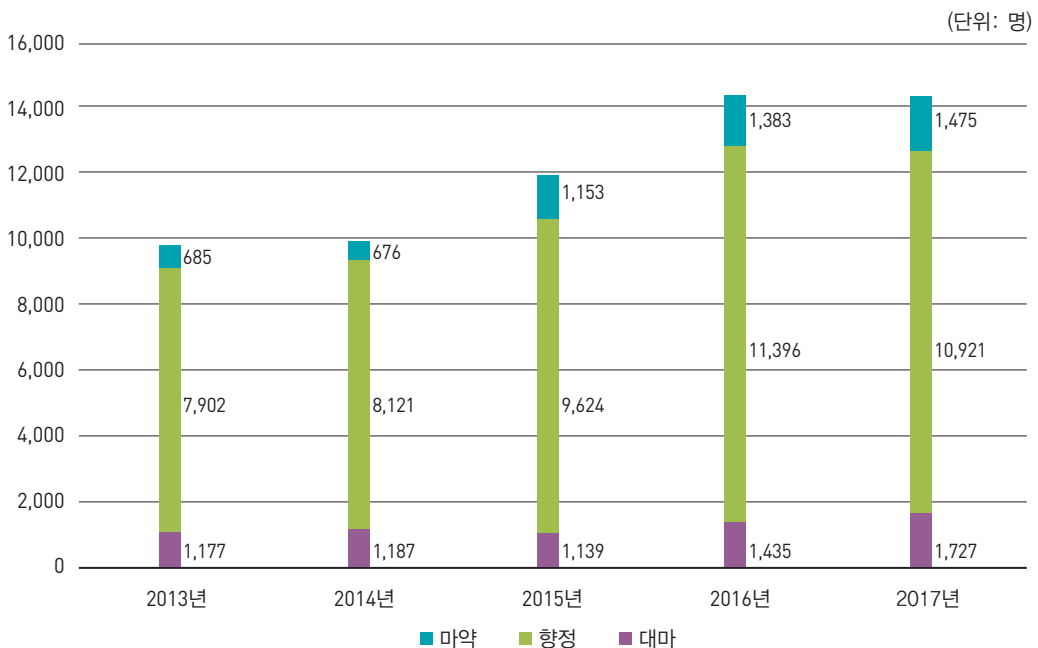
마약류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9,764 (5.5)	9,984 (2.3)	11,916 (19.4)	14,214 (19.3)	14,123 (-0.6)
마약	685 (17.7)	676 (-1.3)	1,153 (70.6)	1,383 (19.9)	1,475 (6.7)
향정	7,902 (3.6)	8,121 (2.8)	9,624 (18.5)	11,396 (18.4)	10,921 (-4.2)
대마	1,177 (13.0)	1,187 (0.8)	1,139 (-4.0)	1,435 (26.0)	1,727 (20.3)

※ ( )는 증감률 %

- 199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던 전체 마약류사범이 1999년 처음으로 10,000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함
- 그러나, 2002년도에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 등 공급조직 10개파 224명(구속 162명)이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마약류 공급선 차단 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다시 10,000명 선으로 증가하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000명 선 아래로 억제됨
- 2015년도는 마약류사범이 11,916명 적발되어 다시 10,000명 선을 넘어섰으며, 2016년 14,214명, 2017년도에는 14,12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그 원인은 인터넷·SNS 등을 이용하여 기존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류 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도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를 소비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사범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이래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여 2011년 78.7%, 2012년 82.5%, 2013년 80.9%, 2014년 81.3%, 2015년 80.7%, 2016년 80.2%, 2017년 77.3%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특히, 메트암페타민)임을 보여주고 있음
- 마약류사범별 추세를 분석해 보면,
  - 마약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00여명 전후 수준이었으나 2015년 1,100여명, 2016년 1,300여명, 2017년 1,400여명 선으로 대폭 증가함. 이는 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관상용,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치료 등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고 있어 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임
  - 한편, 향정사범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000여명 이하로 적발되다 2014년 8,100여명, 2015년 9,600여명, 2016년 11,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에는 10,9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 대마사범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소폭 감소하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1,100여명 선으로 억제되다 2016년 1,400여명, 2017년 1,700여명으로 다시 증가함

[그림 3-6]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표 3-9] 범죄유형별 분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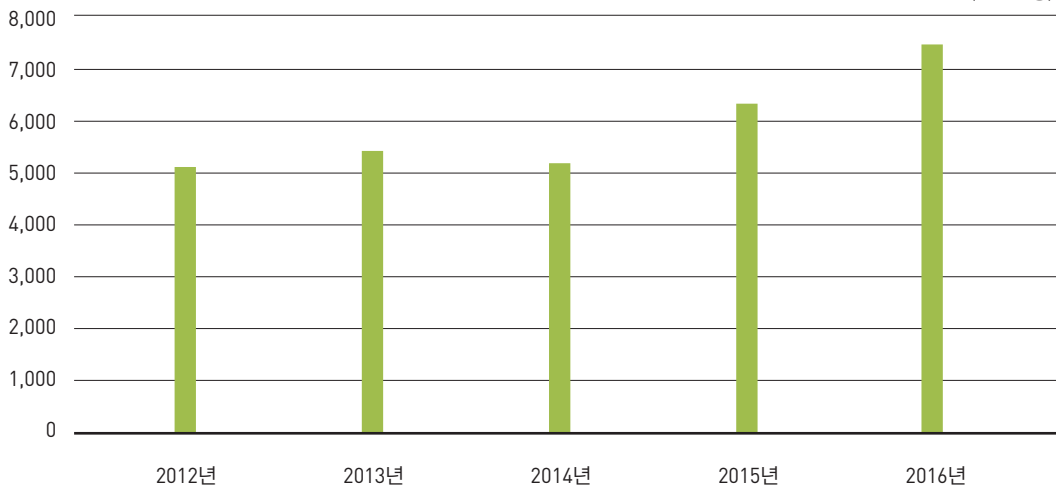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3	481	3,471	1,030	7,346	1,002	790	14,123
	(0.0)	(3.4)	(24.6)	(7.3)	(52.0)	(7.1)	(5.6)	(100)
마약	0	17	39	930	275	58	156	1,475
향정	3	354	3,201	0	5,965	829	569	10,921
대마	0	110	231	100	1,106	115	65	1,727

※ ( )는 구성비 %

- 전체 마약류사범을 행위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약사범이 52.0%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밀매(24.6%), 밀경(7.3%), 소지(7.1%), 밀수(3.4%)사범 순이며, 이 중 밀조, 밀수, 투약, 소지사범은 전년도보다 증가함
-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투약 및 흡연사범이 각 54.6%, 64.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사범은 밀경사범이 63.1%로 이들 대부분은 농촌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 사범임

[그림 3-7]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단위: 명)



## 2. 마약류별 압수 현황

[표 3-10] 마약류별 압수 현황<sup>2)</sup>

구분 마약류	품명	단위	2015	2016	2017
마약	양귀비	주	80,131	97,708	100,399
	생아편	g	235	0	537
	헤로인	g	5	0.03	3.73
	코카인	g	10	10,943	131
	기타 <sup>3)</sup>	g	11	1,757	58.45kg
향정	메트암페타민	g	56,580	28,687	30,463
	MDMA	g	191	1,017	688
	YABA	g	984	703	2,583
	LSD	g	10	22	20
	JWH-018 및 그 유사체	g	432	191	184
	기타 <sup>4)</sup>	g	11,094	4,425	9,480
대마	대마	주	7,609	21,280	3,920
	대마초	g	24,005	75,525	40,125
	대마종자	g	2,912	1,853	1,183
	대마수지 (해시시)	g	324	153	1,267
	기타 <sup>5)</sup>	g	1,004	198	9,485

2) 2015년 3,169kg, 2017년 876kg 압수된 카트(KHAT)는 별도 산정

3) 양귀비종자, 양귀비종자샐러드드레싱, 옥시코돈 등

4) 사이로신(Psilocyn), 알파-PVP, 브로모암페타민, 암페타민 및 그 이성체(N-메틸페네틸아민), 부페드론, 메티오프로파민, 디메틸트립타민, 5-MEO-MIPT, 이소부틸니트리트, 케타민(Ketamine), 클로나제팜 (Clonazepam), GHB, 에티졸람, 디아제팜 등

5) 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등



### 3. 마약류 및 원료물질<sup>6)</sup> 압수 현황

[표 3-11] 메트암페타민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메트암페타민		(슈도)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13		37,689	0	762.6
2014		47,680	0	41.91
2015		56,580	0	2,413 <sup>7)</sup>
2016		28,687	0	0 <sup>8)</sup>
2017		30,463	0	14.19 <sup>9)</sup>

[표 3-12] 헤로인 및 원료물질 압수 현황

연도별	구분	헤로인		무수초산	
		건수	압수량(단위: g)	건수	압수량(단위: ton)
2013		0	0	0	0
2014		0	0	0	0
2015		3	4.54	0	0
2016		1	0.03	0	0
2017		1	3.73	0	0

- 6)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한 33종[1군 26종 :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1-페닐-2-프로파논, 슈도에페드린, 엔-아세틸안트라닐산, 이소사프롤,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 피페로날, 사프롤, 노르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감마부티롤락톤, 1,4-부탄디올,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 초산페닐, 벤질시아니드, 벤즈알데히드, 메틸아민, 에틸아민, 에이피에이에이엔, 엔피피, 에이엔피피, 2군 7종 : 안트라닐산, 에틸에테르, 피페리딘, 염산(염류 제외), 메틸에틸케톤, 황산(염류 제외), 톨루엔]의 물질과 그 염류
- 7) 2015. 1.~7.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건과 관련, 주거지에서 압수한 2.4kg 결정체는 메트암페타민 완제품으로 보기 어려워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부산물로 분류(광주지검), 2014. 8.~2015. 7.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마약사범 관련, 슈도에페드린 13g을 압수(울산지검)
- 8) 2016. 9.~11.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마약사범 관련,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액티피드' 72통(36,000정)을 압수(서울중앙지검)
- 9) 2017. 2.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데 그친 사건 관련, 슈도에페드린 9.83g을 압수(인천지검), 2017. 10. 영국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사건 관련, 에페드린 4.36g 압수(서울동부지검)

[표 3-13]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구분	건수	제조량	
			완제품	반제품
2013		5	2,034	0
2014		0	0	0
2015		5	43	0
2016		2	200	0
2017		3	513	0

-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제조사범은 2000년 2건(5명), 2001년 1건(4명)이 적발되었으나 2002년 적발된 사례가 없었고, 2003년에는 밀조 예비·음모 단계에서 적발된 사례 1건(2명)이 있었음. 2004년과 2005년 적발된 사례가 없었음
- 2006년 1건(4명), 2007년 1건(2명)이 적발되었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원료가 함유된 감기약과 살 빼는 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약국 등 시중에서 구입한 후 그 약품에서 추출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들임
- 2010년 화학박사 출신이 국내 유통이 가능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1건(1명), 외국인 선원이 원료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1건(1명), 화학과 교수가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gamma$ -Hydrxide Butyolactone, 일명 ‘물뽕’)을 제조한 사례 1건(1명)이 각각 적발됨
- 2011년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일명 ‘원단’) 약 10kg를 매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고 예비한 사례 1건(3명)이 적발됨
- 2012년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1건(2명), 회사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습득, 원료물질인 GBL을 구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한 사례

- 1건(1명), 학원강사가 원료물질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가 각각 적발됨
- 2013년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에서 제조 방법을 검색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1건(2명),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명의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한 후 향정 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 1건(1명),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사범이 원료성분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1건(2명), 호주 국적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가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 약 2kg을 제조한 사례 1건(5명), 가정집에서 약 4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해 메트암페타민 약 34g을 제조한 사례 1건(2명)이 각각 적발됨
  - 2015년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8.5g을 제조한 사례 1건(1명),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1건(1명),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1건(1명), 조직 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한 사례 1건(1명), 자신의 집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고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시도하였으나 원료 구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제조 실패하여 예비에 그친 사례 1건(3명)이 각각 적발됨
  - 2016년 필로폰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에페드린’ 주사액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경찰 단속으로 미수에 그친 사례 1건(1명),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200g을 제조한 사례 1건(1명)이 각각 적발됨
  - 2017년 인터넷에서 감기약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방법을 습득, 주택가에 목공예장으로 위장하여 필로폰 밀조공장을 차려놓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0g을 제조한 사례 1건(1명),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제조하는 데 그친 사례 1건(1명),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

필로폰 약 13g을 제조한 사례 1건(1명)이 각각 적발됨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그 이후 국내 밀조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소량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었음. 이에 검찰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 단속 중임



## 4.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14]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sup>10)</sup>

(단위: g)

구분 마약류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합계	166	41,415 (40,554)	110	44,947 (44,918)	131	54,766 (54,365)	179	38,510 (35,760)	247	26,984 (26,228)
코카인	4	1,202 (1,202)	3	11 (11)	4	7 (7)	6	10,899 (10,899)	11	119 (119)
헤로인	0	0 (0)	0	0 (0)	2	3 (3)	1	0.03 (0.03)	1	3.73 (3.73)
메트암페타민	66	29,155 (29,076)	37	42,055 (42,055)	80	46,515 (46,142)	75	22,585 (21,177)	79	17,117 (16,761)
MDMA	9	47 (47)	9	120 (120)	5	47 (44)	34	445 (445)	51	686 (686)
LSD	0	0 (0)	1	8 (8)	2	2 (10)	7	8 (8)	28	17 (17)
YABA	3	1,267 (1,267)	2	127 (127)	9	984 (984)	10	2,010 (704)	9	847 (847)
대마초	61	7,370 (7,347)	45	2,443 (2,419)	17	7,023 (6,990)	26	2,219 (2,183)	51	7,896 (7,496)
대마수지 (해시시)	7	26 (26)	5	87 (87)	7	138 (138)	12	153 (153)	11	244 (244)
JWH-018 및 그 유사체	16	2,348 (1,589)	8	96 (91)	5	47 (47)	8	191 (191)	6	57 (57)

※ ( ) 는 압수량

- 2017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26.7kg(214건)으로 2016년도 38.2kg(158건) 대비 30.1% 감소함

10) 국내로 밀수된 마약류 중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와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를 합한 수치임

- 밀반입된 주요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은 17.1kg으로 전년대비 24.3% 감소하였으나, 대마초는 7.9kg(51건)으로 전년 2.2kg(26건) 대비 255.8% 증가함. 그밖에 엑스터시, LSD, 대마수지(해시시) 등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반입량 역시 증가세를 유지함. 합성대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의 밀반입량은 2014년 이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현재까지 증감을 반복함

[표 3-15] 외국산 마약류 국가별 밀반입 현황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트암페타민 <sup>11)</sup>		중국	42	26,879	26,546	35	9,426	9,206	35	2,081	1,968
		필리핀	13	89	89	8	1,029	999	7	1,776	1,706
		베트남	0	0	0	1	11	11	4	197	197
		태국	3	709	709	5	974	974	18	747	711
		미국	8	101	87	4	5,364	5,364	1	114	114
		홍콩	2	6,249	6,249	0	0	0	2	3	3
		영국	0	0	0	0	0	0	1	1	1
		네덜란드	1	1	1	1	0	0	2	4	4
		멕시코	1	28	28	1	102	102	1	197	197
		대만	0	0	0	2	2,079	2,079	3	10,703	10,646
		일본	1	9,982	9,982	0	0	0	0	0	0
		인도네시아	0	0	0	1	1	0	0	0	0
		캄보디아	8	2,473	2,447	14	3,525	2,394	3	1,285	1,206
		캐나다	1	4	4	1	57	31	0	0	0
		호주	0	0	0	2	17	17	0	0	0
	말레이시아	0	0	0	0	0	0	2	9	8	
	소계	80	46,515	46,142	75	22,585	21,177	79	17,117	16,761	
코카인		미국	2	5	5	3	22	22	1	38	38
		네덜란드	1	1	1	0	0	0	7	22	22
		홍콩	1	1	1	1	0	0	3	59	59
		콜롬비아	0	0	0	2	10,877	10,877	0	0	0
		소계	4	7	7	6	10,899	10,899	11	119	119

11) 2015년도에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은 총 56.6kg으로 거의 외국산으로 추정되나 중간 밀매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국적불명으로 분류되어 외국산 밀반입에서 제외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헤로인	미국		2	3	3	1	0.03	0.03	1	3.73	3.73
	소계		2	3	3	1	0.03	0.03	1	3.73	3.73
크라툼	미국		1	300	300	0	0	0	0	0	0
	소계		1	300	300	0	0	0	0	0	0
대마수지 (해시시)	미국		2	41	41	3	26	26	2	153	153
	캐나다		0	0	0	4	93	93	1	14	14
	영국		2	23	23	5	30	30	5	60	60
	이집트		3	74	74	0	0	0	0	0	0
	멕시코		0	0	0	0	4	4	0	0	0
	스페인		0	0	0	0	0	0	1	3	3
	네덜란드		0	0	0	0	0	0	2	14	14
	소계		7	138	138	12	153	153	11	244	244
MDMA	캐나다		0	0	0	2	6	6	1	6	6
	미국		1	23	23	4	95	95	6	74	74
	독일		0	0	0	4	35	35	3	38	38
	대만		0	0	0	0	0	0	2	59	59
	중국		1	4	4	1	11	11	0	0	0
	호주		0	0	0	1	45	45	0	0	0
	네덜란드		3	20	17	12	103	103	30	463	463
	영국		0	0	0	3	9	9	4	13	13
	베트남		0	0	0	0	0	0	2	7	7
	태국		0	0	0	1	33	33	2	10	10
	벨기에		0	0	0	4	17	17	1	16	16
	슬로바키아		0	0	0	1	69	69	0	0	0
	핀란드		0	0	0	1	22	22	0	0	0
소계		5	47	44	34	445	445	51	686	686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케타민		캄보디아	0	0	0	1	198	198	0	0	0
		미국	0	0	0	0	0	0	1	9	9
		대만	1	396	396	0	0	0	0	0	0
		영국	0	0	0	0	0	0	1	14	14
		네덜란드	0	0	0	0	0	0	1	5	5
		소계	1	396	396	1	198	198	3	28	28
야바		태국	8	885	885	10	2,010	704	7	522	522
		캄보디아	1	99	99	0	0	0	0	0	0
		라오스	0	0	0	0	0	0	1	66	66
		베트남	0	0	0	0	0	0	1	259	259
		소계	9	984	984	10	2,010	704	9	847	847
JWH-018 및 그 유사체	adamatan-1-yl	중국	0	0	0	1	10	10	0	0	0
	ADB-CHMINACA	중국	0	0	0	1	119	119	0	0	0
	5F-AKB-48, STS-135, 5F-ADB	미국	0	0	0	1	3	3	1	3	3
	5F-AKB-48	미국	1	3	3	1	1	1	0	0	0
	5F-PB-22	미국	1	6	6	·	4	4	0	0	0
	5F-AKB-48, 5F-PB-22, STS-135	미국	0	0	0	1	28	28	0	0	0
	AB-CHMINACA	미국	0	0	0	1	3	3	2	29	29
	MDMB-CHMICA	미국	0	0	0	·	3	3	0	0	0
	5F-AKB-48, ADB-CHMINACA, AB-CHMINACA	미국	0	0	0	1	14	14	0	0	0
	5F-UR-144	미국	1	1	1	1	5	5	0	0	0
JWH-073	미국	0	0	0	·	1	1	0	0	0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JWH-018 및 그 유사체	MAM-2201	네덜란드	1	9	9	0	0	0	0	0	0
	5F-AKB-48, 5F-PB-22	영국	1	28	28	0	0	0	0	0	0
	AMB-FUBINACA	베트남	0	0	0	0	0	0	1	18	18
	5F-ADB, MMB-2201, 5F-AKB, 5F-PB22	미국	0	0	0	0	0	0	1	2	2
	5-fluoro APINAC	네덜란드	0	0	0	0	0	0	1	5	5
	소계		5	47	47	8	191	191	6	57	57
메틸페니데이트	필리핀		1	33	32	0	0	0	0	0	0
	소계		1	33	32	0	0	0	0	0	0
사일로신	네덜란드		2	89	89	1	14	14	4	85	85
	미국		0	0	0	0	0	0	1	8	8
	캐나다		1	8	8	0	0	0	1	5	5
	소계		3	97	97	1	14	14	6	98	98
GHB	중국		0	0	0	1	540	540	0	0	0
	네덜란드		0	0	0	0	0	0	2	163	163
	벨기에		0	0	0	0	0	0	1	145	145
	미국		0	0	0	0	0	0	1	70	70
	소계		0	0	0	1	540	540	4	378	378
알프라졸람	미국		1	56	56	1	20	20	0	0	0
	태국		0	0	0	1	17	17	0	0	0
	루마니아		0	0	0	1	26	26	0	0	0
	영국		0	0	0	1	1	1	0	0	0
	소계		1	56	56	4	64	64	0	0	0
에티졸람	리투아니아		0	0	0	0	0	0	1	3	3
	일본		0	0	0	1	132	132	1	10	10
	소계		0	0	0	1	132	132	2	13	13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졸피뎀	일본		1	10	10	0	0	0	1	9	9
	미국		1	51	51	1	10	10	1	10	10
	루마니아		1	10	10	0	0	0	0	0	0
	이스라엘		0	0	0	0	0	0	1	66	66
	필리핀		0	0	0	0	0	0	0	0	0
	인도		1	79	79	4	60	60	0	0	0
	홍콩		0	0	0	2	185	185	0	0	0
	소계		4	150	150	7	255	255	3	85	85
디아제팜	태국		1	9	9	0	0	0	0	0	0
	인도		1	10	10	0	0	0	0	0	0
	중국		1	16	16	0	0	0	0	0	0
	미국		0	0	0	1	5	5	0	0	0
	스리랑카		0	0	0	1	33	33	0	0	0
	독일		0	0	0	0	0	0	1	3	3
	소계		3	35	35	2	38	38	1	3	3
메스 케치논 및 그 유사체		대만	1	71	71	0	0	0	1	175	175
		미국	2	10	10	1	3	3	0	0	0
	4-chlorometh cathinone	중국	0	0	0	1	11	11	0	0	0
	소계	3	81	81	2	14	14	1	175	175	
(펜토)바르비탈	중국	1	50	50	0	0	0	0	0	0	
	소계	1	50	50	0	0	0	0	0	0	
클로나제팜	멕시코	0	0	0	0	0	0	1	20	20	
	방글라데시	1	17	17	0	0	0	0	0	0	
	소계	1	17	17	0	0	0	1	20	20	
로라제팜	중국	1	82	82	0	0	0	0	0	0	
	미국	1	14	14	1	6	6	0	0	0	
	소계	2	96	96	1	6	6	0	0	0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0	0	0	2	74	74	1	62	62	
		N-Methylph enthylamine	미국	0	0	0	0	0	0	4	132	132
		네덜란드	2	11	11	1	5	5	4	33	33	
		영국	0	0	0	1	6	6	0	0	0	
		소계	2	11	11	4	85	85	9	227	227	
옥시코돈		미국	1	10	10	0	0	0	0	0	0	
		독일	0	0	0	0	0	0	1	2	2	
		소계	1	10	10	0	0	0	1	2	2	
LSD		네덜란드	2	2	10	3	4	4	20	15	15	
		캐나다	0	0	0	2	0	0	5	1	1	
		영국	0	0	0	2	4	4	0	0	0	
		미국	0	0	0	0	0	0	3	1	1	
		소계	2	2	10	7	8	8	28	17	17	
디메틸트립타민		독일	0	0	0	1	5	5	0	0	0	
		멕시코	0	0	0	0	0	0	2	601	601	
		소계	0	0	0	1	5	5	2	601	601	
조피클론		스페인	1	50	50	0	0	0	0	0	0	
		소계	1	50	50	0	0	0	0	0	0	
브로마제팜		방글라데시	1	20	20	0	0	0	0	0	0	
		소계	1	20	20	0	0	0	0	0	0	
5-MEO-MIPT		캐나다	0	0	0	0	0	0	1	1	1	
		소계	0	0	0	0	0	0	1	1	1	
1P-LSD		네덜란드	0	0	0	0	0	0	3	0.5	0.5	
		캐나다	0	0	0	3	2	2	1	0.1	0.1	
		소계	0	0	0	3	2	2	4	0.6	0.6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알킬니트 리트 류 (일명 '러시')	isobutyl nitrite	영국	1	35	35	4	179	179	1	60	60
		프랑스	1	36	36	0	0	0	0	0	0
		홍콩	1	60	60	2	40	40	3	80	80
		헝가리	1	19	19	0	0	0	0	0	0
		스웨덴	1	30	30	0	0	0	0	0	0
		싱가포르	1	90	90	2	162	162	0	0	0
		캄보디아	0	0	0	1	50	50	0	0	0
		슬로바키아	0	0	0	1	28	28	0	0	0
		미국	0	0	0	4	165	165	7	418	418
		독일	0	0	0	1	27	27	0	0	0
		중국	0	0	0	1	28	28	15	6,308	6,308
	호주	0	0	0	0	0	0	1	60	60	
	isopropyl nitrite	영국	2	108	108	1	200	200	1	375	375
		체코	1	9	9	0	0	0	0	0	0
		슬로바키아	1	40	40	1	34	34	0	0	0
		호주	0	0	0	0	0	0	1	65	65
		프랑스	0	0	0	1	27	27	1	162	162
		중국	0	0	0	1	279	279	0	0	0
	isopentyl nitrite	프랑스	0	0	0	0	0	0	4	282	282
		슬로바키아	0	0	0	0	0	0	1	40	40
		소계	10	427	427	20	1,219	1,219	35	7,850	7,850
5-MeO-DALT	중국	1	1	1	0	0	0	0	0	0	
	소계	1	1	1	0	0	0	0	0	0	
AM-2201	호주	1	6	6	0	0	0	0	0	0	
	소계	1	6	6	0	0	0	0	0	0	
2C-I-NBOMe	캐나다	1	607	607	0	0	0	0	0	0	
	소계	1	607	607	0	0	0	0	0	0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3,4-메틸렌디옥시 암페타민	캐나다	1	1	1	0	0	0	0	0	0	
	소계	1	1	1	0	0	0	0	0	0	
4-플루오르 암페타민	중국	1	2	2	0	0	0	0	0	0	
	대만	0	0	0	1	300	105	0	0	0	
	네덜란드	0	0	0	1	156	156	0	0	0	
	소계	1	2	2	2	456	261	0	0	0	
페노바르비탈	중국	1	26	26	0	0	0	0	0	0	
	소계	1	26	26	0	0	0	0	0	0	
양귀비종자	캐나다	1	1	1	0	0	0	0	0	0	
	미국	0	0	0	1	37	37	32	23.6kg	23.6kg	
	일본	0	0	0	0	0	0	1	10kg	10kg	
	프랑스	0	0	0	0	0	0	1	0.04kg	0.04kg	
	소계	1	1	1	1	37	37	34	33.64kg	33.64kg	
양귀비종자 샬러드드레싱	미국	0	0	0	0	0	0	14	12.3kg	12.3kg	
	소계	0	0	0	0	0	0	14	12.3kg	12.3kg	
양귀비종자 쿠키	미국	0	0	0	3	1,720	1,720	10	6,495	6,495	
	호주	0	0	0	0	0	0	1	5,640	5,640	
	독일	0	0	0	0	0	0	1	375	375	
	소계	0	0	0	3	1,720	1,720	12	12.5kg	12.5kg	
대마초	미국	3	38	36	8	1,369	1,359	21	1,970	1,970	
	캐나다	2	6,537	6,537	6	648	648	6	1,187	1,187	
	독일	1	9	9	0	0	0	2	902	902	
	네덜란드	4	33	12	5	59	59	2	31	31	
	태국	1	240	240	0	0	0	2	155	155	
	중국	2	11	11	0	0	0	2	17	17	
	이집트	1	16	16	0	0	0	0	0	0	
	필리핀	1	10	0	2	61	61	0	0	0	
벨기에	0	0	0	1	19	19	0	0	0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초	영국	1	124	124	2	32	32	6	767	767	
	스페인	0	0	0	1	1	1	2	521	521	
	대만	0	0	0	0	0	0	1	1	1	
	체코	0	0	0	0	0	0	1	5	5	
	베트남	0	0	0	0	0	0	2	2,155	1,755	
	말레이시아	0	0	0	0	0	0	1	58	58	
	슬로바키아	1	5	5	0	0	0	0	0	0	
	호주	0	0	0	0	0	0	1	7	7	
	오스트리아	0	0	0	0	0	0	1	117	117	
	라오스	0	0	0	1	30	4	0	0	0	
	일본	0	0	0	0	0	0	1	3	3	
소계	17	7,023	6,990	26	2,219	2,183	51	7,896	7,496		
대마종자	영국	12	5	5	4	8	8	6	4	4	
	싱가포르	1	1	1	0	0	0	0	0	0	
	네덜란드	1	2	2	3	1	1	2	2	2	
	말레이시아	0	0	0	1	1	1	0	0	0	
	리투아니아	0	0	0	3	44	44	1	27	27	
	스위스	0	0	0	1	1	1	0	0	0	
	미국	0	0	0	0	0	0	1	1,150	1,150	
	벨기에	1	1	1	0	0	0	0	0	0	
	중국	0	0	0	1	165	165	0	0	0	
	소계	15	9	9	13	220	220	10	1,183	1,183	
대마오일	미국	2	45	45	1	20	20	62	6,825	6,825	
	캐나다	2	560	560	0	0	0	0	0	0	
	네덜란드	0	0	0	1	2	2	1	38	38	
	영국	2	26	26	2	40	40	1	500	500	
	독일	0	0	0	0	0	0	3	50	50	
	리투아니아	0	0	0	0	0	0	1	10	10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15			2016			2017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오일	홍콩		0	0	0	0	0	0	1	60	60
	스페인		0	0	0	0	0	0	4	56	56
	소계		6	631	631	4	62	62	73	7,539	7,539
대마कु키	미국		1	137	137	0	0	0	3	839	839
	소계		1	137	137	0	0	0	3	839	839
대마캡슐(알약)	미국		0	0	0	0	0	0	10	209	209
	소계		0	0	0	0	0	0	10	209	209
대마카트리지	미국		0	0	0	0	0	0	8	683	683
	소계		0	0	0	0	0	0	8	683	683
대마초콜릿	미국		2	236	236	1	136	136	1	215	215
	소계		2	236	236	1	136	136	1	215	215
카트(KHAT)	케냐		1	3,169kg	3,169kg	0	0	0	0	0	0
	에티오피아		0	0	0	0	0	0	9	876kg	876kg
	소계		1	3,169kg	3,169kg	0	0	0	9	876kg	876kg

[표 3-16] 헤로인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적별					
합계	0	0	3 (3)	0.03 (0.03)	3.73 (3.73)
미국	0	0	3 (3)	0.03 (0.03)	0
캐나다	0	0	0	0	3.73 (3.73)

※ ( ) 는 압수량

- 2010년과 2012년에는 소량의 헤로인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11년, 2013년, 2014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음
- 2015년 헤로인 총 압수량은 4.54g으로, 미국으로부터 밀반입된 3.19g(3건)을 제외한 압수량은 국적불명임
- 2016년 미국으로부터 헤로인 0.03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7년 캐나다로부터 헤로인 3.7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표 3-17] 코카인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202 (1,202)	11 (11)	7 (7)	10,899 (10,899)	119 (119)
미국	1,192 (1,192)	9 (9)	5 (5)	21 (21)	38 (38)
네덜란드	10 (10)	0	1 (1)	0	22 (22)
홍콩	0	2 (2)	1 (1)	0.03 (0.03)	59 (59)
콜롬비아	0	0	0	10,878 (10,878)	0
영국	0	0	0	0	0.3 (0.3)
중국	0	0	0	0	0.03 (0.03)

※ ( )는 압수량



- 2012년 우리 국민이 인터넷으로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3년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기탁화물 내 보관되어 있던 신발 4짝에 코카인 300g씩을 은닉하여 총 1,180g 가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4년 미국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 3명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각각 적발됨
- 2015년 우리 국민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캐나다인이 홍콩으로부터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우리 국민이 네덜란드로부터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다 각각 적발됨
- 2016년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코카인 각 6,400g, 4,478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 2017년 우리 국민이 코카인 59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다 적발됨

[표 3-18]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9,155 (29,076)	42,055 (42,055)	46,515 (46,142)	22,585 (21,177)	17,117 (16,761)
중국	13,719 (13,640)	20,828 (20,828)	26,879 (26,546)	9,426 (9,206)	2,081 (1,968)
홍콩	18.4 (18.4)	5,998 (5,998)	6,249 (6,249)	0	3 (3)
필리핀	15.2 (15.2)	83 (83)	89 (89)	1,029 (999)	1,776 (1,706)
미국	1,855 (1,855)	26 (26)	101 (87)	5,364 (5,364)	114 (114)
대만	0	0	0	2,079 (2,079)	10,703 (10,646)
캐나다	0	0	4 (4)	57 (31)	0
태국	27.7 (27.7)	1 (1)	709 (709)	974 (974)	747 (711)
일본	0	0	9,982 (9,982)	0	0
마카오	6,240 (6,240)	0	0	0	0
남아프리카 공화국	0	1 (1)	0	0	0
멕시코	0	15,118 (15,118)	28 (28)	102 (102)	197 (197)
베트남	0	0	0	11 (11)	197 (197)
네덜란드	0	0	1 (1)	0	4 (4)
말리	4,092 (4,092)	0	0	0	0
캄보디아	0	0	2,473 (2,447)	3,525 (2,394)	1,285 (1,206)

연도별 국적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말레이시아	0	0	0	0	9 (8)
케냐	3,186 (3,186)	0	0	0	0
인도네시아	0	0	0	1 (0)	0
체코	1.4 (1.4)	0	0	0	0
호주	0	0	0	17 (17)	0
영국	0	0	0	0	1 (1)

※ ( )는 압수량

- 2017년 외국산 메트암페타민 밀반입량은 총 17,117g으로 전년대비 24.2% 감소하였고, 압수량도 16,761g으로 20.9% 감소함
- 국내로 밀반입된 외국산 마약류 중 중국으로부터의 메트암페타민 밀반입량은 201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17년 대만으로부터의 밀반입량은 10,703g으로 전체 외국산 메트암페타민 밀반입량의 62.5%를 차지함으로써 대폭 증가함. 또한 메트암페타민 밀반입이 종전 중국 일변도에서 대만, 미국,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표 3-19] 대마초 밀반입 현황

(단위: g)

연도별 국적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370 (7,347)	2,443 (2,419)	7,023 (6,990)	2,219 (2,183)	7,896 (7,496)
나이지리아	2,954 (2,954)	0	0	0	0
미국	1,548 (1,544)	1,364 (1,361)	38 (36)	1,369 (1,359)	1,970 (1,970)
캐나다	859 (859)	30 (30)	6,537 (6,537)	648 (648)	1,187 (1,187)
남아프리카 공화국	0	21 (21)	0	0	0
중국	0	0	11 (11)	0	17 (17)
일본	0	0	0	0	3 (3)
필리핀	6 (6)	0	10 (0)	61 (61)	0
태국	68 (50)	5 (5)	240 (240)	0	155 (155)
체코	0	110 (110)	0	0	5 (5)
슬로바키아	0	0	5 (5)	0	0
영국	21 (21)	2 (2)	124 (124)	32 (32)	767 (767)
독일	39 (39)	45 (45)	9 (9)	0	902 (902)
벨기에	5 (5)	10 (5)	0	19 (19)	0
프랑스	10 (10)	0	0	0	0
러시아	1,000 (999)	9 (9)	0	0	0

연도별 국적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베트남	0	0	0	0	2,155 (1,755)
네덜란드	857 (857)	777 (761)	33 (12)	59 (59)	31 (31)
이집트	0	0	16 (16)	0	0
호주	0	0	0	0	7 (7)
오스트리아	0	0	0	0	117 (117)
그리스	1 (1)	1 (1)	0	0	0
대만	2 (2)	0	0	0	1 (1)
덴마크	0	5 (5)	0	0	0
카메룬	0	64 (64)	0	0	0
라오스	0	0	0	30 (4)	0
스페인	0	0	0	1 (1)	521 (521)
말레이시아	0	0	0	0	58 (58)

※ ( ) 는 압수량

- 2012년에는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944.57g을 밀수한 사례가 적발됨
- 2013년 음반 판매업자가 네덜란드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837g을 밀수한 사건과 러시아인이 러시아로부터 대마가루 1,000g을 밀수한 사건, 주한미군이 지인의 부탁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435g을 밀수한 사건이 각각 적발되는 등 대규모 밀수 사례가 발생함

- 2014년 미국, 네덜란드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그 외 체코, 카메룬, 독일,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등으로부터 대마초가 밀반입되는 등 공급루트가 다변화되었음
- 2015년 전체 대마초 밀반입량은 7,023g으로 전년대비 187.5%에 해당되어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단일사건으로 대만인이 캐나다로부터 대마초 6,523g을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려는 것을 적발하였기 때문임
- 2016년 미국, 캐나다로부터 대규모 밀수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전체 대마초 밀반입량은 2,219g으로 전년대비 68.3% 감소함
- 2017년 다량의 대마초가 미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으로부터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는 사례가 급증함. 최근 미국, 캐나다 등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향후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1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한 뒤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 후 수령하려 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우리 국민이 클럽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 후 캐나다로부터 대마 약 450g을 밀수입한 사례가 적발 되었으며, 중고차판매원 등이 베트남으로부터 대마 약 1.1kg을 밀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됨

[표 3-20] 기타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g)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야바 (YABA)	태국	1,267 (1,267)	127 (127)	885 (885)	2,010 (704)
	캄보디아	0	0	99 (99)	0	0
	라오스	0	0	0	0	66 (66)
	베트남	0	0	0	0	259 (259)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MDMA (엑스터시)	캐나다	0	12 (12)	0	6 (6)
	미국	22 (22)	21 (21)	23 (23)	95 (95)	74 (74)
	영국	0	0	0	9 (9)	13 (13)
	대만	0	0	0	0	59 (59)
	독일	20 (20)	36 (36)	0	35 (35)	38 (38)
	중국	0	0	4 (4)	11 (11)	0
	일본	2 (2)	0	0	0	0
	프랑스	0	5 (5)	0	0	0
	네덜란드	3 (3)	46 (46)	20 (17)	103 (103)	463 (463)
	호주	0	0	0	45 (45)	0
	베트남	0	0	0	0	7 (7)
	태국	0	0	0	33 (33)	10 (10)
	벨기에	0	0	0	17 (17)	16 (16)
	슬로바키아	0	0	0	69 (69)	0
	핀란드	0	0	0	22 (22)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JWH-018 및 그 유사체	영국	103 (102)	16 (16)	12 (12)	0
	네덜란드	47 (47)	7 (7)	9 (9)	0	5 (5)
	미국	1,633 (875)	73 (68)	19 (19)	62 (62)	34 (34)
	중국	197 (197)	0	0	129 (129)	0
	일본	84 (84)	0	0	0	0
	베트남	0	0	0	0	18 (18)
	스페인	264 (264)	0	0	0	0
	포르투갈	20 (20)	0	0	0	0
	호주	0	0	7 (7)	0	0
케타민	영국	0	0	0	0	14 (14)
	미국	5 (5)	6 (6)	0	0	9 (9)
	대만	0	0	396 (396)	0	0
	캄보디아	0	0	0	198 (198)	0
	네덜란드	0	0	0	0	5 (5)
크라톤	미국	301 (301)	113 (113)	300 (300)	0	0
	영국	6 (6)	0	0	0	0
	네덜란드	8 (8)	0	0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일로신	네덜란드	685 (685)	55 (55)	89 (89)	14 (14)	85 (85)
	미국	0	0	0	0	8 (8)
	캐나다	0	0	0	0	5 (5)
살비아디비노럼	네덜란드	8 (8)	0	0	0	0
	영국	2 (2)	2 (2)	0	0	0
알프라졸람	미국	124 (124)	0	56 (56)	20 (20)	0
	인도	64 (36)	0	0	0	0
	중국	120 (120)	99 (98)	0	0	0
	독일	40 (40)	0	0	0	0
	일본	0	16 (16)	0	0	0
	루마니아	0	30 (30)	0	26 (26)	0
	태국	0	0	0	17 (17)	0
	영국	0	0	0	1 (1)	0
에티졸람	영국	17 (17)	20 (20)	0	0	0
	미국	56 (56)	0	0	0	0
	일본	0	10 (10)	0	132 (132)	10 (10)
	리투아니아	0	0	0	0	3 (3)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트리아졸람	미국	0	10 (10)	0	0	0
브로티졸람	일본	10 (10)	0	0	0	0
로라제팜	미국	0	7 (7)	14 (14)	6 (6)	0
	중국	333 (333)	0	82 (82)	0	0
조피클론	스페인	0	0	50 (50)	0	0
클로나제팜	미국	30 (30)	28 (28)	0	0	0
	태국	59 (59)	0	0	0	0
	방글라데시	66 (66)	49 (49)	17 (17)	0	0
	네팔	0	14 (14)	0	0	0
	멕시코	0	0	0	0	20 (20)
디아제팜	태국	119 (119)	9 (9)	9 (9)	0	0
	중국	40 (39)	0	16 (16)	0	0
	미국	0	0	0	5 (5)	0
	스리랑카	0	0	0	33 (33)	0
	독일	0	0	0	0	3 (3)
	인도	0	0	10 (10)	0	0
플루니트라제팜	일본	10 (10)	0	0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브로마제팜	방글라데시	59 (59)	0	20 (20)	0
졸피뎴	홍콩	0	0	0	185 (185)	0
	이스라엘	0	0	0	0	66 (66)
	일본	20 (20)	9 (9)	10 (10)	0	9 (9)
	프랑스	0	13 (13)	0	0	0
	필리핀	0	3 (3)	0	0	0
	인도	0	10 (10)	79 (79)	60 (60)	0
	미국	0	0	51 (51)	10 (10)	10 (10)
	루마니아	0	0	10 (10)	0	0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0	25 (25)	0	74	194 (194)
	네덜란드	0	0	11 (11)	5	33 (33)
	영국	0	0	0	6	0
4-메톡시 암페타민	대만	0	0	0	45 (45)	0
4-플루오르 암페타민	대만	0	0	0	300 (105)	0
	네덜란드	0	0	0	156 (156)	0
	중국	0	0	2 (2)	0	0
덱스 암페타민	태국	0	8 (8)	0	0	0
	미국	0	31 (31)	0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리저직산 아미드	미국	74 (74)	0	0	0	0
영국		10 (10)	0	0	0	0	0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중국	0	0	0	11 (11)	0	
	미국	6 (6)	0	10 (10)	3 (3)	0	
	대만	0	0	71 (71)	0	175 (175)	
GHB	중국	1,244 (1,244)	0	0	540 (540)	0	
	벨기에	0	0	0	0	145 (145)	
	네덜란드	93 (93)	0	0	0	163 (163)	
	캐나다	21 (21)	0	0	0	0	
	미국	0	0	0	0	70 (70)	
MDPV	일본	29 (29)	0	0	0	0	
클로르디아 제폭시드	스리랑카	30 (30)	0	0	0	0	
	태국	59 (59)	0	0	0	0	
(펜토)바르비탈	중국	42 (42)	0	50 (50)	0	0	
	태국	33 (33)	0	0	0	0	
페노바르비탈	중국	0	0	26 (26)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펜터민	캐나다	0	13 (13)	0	0	0
	태국	0	9 (9)	0	0	0
	미국	0	16 (16)	0	0	0
메틸페니데이트	파키스탄	90 (90)	0	0	0	0
	필리핀	33 (33)	0	33 (32)	0	0
	미국	2 (2)	0	0	0	0
LSD	네덜란드	0	8 (8)	2 (10)	4 (4)	15 (15)
	캐나다	0	0	0	0	1 (1)
	영국	0	0	0	4 (4)	0
	미국	0	0	0	0	1 (1)
코데인	미국	11 (11)	0	0	0	0
덱스트로 메토르판	필리핀	0	594 (594)	0	0	0
디메틸트립타민 (DMT)	네덜란드	1,598 (1,598)	0	0	0	0
	독일	0	0	0	5 (5)	0
	멕시코	0	0	0	0	601 (601)
부포테닌	홍콩	2 (2)	0	0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옥시코돈	미국	0	0	10 (10)	0
	독일	0	0	0	0	2 (2)
5-MeO-DALT	미국	2 (2)	0	0	0	0
	네덜란드	0	3 (3)	0	0	0
	중국	0	0	1 (1)	0	0
5-MeO-MIPT	0	0	0	0	0	1 (1)
알킬 니트리트 류 (일명 '러시')	홍콩	0	908 (908)	60 (60)	40 (40)	80 (80)
	몰타공화국	0	644 (644)	0	0	0
	캐나다	0	134 (134)	0	0	0
	중국	0	831 (831)	0	307 (307)	6,308 (6,308)
	영국	0	470 (470)	143 (143)	379 (379)	435 (435)
	호주	0	53 (53)	0	0	125 (125)
	체코	0	271 (271)	9 (9)	0	0
	미국	0	216 (216)	150 (150)	165 (165)	418 (418)
	폴란드	0	0	0	20 (20)	0
	일본	0	216 (216)	0	0	0
	슬로베니아	0	45 (45)	0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알킬 니트리트 류 (일명 '러시')	대만	0	290 (290)	0	1,500 (230)	0
	싱가포르	0	371 (371)	90 (90)	162 (162)	0
	스웨덴	0	27 (27)	30 (30)	0	0
	독일	0	0	18 (18)	27 (27)	0
	태국	0	0	1,077 (1,077)	0	0
	말레이시아	0	0	27 (27)	0	0
	캄보디아	0	0	0	50 (0)	0
	프랑스	0	0	36 (36)	27 (27)	444 (444)
	헝가리	0	0	19 (19)	0	0
	슬로바키아	0	0	40 (40)	62 (62)	40 (40)
2C-C-NBOMe	네덜란드	0	101 (101)	0	0	0
2C-I-NBOMe	캐나다	0	0	607 (607)	0	0
$\alpha$ -PVT	일본	0	32 (32)	0	0	0
3,4-메틸렌디 옥시암페타민	캐나다	0	0	1 (1)	0	0
1P-LSD	네덜란드	0	0	0	0	1 (1)
	캐나다	0	0	0	2 (2)	0.1 (0.1)

구분	연도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마수지 (해시시)	미국	6 (6)	4 (4)	41 (41)	26 (26)	153 (153)
	독일	13 (13)	0	0	0	0
	아일랜드	7 (7)	0	0	0	0
	프랑스	0	11 (11)	0	0	0
	인도	0	67 (67)	0	0	0
	캐나다	0	5 (5)	0	93 (93)	14 (14)
	영국	0	0	23 (23)	30 (30)	60 (60)
	이집트	0	0	74 (74)	0	0
	멕시코	0	0	0	4 (4)	0
	스페인	0	0	0	0	3 (3)
	네덜란드	0	0	0	0	14 (14)
대마종자	영국	7 (7)	4 (4)	5 (5)	8 (8)	4 (4)
	스페인	1 (1)	1 (1)	0	0	0
	네덜란드	3 (3)	3 (3)	2 (2)	1 (1)	2 (2)
	슬로베니아	2 (2)	0	0	0	0
	캐나다	1 (1)	0	0	0	0
	이탈리아	1 (1)	0	0	0	0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마중자	싱가포르	0	0	1 (1)	0	0
	벨기에	0	0	1 (1)	0	0
	말레이시아	0	0	0	1 (1)	0
	리투아니아	0	0	0	44 (44)	27 (27)
	스위스	0	0	0	1 (1)	0
	중국	0	0	0	165 (165)	0
	미국	0	0	0	0	1,150 (1,150)
대마오일	미국	15 (15)	559 (559)	45 (45)	20 (20)	6,825 (6,825)
	일본	0	29 (29)	0	0	0
	캐나다	0	0	560 (560)	0	0
	영국	0	0	26 (26)	40 (40)	500 (500)
	네덜란드	0	0	0	2 (2)	38 (38)
	독일	0	0	0	0	50 (50)
	리투아니아	0	0	0	0	10 (10)
	홍콩	0	0	0	0	60 (60)
	스페인	0	0	0	0	56 (56)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마쿠키	미국	0	0	137 (137)	0	839 (839)
대마캡슐(알약)	미국	0	0	0	0	209 (209)
대마카트리지	미국	0	0	0	0	683 (683)
대마초콜릿	미국	0	0	236 (236)	136 (136)	215 (215)
양귀비종자	캐나다	3 (3)	0	0	0	0
	미국	0	9 (9)	0	37 (37)	23,600 (23,600)
	캐나다	0	0	1 (1)	0	0
	일본	0	0	0	0	10,000 (10,000)
	프랑스	0	0	0	0	40 (40)
양귀비종자 샬러드드레싱	미국	0	0	0	0	12,305 (12,305)
양귀비종자 쿠키	미국	0	0	0	1,720 (1,720)	6,495 (6,495)
	호주	0	0	0	0	5,640 (5,640)
	독일	0	0	0	0	375 (375)
합계		9,282 (8,494)	6,854 (6,848)	5,962 (5,966)	9,575 (6,669)	80,456 (80,456)

※ ( )는 압수량



- 기타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엠디엠에이 (MDMA, 일명 ‘엑스터시’), 야바(YABA)<sup>12)</sup>, JWH-018 및 그 유사체, 암페타민 및 이성체, GHB, 사일로신, 디메틸트립타민 (DMT), 알킬니트리트 류<sup>13)</sup>, 아편계 제품류, 대마계 제품류 등 다양해지고 있음
- 특히 야바(YABA)는 주로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등이 밀반입하고 있으며, 엠디엠에이, 알킬니트리트 류 등은 인터넷·SNS를 통해 구입이 용이하고 메트암페타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각 작용은 수 배 강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대학생, 유학생 등 젊은 층이 밀반입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과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일반인들이 개인 소비 목적 등으로 해외직구 등을 이용하여 양귀비종자, 대마종자 뿐만 아니라 아편계 제품류(양귀비종자샐러드 드레싱, 양귀비종자쿠키 등), 대마계 제품류(대마오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등)를 다량으로 밀반입하고 있음

12)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인 쿤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13) 일명 ‘러시’로 불리고 있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이 남용됨

## 5.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표 3-21]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단속사범수	393	551	640	957	932
증감률(%)	9.5	40.2	16.2	49.5	-2.6

- 2000년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체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자들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영향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의 국내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2010년 85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1년에는 27개국 295명으로 전년대비 65.6% 감소함
- 2012년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 및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마약류 범죄 증가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31개국 359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38.6%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개국 393명이 단속되어 소폭 증가함
- 2015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34개국 640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16.2%(전년도 33개국 551명) 증가함
- 2016년 31개국 957명이 단속되어 전년대비 49.5%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4개국 932명이 단속되어 전년과 거의 동일 수준
- 최근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은 외국과의 교류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또는 관광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위장하여 입국한 불법체류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3-22]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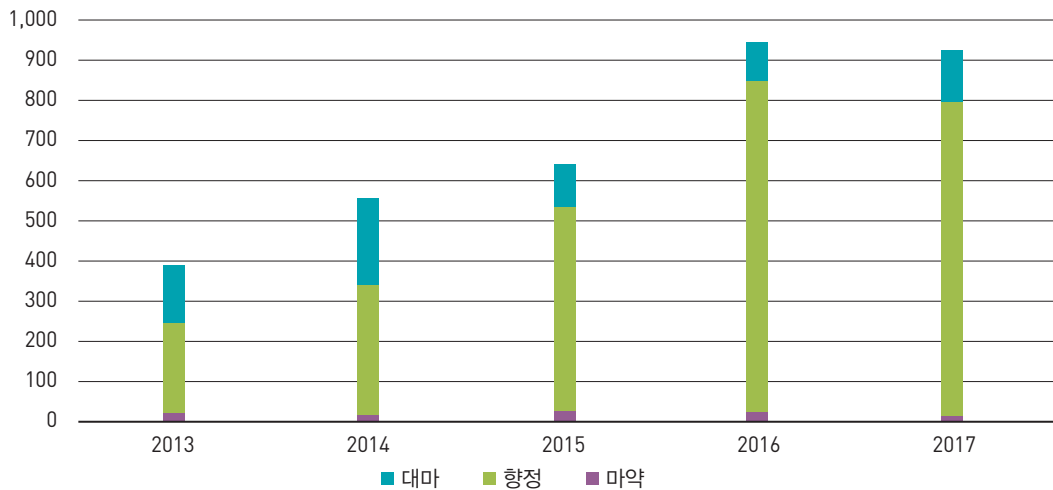
연도별 마약류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93 (100)	551 (100)	640 (100)	957 (100)	932 (100)
마약	19 (4.8)	17 (3.1)	26 (4.1)	25 (2.6)	14 (1.5)
향정	235 (59.8)	328 (59.5)	499 (78.0)	834 (87.1)	784 (84.1)
대마	139 (35.4)	206 (37.4)	115 (17.9)	98 (10.2)	134 (14.4)

※ ( )는 구성비 %

- 1999년 이전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대부분 대마사범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부터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함
- 2017년 향정사범이 84.1%, 대마사범이 14.4%를 각각 점유함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인(특히, 조선족)이 메트암페타민을 밀반입 및 투약한 사례와 태국인이 야바(YABA)를 밀반입 및 투약한 사례가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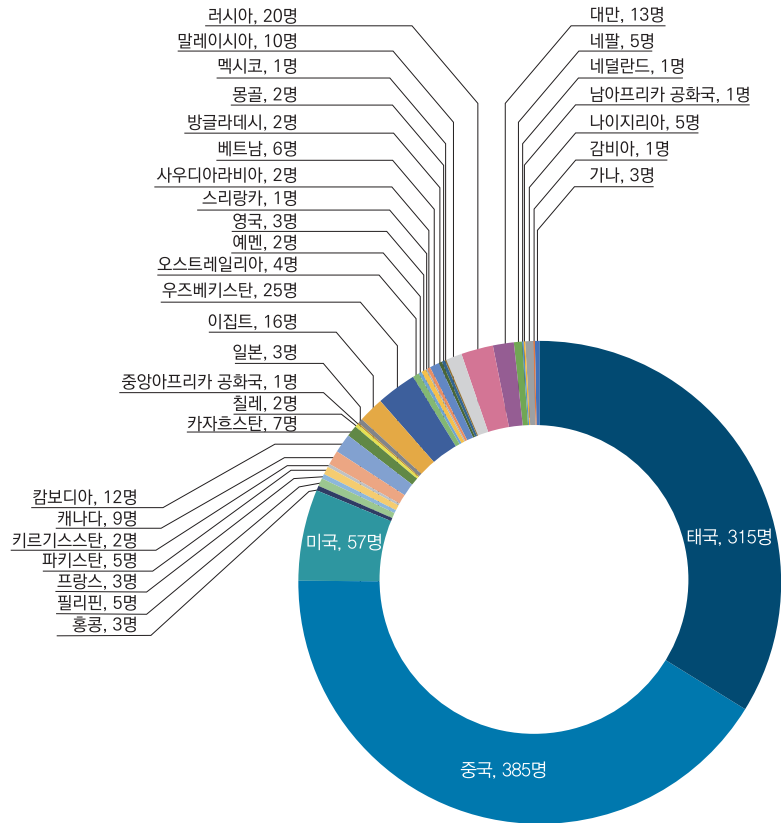


[표 3-23]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연도별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	중국	미국	태국	태국	태국
3	필리핀	태국	미국	미국	미국

[그림 3-9] 2017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



[표 3-24]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93 (100)	505 (100)	640 (100)	957 (100)	932 (100)
밀조	0 (0.0)	0 (0.0)	1 (0.2)	0 (0.0)	0
밀수	60 (15.3)	71 (14.1)	91 (14.2)	176 (18.4)	186 (20.0)
밀매	91 (23.2)	86 (17.0)	101 (15.8)	125 (13.1)	115 (12.3)
투약	177 (45.0)	254 (50.3)	336 (52.5)	522 (54.5)	504 (54.1)
소지	15 (3.8)	38 (7.5)	36 (5.6)	30 (3.1)	38 (4.1)
기타	50 (12.7)	56 (11.1)	75 (11.7)	104 (10.9)	89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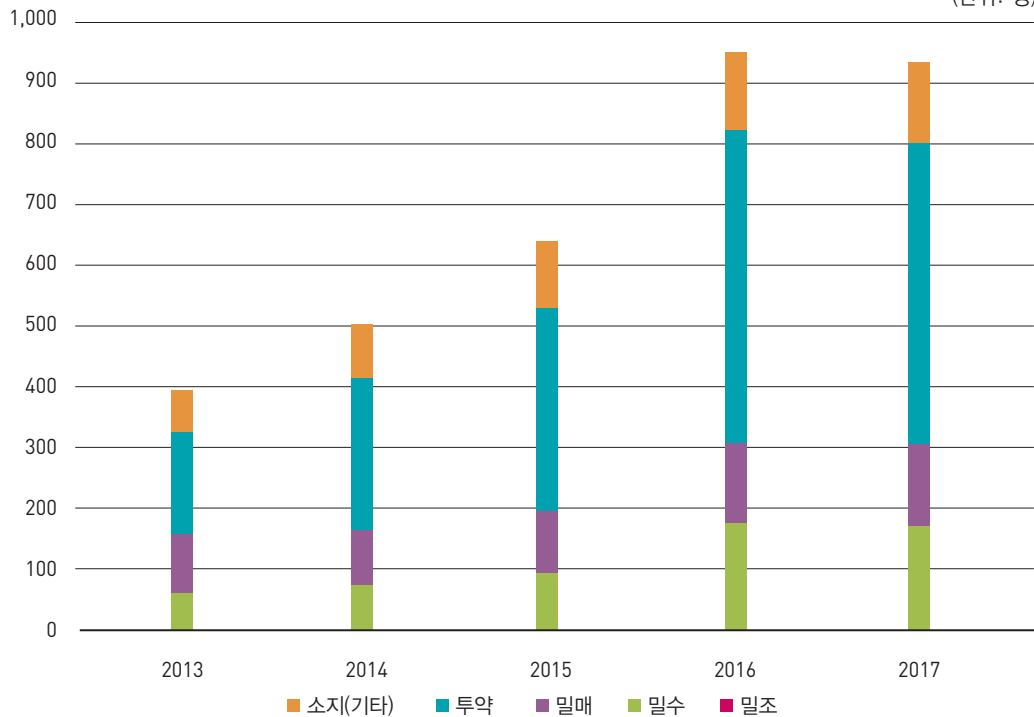
※ ( )는 구성비 %

-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범죄유형은 2003년도까지 밀수, 밀매, 투약사범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2004년부터 투약사범 급증과 함께 그 점유율도 2009년에 89.3% 까지 늘어났음. 2011년부터 투약사범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밀수사범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이 다변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하고, 일부 마약류는 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점차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7년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중국인과 태국인,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조선족 등 일용직노동자) 및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강사, 학생)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권(공장 근로자 등) 국적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3-10]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표 3-25]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60	(100)	76	(100)	91	(100)	176	(100)	186	(100)		
중국	21	(35.0)	43	(56.6)	61	(67.0)	116	(65.9)	89	(47.9)		
미국	23	(38.3)	21	(27.6)	11	(12.1)	10	(5.7)	7	(3.8)		
러시아	3	(5.0)			2	(2.2)	2	(1.1)	1	(0.5)		
필리핀	5	(8.3)			1	(1.1)	2	(1.1)				
태국			8	(10.6)	13	(14.3)	37	(21.1)	75	(40.4)		
캐나다	1	(1.7)			1	(1.1)						
싱가포르			1	(1.3)								
인도네시아	1	(1.7)										
모로코			1	(1.3)								
방글라데시					1	(1.1)						
베트남	4	(6.6)	2	(2.6)			3	(1.7)				
우즈베키스탄					1	(1.1)	1	(0.6)				
독일	1	(1.7)										
영국	1	(1.7)							1	(0.5)		
사우디아라비아							2	(1.1)				
스리랑카							1	(0.6)				
이집트							2	(1.1)	1	(0.5)		
나이지리아									3	(1.7)		
대만									6	(3.2)		
말레이시아									1	(0.5)		
예멘									1	(0.5)		
일본									1	(0.5)		

※ ( )는 구성비 %

[표 3-26]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연도별 순위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2	중국	미국	태국	태국	태국
3	필리핀	태국	미국	미국	미국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경우, 2004년에는 이란인(39.1%), 2005년에는 미국인(13.0%)과 중국인(13.0%), 2006년에는 나이지리아인(40.0%), 2007년에는 중국인(28.6%)이 주류를 이루었고, 2008년~2010년에는 태국인이 각 64.7%, 29.4%, 32.0%를 점유하였음
- 2011년 중국인이 44.4%를, 2012년~2013년에는 미국인이 각각 38.1%, 38.3%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 2014년~2017년에는 중국인이 각 56.6%, 67.0%, 65.0%, 47.8%를 점유하여 주류를 이루고 있음. 그 원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고, 마약류 밀매로 큰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중국인(특히, 조선족)들이 많이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17에 태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이 40.3%를 점유하였는데, 이는 국내 체류 태국인들이 주로 밀매·투약 목적으로 야바 등을 밀수하려다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6.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현황

### 가. 개요

- 예전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 단체로서 그 활동도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 마약류 밀수·밀매를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2010년경부터 조직폭력배가 마약을 금기시하던 관행을 깨고,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류 밀매와 밀수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국내 폭력조직이 대만 마약조직 및 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과 연계하여 마약류 밀수·밀매에 개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바, 특히 2015년에는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메트암페타민 약 10kg을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고, 2017년에는 대만 폭력조직원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稲川會)’ 조직원이 메트암페타민 약 8.6kg을 국내에 유통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음
-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013년 25개파 38명이고, 2014년 48개파 69명, 2015년 38개파 55명, 2016년 48개파 65명, 2017년 44개파 72명임

[표 3-27]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 구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	점유율(%)
2013	9,764	38	0.4
2014	9,984	69	0.7
2015	11,916	55	0.5
2016	14,214	65	0.5
2017	14,123	72	0.5

[표 3-28]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2013	38 (100)	0	3 (7.9)	10 (26.3)	15 (39.5)	10 (26.3)
2014	69 (100)	0	0	15 (22.7)	34 (48.8)	20 (28.5)
2015	55 (100)	1 (1.8)	2 (3.6)	18 (32.8)	28 (50.9)	6 (10.9)
2016	65 (100)	1 (1.5)	2 (3.1)	24 (36.9)	25 (38.5)	13 (20.0)
2017	72 (100)	0	2 (2.8)	19 (26.4)	28 (38.9)	23 (31.9)

※ ( )는 구성비 %

[표 3-29] 2017년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0	2	19	28	23	72	
인천	꼴망파(인천)	0	0	0	1	0	1
	간석식구파(인천)	0	0	3	1	0	4
	석남식구파(인천)	0	0	1	0	0	1
	금강산파(인천)	0	0	0	1	0	1
	부평식구파(부평)	0	0	1	0	0	1
경기	춘천생활파(춘천)	0	0	0	1	0	1
	부천식구파(부천)	0	0	0	0	1	1
	안양타이거파(안양)	0	0	0	1	0	1
	오산시내파(오산)	0	0	0	1	0	1
	문산식구파(파주)	0	0	2	0	0	2
	관광파(성남)	0	0	1	1	0	2

구분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경기	수원역전파(수원)	0	0	1	0
	수원북문파(수원)	0	0	0	1	1	2
충청	천안남산파(천안)	0	1	0	0	0	1
	시라소니파(청주)	0	0	0	1	0	1
영남	인수파(부산)	0	0	0	0	1	1
	채은이파(부산)	0	0	0	1	1	2
	통합서면파(부산)	0	0	1	0	0	1
	사상터미널파(부산)	0	0	1	0	0	1
	광안칠성파(부산)	0	0	0	0	2	2
	칠성파(부산)	0	0	3	3	2	8
	부대식구파(부산)	0	0	1	2	1	4
	약마파(부산)	0	0	0	1	2	3
	영도파(부산)	0	0	0	0	3	3
	재건연산통합파(부산)	0	0	0	1	1	2
	자갈치파(부산)	0	0	1	0	0	1
	유태파(부산)	0	0	0	0	1	1
	황제파(부산)	0	0	0	2	0	2
	재건소동파(부산)	0	0	1	0	0	1
	병철이파(부산)	0	1	0	0	0	1
	재건서면파(부산)	0	0	0	1	0	1
	대운파(부산)	0	0	0	1	0	1
	영철파(부산)	0	0	0	0	1	1
	사상통합파(부산)	0	0	0	1	1	2

구분	유형별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영남	신20세기파(부산)	0	0	1	0	0	1
	뽕빠이파(부산)	0	0	0	0	1	1
	신향촌파(대구)	0	0	0	2	0	2
	향촌동파(대구)	0	0	0	0	1	1
	내당동파(대구)	0	0	0	0	1	1
	신신역전파(울산)	0	0	0	2	1	3
	월배파(울산)	0	0	0	1	0	1
	이병률파(진주)	0	0	0	1	0	1
	삼방파(김해)	0	0	1	0	0	1
호남	신양관광파(전남)	0	0	0	0	1	1



## 나. 대표적 개입사례

### 밀제조관련 사건

- 1999. 5.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대신동파」조직원 2명이 판매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함) 9kg을 밀조한 후 대구·부산 지역에서 밀매 (대구지검)
- 2001.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서면파」행동대장 등이 필로폰 약 10kg을 밀조한 후 부산·대구 지역에서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03. 11.경 일본 야쿠자「마쓰바카이(松葉會)」부두목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반제품을 밀반입한 후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은닉하여 경유지인 우리나라로 밀반입 후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려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 2015. 1.~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대구월배파」조직원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제조, 마약류 원료성분이 함유된 물질 2.4kg을 압수 (광주지검)
- 2015. 12.경 강원지역 폭력조직「강릉식구파」행동대장 등이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 필로폰과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만들어내어 필로폰 제조 예비 (부산지검)

### 밀수관련 사건

- 2007. 8.경 성남지역「국제 마피아파」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1.9g을 밀반입 및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7. 9.경 일본 최대 야쿠자「아마구치구미(山口組)」의 중간 보스 등이 홍콩으로부터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약 615g을 밀반입하고, 같은 해 11. 8.경 위 필로폰을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미수 (부산지검)

- 2009. 9.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9.74g을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1.경 미국 LA 한인지역 갱단「LGKK」 조직원이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48.2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일본 야쿠자「스미요시카이(住吉會)」 간부가 필로폰 987g을 중국에서 구입,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입출할 목적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0. 3.~4.경 충주지역 폭력조직「신석만이파」 부두목이 태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37g을 밀반입 (청주지검)
- 2010.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6.58g을 밀반입 (부산동부지청)
- 2010. 4.경 중국 폭력조직「흑사회(黑社會)」 심양지역 두목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00g을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1. 10.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밀반입 (수원지검)
- 2011. 12.~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밀반입 (전주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꼴망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8g을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2. 6.~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영도파」 행동대원 등 4명이 대만 마약밀매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kg을 밀반입 (부산지검)





- 2012.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과 연계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4kg을 밀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13. 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홍콩으로부터 필로폰 약 63g을 밀반입 (수원지검)
- 2013.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5.7kg을 대형 커피머신에 은닉하여 중국 청도항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4.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100g을 비닐로 포장한 뒤 허리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옷 속에 은닉하여 김해 공항으로 밀반입 (울산지검)
- 2015. 4.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이 영국으로부터 대마종자 68개를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밀반입 (안산지청)
- 2015. 5.경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지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약 10kg을 위 야쿠자 조직원 등 2명에게 전달하여 국내에 유통 시키려다 적발 (서울중앙지검)
-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행동대장이 중국 광저우시에서 성명 불상자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8kg을 건네받아 화물선 조리장 객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6.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신파」 조직원이 중국 체류 성명불상자와 공모 하여 중국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필로폰 261g을 밀반입 (서울중앙지검)
- 2016.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강화월드파」 행동대장이 조선족 운반책에게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50.6g을 밀반입하도록 지시 (인천지검)

- 2017. 3. 충청지역 폭력조직 「천안남산파」 고문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7.77g을 향문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으로 밀반입 (인천지검)
- 2017. 10. 대만 폭력조직원이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稻川會)’ 조직원에게 메트암 페타민 약 8.6kg을 전달하여 유통하려다가 적발(서울중앙지검)

### 밀매관련 사건

- 2007. 3.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로얄박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8g을 매도, 투약 (고양지청)
- 2007.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 「시라소니파」 조직원 및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 공모하여 필로폰 8.62g을 160만원에 매수 (대전지검)
- 2007. 8.경 제주지역 폭력조직 「산지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제주지검)
- 2008.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원대동파」 고문이 필로폰 0.18g을 3회에 걸쳐 매도 (대구서부지청)
- 2008. 4.~2010. 1.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8g을 밀매 등 수회에 걸쳐 소지, 투약 (수원지검)
- 2008.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80g을 매수, 투약 (인천지검)
- 2008.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3.5g을 매매 알선 및 2g 매수 (인천지검)
- 2008. 8.경 부평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1.4g을 매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 2008. 11.~2009. 10.경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이 필로폰 0.4g을 매도하고 6회에 걸쳐 매매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 2008. 12.경 광양지역 폭력조직 「광양백호파」 두목이 필로폰 약 3g을 매수 (울산지검)
- 2009. 1.~3.경 동두천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고문이 필로폰 20g을 매수, 투약 (의정부지검)
- 2009.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돈지파」 두목이 필로폰을 매수 (대구서부지청)
- 2009.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12g을 매도, 투약 (울산지검)
- 2009. 2.~2010.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0.5g을 매수, 투약 (인천지검)
- 2009. 3.~2009. 12.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천호동구사거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0.7g을 밀매, 수수 (서울중앙지검)
- 2009. 6.~2010.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0.4g을 매도,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09. 8.경 창원지역 폭력조직 「영철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을 매도 (창원지검)
- 2009. 8.~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기장통합파」 두목이 필로폰 0.4g을 매도,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09. 9.~2010.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6g을 매도 및 교부 (수원지검)

- 2010. 1.~11.경 의정부지역 폭력조직「신세븐파」 행동대장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부대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00g을 매수 (부산지검)
- 2010. 3.~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명동신상사파」 조직원이 필로폰 2.5g을 매수 (고양지청)
- 2010. 7.~8.경 평택지역 폭력조직「전국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밀매 (천안지청)
- 2010. 8.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0.85g을 매도 (서울중앙지검)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정릉파」 두목이 필로폰 0.3g을 매도 및 3.5g을 매수 (평택지청)
- 2010. 10.경 평택지역 폭력조직「청하위생파」 조직원이 필로폰 0.4g을 매수, 투약 (평택지청)
- 2010. 12.~2011.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부평식구파」 행동대원이 프로포폴 8,000앰플(20ml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 (인천지검)
- 2011. 1.경 부천지역 폭력조직「소사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밀매 (부천지청)
- 2011. 2.~4.경 군산지역 폭력조직「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9.8g을 밀매, 필로폰 약 11.3g을 매매 알선 (전주지검)
- 2011. 3.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간석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6g을 매도 (부천지청)

- 2011.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부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1g을 매도 (부천지청)
- 2011. 4.경 광주지역 폭력조직「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을 밀매 (광주지검)
- 2011.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크라운파」 간부급 조직원이 필로폰을 매수 (전주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10.5g을 매도 (전주지검)
- 2012. 2.경 인천지역 폭력조직「부평식구파」 행동대장 등 2명이 필로폰 3.5g을 매수, 투약 (수원지검)
- 2012.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대전지역 폭력조직「진술파」 행동대원 등 4명이 필로폰 48g을 매도 (대전지검)
- 2013. 1.경 경북 김천지역 폭력조직「제일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매수 (청주지검)
- 2013. 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진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알선 (광주지검)
- 2013. 3.경 경남 거제지역 폭력조직「일호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매수 (광주지검)
- 2013. 4.경 서울지역 폭력조직「미아리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서울중앙지검)
- 2013. 4.경 천안지역 폭력조직「태평양파」 조직원이 필로폰 1.5g을 매수 (천안지청)
- 2013. 4.경 청주지역 폭력조직「파라다이스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8g을 매매 알선 (광주지검)
- 2013. 5.경 서울지역 폭력조직「영등포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수원지검)

- 2013.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을 교부 및 필로폰 2g을 매매 알선 (부산동부지청)
- 2013.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수원지검)
- 2013.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수원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수원지검)
- 2014. 1.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아파치파」 조직원이 6회에 걸쳐 필로폰 16g을 매도(정읍지청)
- 2014. 3.~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2회에 걸쳐 필로폰 0.1g을 매도, 필로폰 2회 투약 (인천지검)
- 2014. 5.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여주상조회파」 조직원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매 (여주지청)
- 2014. 10.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75g을 매도 및 대마 2회 흡연 (홍성지청)
- 2014. 10.~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두목이 필로폰 1g을 매도 및 1회 투약 (원주지청)
- 2014.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인파」 추종 폭력배가 필로폰을 수회 매도, 필로폰 4.93g을 소지 (광주지검)
- 2014. 11.경 김포지역 폭력조직 「김포토박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0.2g을 매도 및 4회 투약 (청주지검)



- 2015. 3.경 미국 LA지역 「멕시코칸 갱」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및 0.9g을 소지 (서울동부지검)
- 2015. 4.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천식구파」 행동대장이 필로폰을 밀매 (안산지청)
- 2015.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조직원이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매 (순천지청)
- 2015. 4.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9회에 걸쳐 필로폰 매수 (순천지청)
- 2015.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조직원이 필로폰 1.6g을 매도 (성남지청)
- 2015. 6.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추정 폭력배가 필로폰 0.1g을 매도 (인천지검)
- 2015.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65g을 매도 및 0.33g을 소지 (부산지검)
-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1g을 매도 및 1.93g을 소지 (부산지검)
-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밀매 및 0.07g을 소지 (부산지검)
- 2015.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400g을 매도 (부산지검)
- 2015.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밀매 (부산지검)
- 2015. 1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인천신공항파」 두목이 필로폰을 매매 알선 (대구서부지청)

- 2015. 12.경 미국 LA지역 한인 갱단 「LGKK」 조직원이 필로폰 약 150g을 밀매 (의정부지검)
- 2016.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광안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4g을 매도 (부산지검)
- 2016. 1.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7g을 매도 및 필로폰 5g을 수수 (인천지검)
- 2016. 2.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5g을 매수 (인천지검)
- 2016. 2.~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4g을 교부, 필로폰 0.14g 매도 및 2016. 6.경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6. 8.~11.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여주 희망상조회」 행동대장, 「하남청개구리파」 중간간부, 「양평남한강식구파」 간부 3명이 공모하여 부산에서 필로폰 10g을 매수한 뒤 6회에 걸쳐 매도 (여주지청)
- 2016. 7.~2017. 2. 인천지역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회 매수, 6회 투약 (인천지검)
- 2015. 8.~2017. 12. 충청지역 폭력조직 전 「온양 태평양파」 조직원 2명이 다량의 필로폰 매도 및 투약 (서산지청)



### 수수·소지·투약 등 관련 사건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교부, 투약 (부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울산지검)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과 해운대지부」 조직원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수수 (안양지청)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소지, 투약 (울산지검)
-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을 투약 (광주지검)
-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교부 (수원지검)
-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울산지검)
-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광주지검)

-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 필로폰을 투약 및 대마초를 흡연 (의정부지검)
-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울산지검)
-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및 대마초를 흡연 (인천지검)
-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 필로폰 0.15g을 수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0.03g을 투약 (부산지검)
-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4.46g을 소지 (인천지검)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0.14g을 투약 (평택지청)
-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등 3명이 필로폰을 투약 (안양지청)
-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73g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 등 2명이 필로폰을 투약 (전주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신용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울산지검)
- 2012.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2.35g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6.경 포항지역 폭력조직「시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포항지청)
- 2012. 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전주지검)
- 2012.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꿀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인천지검)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9g을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2.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비치파」부두목이 필로폰 0.18g을 소지, 투약 (전주지검)
- 2012. 11.경 안양지역 폭력조직「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울산지검)
- 2012. 1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안양AP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3.8g을 소지, 투약 (안양지청)
- 2012.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68g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3.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소지 (서울 남부지검)

- 2013. 3.경 전주지역 폭력조직「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전주지검)
- 2013.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창원지검)
- 2013. 4.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수원지검)
- 2013.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소지 (창원지검)
- 2013. 7.경 수원지역 폭력조직「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수원지검)
- 2013. 7.경 성남지역 폭력조직「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성남지청)
- 2013.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7.경 밀양지역 폭력조직「신동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밀양지청)
- 2013. 7.경 울산지역 폭력조직「남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전주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11.경 김해지역 폭력조직「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창원지검)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수유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서울북부지검)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및 대마초를 수수, 흡연 (서울중앙지검)
- 2014. 4.경 제천지역 폭력조직「조가파」 부두목이 필로폰 3.17g을 소지 (제천지청)

- 2014. 5.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 (정읍지청)
- 2014. 9.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을 2회 투약 (대구지검)
- 2014.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30g을 소지 (울산지검)
- 2014. 10.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두목이 필로폰을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4. 11.경 영광지역 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43g을 소지 (광주지검)
- 2014. 11.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홍성지청)
- 2015. 2.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5. 3.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의정부지검)
- 2015. 4.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5. 4.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6g을 소지, 투약 및 대마 0.13g을 소지 (부산지검)
- 2015. 4.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44g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5. 5.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7g을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5. 5. 부산지역 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5. 7.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을 투약 (부산지검)
- 2015. 7.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을 투약 (평택지청)
- 2015. 8. 서울지역 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 (평택지청)
- 2015. 9.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0.03g을 교부 및 투약 (순천지청)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고문이 대마 470g을 소지 및 대마 3회 흡연 (부산지검)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8g을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전동파(물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5g을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2016. 5.~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익산구시장파」 조직원이 필로폰 불상량 수수 및 투약 (청주지검)
- 2017. 1.~3. 충청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창원지검)
- 2017.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회 투약 및 6.2g 소지 (울산지검)
- 2017. 8.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72.69g 소지 (울산지검)

## 보복범죄 관련 사건

- 1998. 4.경 서울지역 조직폭력배가 필로폰 10g에 소금을 섞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자를 살해 (서울중앙지검)
- 1999.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등이 필로폰 1kg의 판매대금 7,000만원을 갚지 않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부산지검)
- 2000.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등이 필로폰 거래 문제로 같은 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 칼로 찔러 살해미수 (서울중앙지검)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1999. 11.경 피해자가 청주지검에서 필로폰 취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협박 (대전지검)

## 7.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현황

### 가. 개요

- 국내 또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면서 국제우편 또는 국제 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 지속적 증가 추세임
- 마약 중독자가 아닌 일반인의 인터넷 마약류 거래가 늘어,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접근 가능성 차단이 필요
- 2016. 12.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개시, 인터넷 상 마약류 불법게시물·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 및 시스템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수사 착수
- 2017. 1.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 제877호, 마약과] 시행

[표 3-30]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실적<sup>14)</sup>

연도별	유형별	차단·삭제 요청	수사(건/명)	
			인지	구속
2014		345	8/8	1
2015		450	3/4	2
2016		1,439	6/6	5
2017		7,890	54/54	25
합계		10,124	71/72	33

14) 2014.~2016. 인터넷 키워드 검색을 통한 수작업 모니터링 실적



## 나. 주요 수사 사례

- 2017. 1.~3.경 필로폰 판매자(일명 ‘조커’)의 제안을 받고 판매 광고 동영상 9편을 만든 후 유튜브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2.1g을 수수하고 투약한 광고 사범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4.경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한 밀매사범(일명 ‘배트맨’) 구속 (서울동부지검)
- 2017. 5.~6.경 추적이 어려운 채팅앱을 이용해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수까지 하려던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사범 구속 (부산지검)
- 2016. 6.~2017. 8.경 도심 상가건물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딥웹’에서 비트코인 결제로 대마를 판매한 고교동창생 등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 2017. 2.~7.경 필리핀을 거점으로 필로폰 약 300그램을 밀반입한 뒤, 인터넷 광고와 SNS 채팅을 통해 수 백명에게 판매하여 약 4억 원의 수익을 얻은 판매조직을 적발하는 등 4개 조직, 21명을 입건하고, 그 중 14명을 구속 (수원지검)

## 8. 마약류 광고 단속 현황

### 가. 개요

- 마약류 밀조, 밀매 및 오남용을 유도하는 『인터넷·SNS 등 이용 광고행위』로 인해 마약류사범 증가
- 마약류 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1. 누구든지 마약류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제3조 제12호)
2.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제62조 제1항 제3호)

- 2017. 6. 3.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마약류 제조·매매 등 광고행위 처벌 신설, '16. 12. 2. 공포) 시행

[표 3-31] 2017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총 55명 단속)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g)	인지, 송치	기타
1	부산동부	1	디에타민정 (펜터민)	네이버 카페	0	송치	
2	서울중앙	1	필로폰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0	인지	사기
3	서울중앙	1	필로폰	인터넷	0	인지	사기
4	서울중앙	1	필로폰	인터넷	0	인지	
5	서울중앙	2	필로폰	인터넷	0	인지	사기
6	서울중앙	1	필로폰	인터넷	0	인지	사기

순서	유형별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g)	인지, 송치	기타
7	서울중앙	1	대마초	답웹	5.63	인지	
8	인천지검	1	필로폰	유튜브, 텔레그램	0	인지	
9	광주지검	2	필로폰	즐톡	0	송치	사기 (백반가루)
10	서울중앙	1	LSD	인터넷	0	인지	사기 미수
11	청주지검	1	필로폰	SNS	0	송치	
12	서울중앙	4	대마	인터넷 (답웹)	2.7kg	인지	
13	서울중앙	3	필로폰	유튜브	38.56	송치	
14	평택지청	1	필로폰	즐톡, 영톡	0	송치	
15	서울중앙	1	필로폰	인터넷 (이반시티)	0	인지	
16	수원지검	1	필로폰	즐톡, 영톡, 앙톡	0	송치	
17	전주지검	2	필로폰	구글	0	송치	
18	서울중앙	6	대마초	답웹, 트위터 등	877.62	인지	
19	서울남부	1	필로폰	즐톡	15	송치	
20	수원지검	1	페스틴	중고나라 카페	29정	송치	
21	안산지청	5	백반가루, 썩	인터넷	0	송치	사기
22	전주지검	4	필로폰	인터넷	0	인지	사기
23	평택지청	1	필로폰	스마트폰 어플 즐톡	0	송치	
24	서울중앙	1	대마초	트위터	0	인지	
25	고양지청	1	필로폰	인터넷 채팅	0	송치	
26	수원지검	1	필로폰	인터넷 게시판	5	인지	

유형별 순서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	광고 매체	압수(g)	인지, 송치	기타
27	수원지검	2	필로폰	게시판, 유튜브	5	인지	
28	전주지검	2	백반	모바일등 인터넷	0	인지	사기
29	전주지검	5	백반	모바일등 인터넷	0	인지	사기

### 나. 주요 수사 사례

- 2017. 6.경 인터넷에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광고(허위) 4회 게시 및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필로폰 매수 희망자 13명을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전력 피의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 9. 지역별 단속 현황

[표 3-32]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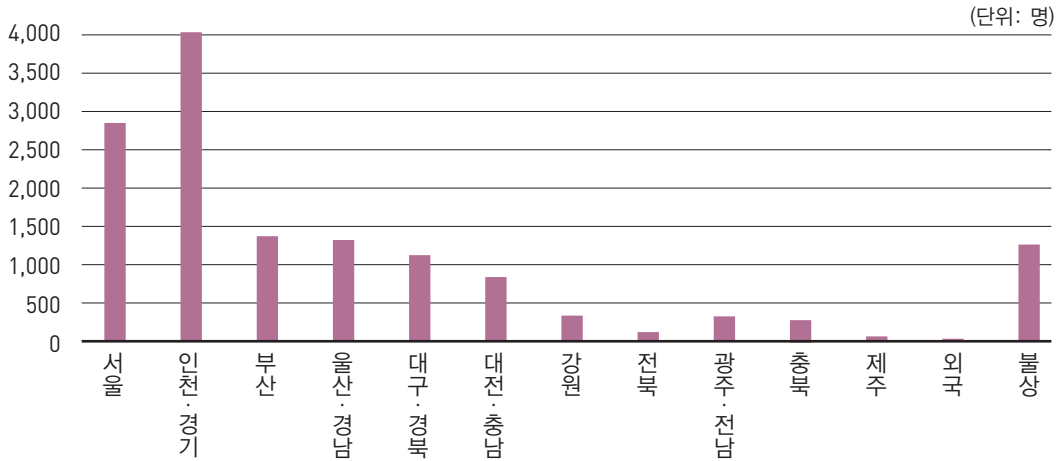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9,764 (100)	9,984 (100)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서울	1,837 (18.8)	2,123 (21.2)	2,319 (19.4)	2,792 (19.7)	2,789 (19.8)
인천·경기	2,731 (28.0)	2,683 (26.9)	3,584 (30.0)	4,010 (28.2)	4,045 (28.6)
부산	1,159 (11.9)	1,099 (11.0)	1,127 (9.5)	1,308 (9.2)	1,380 (9.8)
울산·경남	1,098 (11.2)	937 (9.4)	937 (7.9)	1,171 (8.2)	1,308 (9.3)
대구·경북	909 (9.3)	873 (8.7)	967 (8.1)	1,102 (7.8)	1,133 (8.0)
대전·충남	373 (3.8)	501 (5.0)	584 (4.9)	843 (5.9)	792 (5.6)
강원	243 (2.5)	345 (3.5)	464 (3.9)	468 (3.3)	384 (2.7)
전북	167 (1.7)	115 (1.2)	105 (0.9)	167 (1.2)	150 (1.1)
광주·전남	270 (2.8)	242 (2.4)	365 (3.1)	460 (3.2)	381 (2.7)
충북	140 (1.4)	169 (1.7)	236 (2.0)	390 (2.7)	371 (2.6)
제주	40 (0.4)	37 (0.4)	72 (0.6)	66 (0.5)	81 (0.6)
외국	45 (0.5)	18 (0.2)	31 (0.3)	31 (0.2)	20 (0.1)
불상	752 (7.7)	842 (8.4)	1,125 (9.4)	1,406 (9.9)	1,289 (9.1)

※ ( )는 구성비 %

- 2017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수도권(48.4%), 부산(9.8%), 울산·경남(9.3%), 대구·경북(8.0%), 대전·충남(5.6%) 순으로 전체사범 중 75.4%가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 전년대비 단속인원 증가율은 제주지역 22.7%, 울산·경남지역 11.7%, 부산지역 5.5% 순으로 나타남

[표 3-33]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지역별 \ 구분	2016	2017	증감률(%)
서울	2,792	2,789	-0.1
인천·경기	4,010	4,045	0.9
부산	1,308	1,380	5.5
울산·경남	1,171	1,308	11.7
대구·경북	1,102	1,133	2.8
대전·충남	843	792	-6.0
강원	468	384	-17.9
전북	167	150	-10.2

지역별	구분	2016	2017	증감률(%)
광주·전남		460	381	-17.2
충북		390	371	-4.9
제주		66	81	22.7
외국		31	20	-35.5
불상		1,406	1,289	-8.3

[표 3-34]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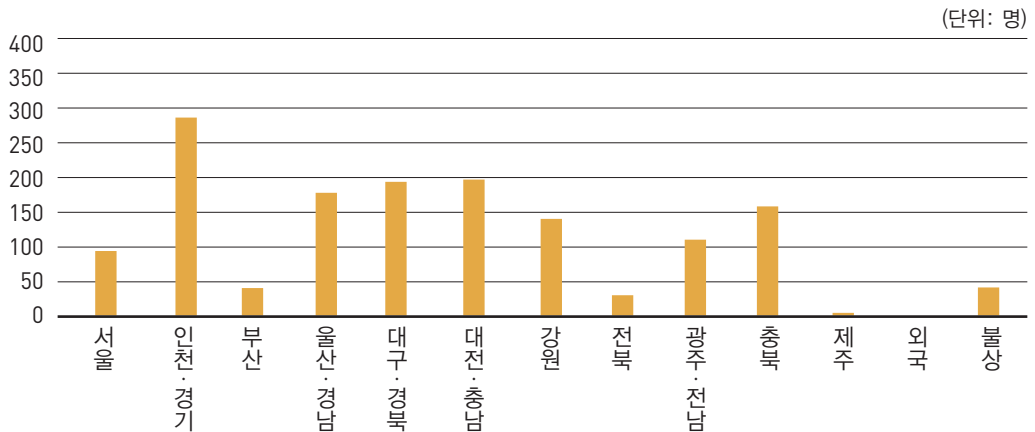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685	676	1,153	1,383	1,475
		(100)	(100)	(100)	(100)	(100)
서울		52	63	52	83	98
		(7.6)	(9.3)	(4.5)	(6.0)	(6.7)
인천·경기		224	117	352	243	279
		(32.7)	(17.3)	(30.5)	(17.6)	(18.9)
부산		32	34	35	45	42
		(4.7)	(5.1)	(3.1)	(3.2)	(2.8)
울산·경남		85	53	65	139	174
		(12.4)	(7.9)	(5.7)	(10.0)	(11.8)
대구·경북		80	88	111	153	195
		(11.7)	(13.0)	(9.6)	(11.1)	(13.2)
대전·충남		18	44	32	172	197
		(2.6)	(6.5)	(2.8)	(12.4)	(13.4)
강원		23	90	245	138	141
		(3.4)	(13.3)	(21.2)	(10.0)	(9.6)

지역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북	17 (2.5)	17 (2.5)	14 (1.2)	19 (1.4)
광주·전남		98 (14.3)	96 (14.2)	127 (11.0)	151 (10.9)	112 (7.6)
	충북	15 (2.2)	45 (6.7)	73 (6.3)	196 (14.2)	158 (10.7)
제주		3 (0.4)	1 (0.1)	1 (0.1)	2 (0.1)	5 (0.3)
	외국	5 (0.7)	1 (0.1)	3 (0.3)	8 (0.6)	0 (0.0)
불상		33 (4.8)	27 (4.0)	43 (3.7)	34 (2.5)	44 (3.0)

※ ( )는 구성비 %

[그림 3-12]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마약사범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 (18.9%), 대전·충남지역(13.4%), 대구·경북지역(13.2%) 순으로 나타남
- 인천·경기, 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전북 지역의 마약사범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강원, 광주·전남 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그 외 지역의 마약사범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표 3-35]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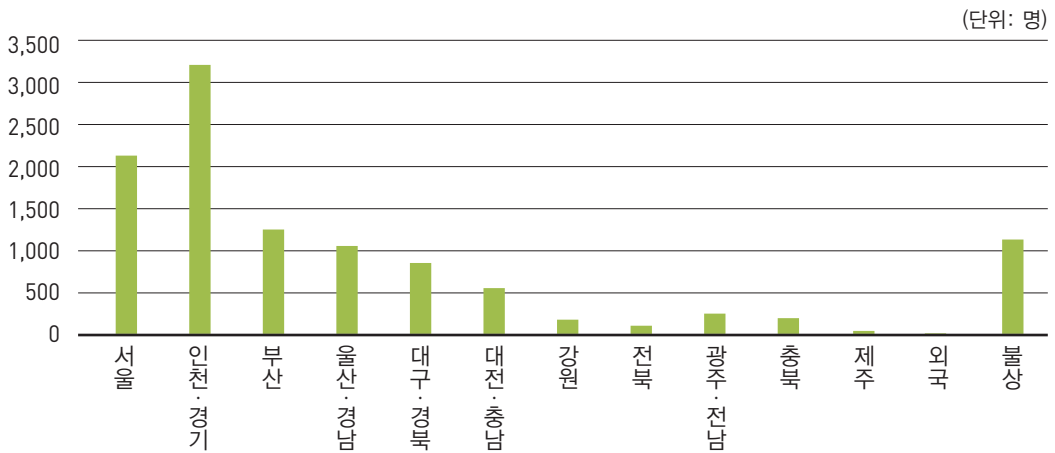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902	8,121	9,624	11,396	10,921
	(100)	(100)	(100)	(100)	(100)
서울	1,428	1,724	1,894	2,239	2,109
	(18.1)	(21.2)	(19.7)	(19.6)	(19.3)
인천·경기	2,093	2,161	2,878	3,343	3,215
	(26.5)	(26.6)	(29.9)	(29.3)	(29.5)
부산	1,077	1,010	1,057	1,216	1,217
	(13.6)	(12.4)	(11.0)	(10.7)	(11.2)
울산·경남	968	806	818	976	1,072
	(12.3)	(9.9)	(8.5)	(8.6)	(9.8)
대구·경북	764	728	793	859	853
	(9.7)	(9.0)	(8.2)	(7.5)	(7.8)
대전·충남	292	364	478	569	517
	(3.7)	(4.5)	(4.9)	(5.0)	(4.7)
강원	169	206	172	250	180
	(2.1)	(2.5)	(1.8)	(2.2)	(1.6)
전북	144	89	85	134	106
	(1.8)	(1.1)	(0.9)	(1.2)	(1.0)
광주·전남	145	136	212	276	250
	(1.8)	(1.7)	(2.2)	(2.4)	(2.3)

지역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부	96 (1.2)	104 (1.3)	147 (1.5)	168 (1.5)	189 (1.7)
제주	37 (0.5)	34 (0.4)	66 (0.7)	58 (0.5)	67 (0.6)	
외국	26 (0.3)	13 (0.2)	25 (0.3)	21 (0.2)	12 (0.1)	
불상	663 (8.4)	746 (9.2)	999 (10.4)	1,287 (11.3)	1,134 (10.4)	

※ ( )는 구성비 %

[그림 3-13]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 향정사범의 점유율은 인천·경기지역(29.5%), 서울지역(19.3%), 부산지역(11.2%) 순으로 나타남
- 부산, 울산·경남 지역의 향정사범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그 외 지역의 향정사범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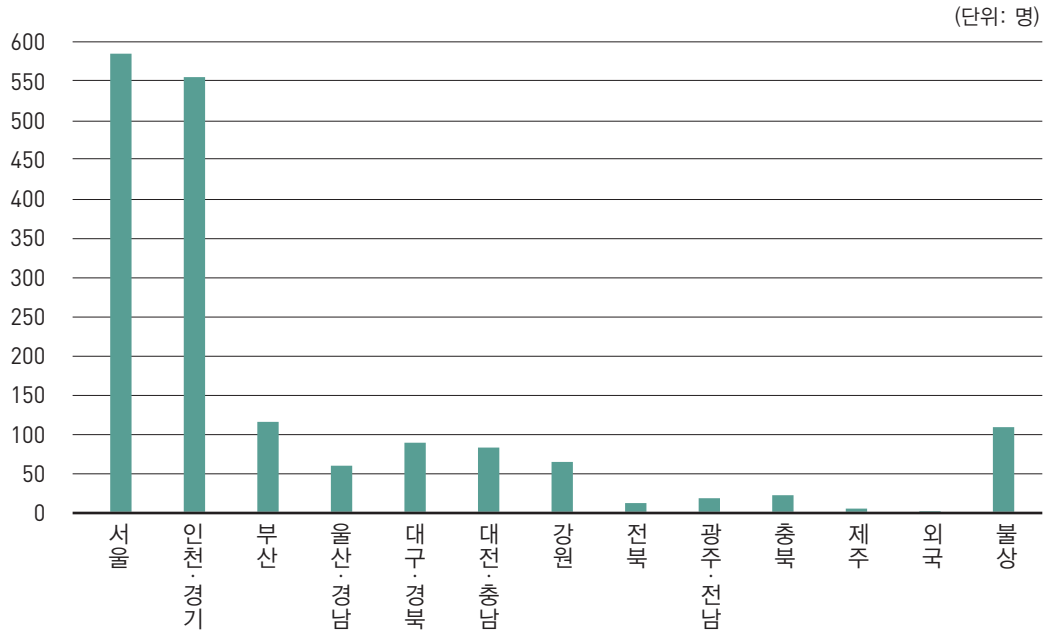
[표 3-36]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177 (100)	1,187 (100)	1,139 (100)	1,435 (100)	1,727 (100)
서울	357 (30.3)	336 (28.3)	373 (32.8)	470 (32.8)	582 (33.7)
인천·경기	414 (35.2)	405 (34.1)	354 (31.1)	424 (29.5)	551 (31.9)
부산	50 (4.2)	55 (4.6)	35 (3.1)	47 (3.3)	121 (7.0)
울산·경남	45 (3.8)	78 (6.6)	54 (4.7)	56 (3.9)	62 (3.6)
대구·경북	65 (5.5)	57 (4.8)	63 (5.5)	90 (6.3)	85 (4.9)
대전·충남	63 (5.4)	93 (7.9)	74 (6.5)	102 (7.1)	78 (4.5)
강원	51 (4.3)	49 (4.1)	47 (4.1)	80 (5.6)	63 (3.7)
전북	6 (0.5)	9 (0.8)	6 (0.5)	14 (1.0)	14 (0.8)
광주·전남	27 (2.3)	10 (0.8)	26 (2.3)	33 (2.3)	19 (1.1)
충북	29 (2.5)	20 (1.7)	16 (1.4)	26 (1.8)	24 (1.4)
제주	0 (0.0)	2 (0.2)	5 (0.4)	6 (0.4)	9 (0.5)
외국	14 (1.2)	4 (0.3)	3 (0.3)	2 (0.1)	8 (0.5)
불상	56 (4.8)	69 (5.8)	83 (7.3)	85 (5.9)	111 (6.4)

※ ( )는 구성비 %

[그림 3-14]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대마사범 점유율은 서울 지역(33.7%), 인천·경기 지역(31.9%), 부산 지역(7.0%)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인천·경기, 부산 지역의 대마사범 점유율은 증가하였으나, 대구·경북, 대전·충남, 강원 지역의 점유율은 감소함. 그 외 지역의 대마사범 점유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 10. 직업별 현황

[표 3-37]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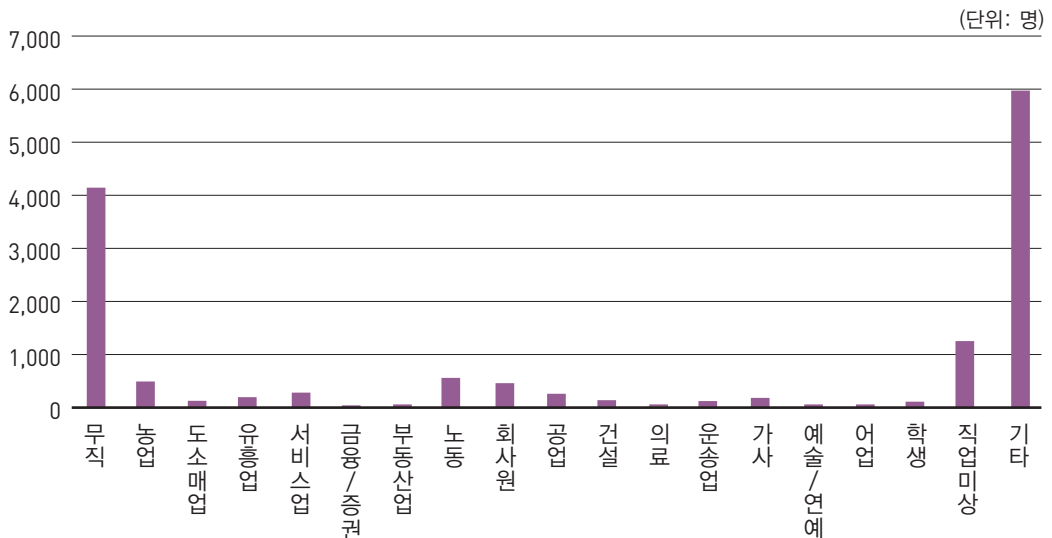
직업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9,764 (100)	9,984 (100)	11,916 (100)	14,214 (100)	14,123 (100)
무직	2,693 (27.6)	2,626 (26.3)	3,442 (28.9)	4,105 (28.9)	4,073 (28.8)
농업	288 (2.9)	249 (2.5)	478 (4.0)	476 (3.3)	487 (3.5)
도소매업	77 (0.8)	90 (0.9)	99 (0.8)	110 (0.8)	96 (0.7)
유흥업	75 (0.8)	63 (0.6)	62 (0.5)	81 (0.6)	131 (0.9)
서비스업	127 (1.3)	134 (1.3)	150 (1.3)	159 (1.1)	184 (1.3)
금융/증권	17 (0.2)	6 (0.1)	18 (0.2)	18 (0.1)	15 (0.1)
부동산업	23 (0.2)	23 (0.2)	35 (0.3)	38 (0.3)	37 (0.3)
노동	270 (2.8)	293 (2.9)	359 (3.0)	446 (3.1)	534 (3.8)
회사원	335 (3.4)	427 (4.3)	514 (4.3)	492 (3.5)	522 (3.7)
공업	68 (0.7)	80 (0.8)	88 (0.7)	142 (1.0)	233 (1.7)
건설	52 (0.5)	60 (0.6)	68 (0.6)	72 (0.5)	118 (0.8)
의료	114 (1.2)	40 (0.4)	51 (0.4)	86 (0.6)	42 (0.3)
운송업	87 (0.9)	74 (0.7)	86 (0.7)	98 (0.7)	116 (0.8)
가사	106 (1.1)	95 (1.0)	138 (1.2)	153 (1.1)	152 (1.1)

연도별 직업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술/연예	17 (0.2)	23 (0.2)	18 (0.2)	32 (0.2)	46 (0.3)
어업	40 (0.4)	37 (0.4)	38 (0.3)	39 (0.3)	45 (0.3)
학생	83 (0.8)	104 (1.1)	139 (1.1)	80 (0.6)	105 (0.7)
직업미상	1,025 (10.5)	1,109 (11.1)	1,165 (9.8)	1,241 (8.7)	1,190 (8.4)
기타	4,267 (43.7)	4,451 (44.6)	4,968 (41.7)	6,346 (44.6)	5,997 (42.5)

※ ( )는 구성비 %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28.8%), 노동(3.8%), 회사원(3.7%), 농업(3.5%) 순으로 나타남
- 그 중 마약사범의 경우 무직, 농업, 가사 순이고, 향정사범의 경우 무직, 노동, 회사원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무직, 회사원, 노동, 농업 순으로 그 점유율을 보임

[그림 3-15]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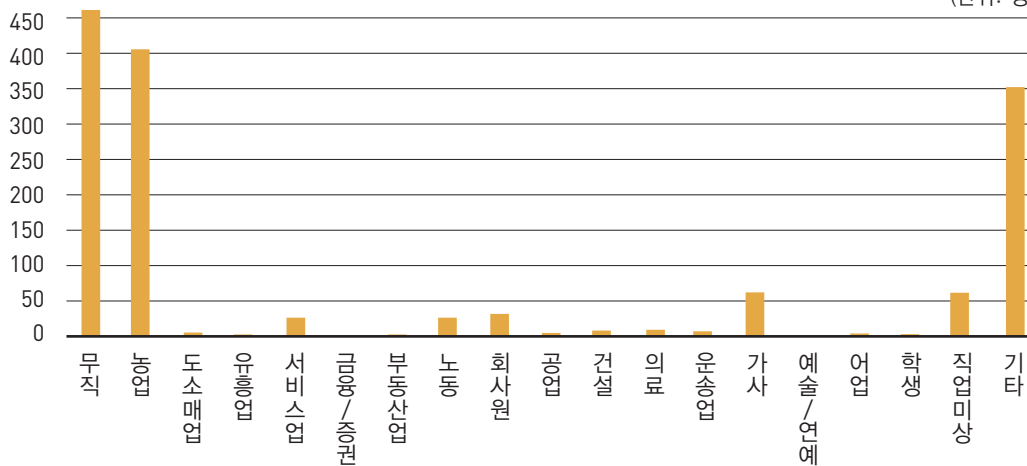
[표 3-38]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685	676	1,153	1,383	1,475
무직	191	154	358	423	460
농업	200	168	391	384	406
도소매업	5	2	1	5	3
유흥업	2	2	1	1	1
서비스업	5	6	7	7	27
금융/증권	1	0	0	1	0
부동산업	2	0	0	2	1
노동	11	5	21	18	27
회사원	15	8	23	27	34
공업	2	2	2	2	4
건설	1	2	2	1	10
의료	12	7	6	30	12
운송업	2	1	6	4	9
가사	32	43	47	61	60
예술/연예	0	0	0	0	0
어업	6	4	7	4	3
학생	0	6	0	3	2
직업미상	25	39	62	50	63
기타	173	227	219	360	353

[그림 3-16]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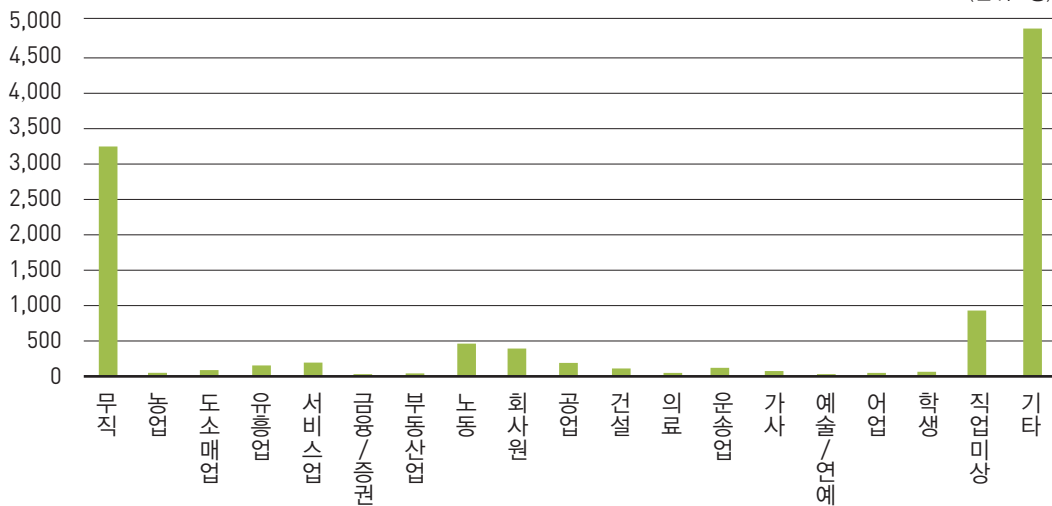
[표 3-39]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7,902	8,121	9,624	11,396	10,921
무직	2,293	2,248	2,836	3,400	3,245
농업	41	42	59	49	39
도소매업	70	78	87	100	86
유흥업	64	53	57	72	119
서비스업	100	106	124	127	128
금융/증권	14	6	13	17	15
부동산업	21	19	32	33	27
노동	223	252	302	386	460
회사원	253	344	399	395	393
공업	58	51	68	120	209
건설	48	52	57	62	93
의료	101	33	45	55	30
운송업	68	58	71	81	103
가사	73	46	91	88	81
예술/연예	8	10	10	7	14
어업	26	25	29	32	40
학생	44	53	77	50	66
직업미상	883	961	988	1,075	932
기타	3,514	3,684	4,279	5,247	4,841

[그림 3-17] 향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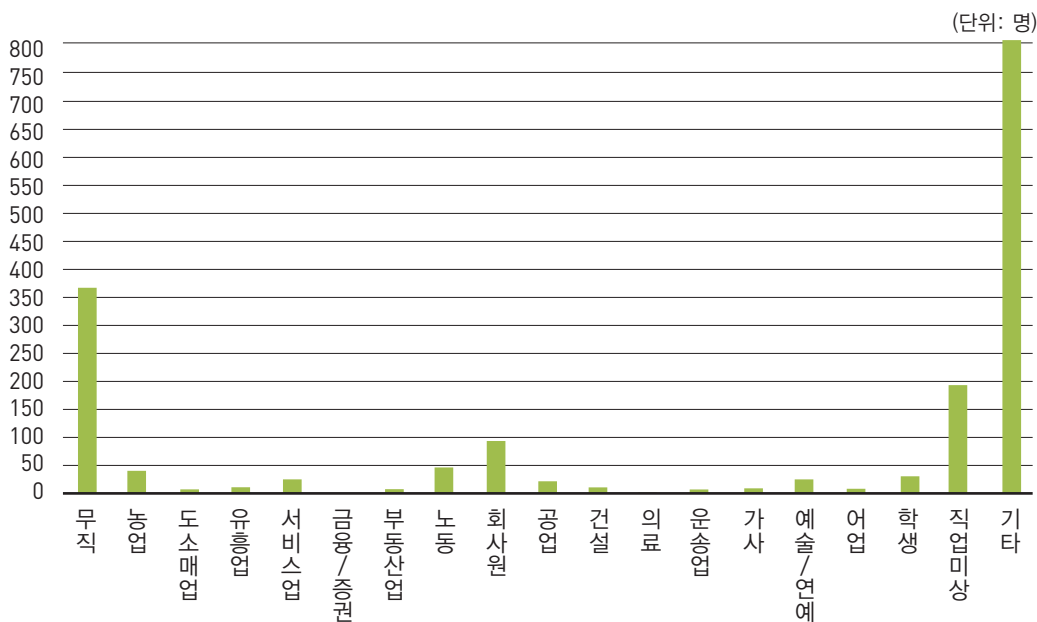


[표 3-40]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177	1,187	1,139	1,435	1,727
무직	209	224	248	282	368
농업	47	39	28	43	42
도소매업	2	10	11	5	7
유흥업	9	8	4	8	11
서비스업	22	22	19	25	29
금융/증권	2	0	5	0	0
부동산업	0	4	3	3	9
노동	36	36	36	42	47
회사원	67	75	92	70	95
공업	8	27	18	20	20
건설	3	6	9	9	15
의료	1	0	0	1	0
운송업	17	15	9	13	4
가사	1	6	0	4	11
예술/연예	9	13	8	25	32
어업	8	8	2	3	2
학생	39	45	62	27	37
직업미상	117	109	115	116	195
기타	580	540	470	739	803

[그림 3-18]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 11. 연령별 현황

[표 3-41]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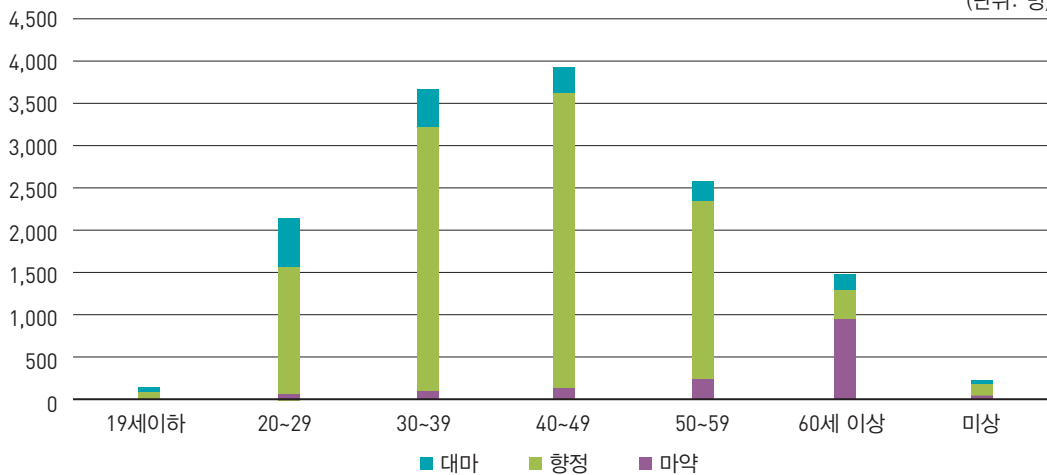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마약류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대마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8)	(34.2)	(26.3)	(17.8)	(9.3)	(7.5)	(2.0)	(100)
향정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마약	0	42	85	112	223	990	23	1,475
	(0.0)	(2.8)	(5.8)	(7.6)	(15.1)	(67.1)	(1.6)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19]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 중 30~50대가 72.1%(전년도 75.1%)를 차지하여 중·장년층 마약류범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7년 19세 이하 적발인원이 119명으로 전년대비(전년도 121명) 소폭 감소하였으나 4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120명대 유지

[표 3-42]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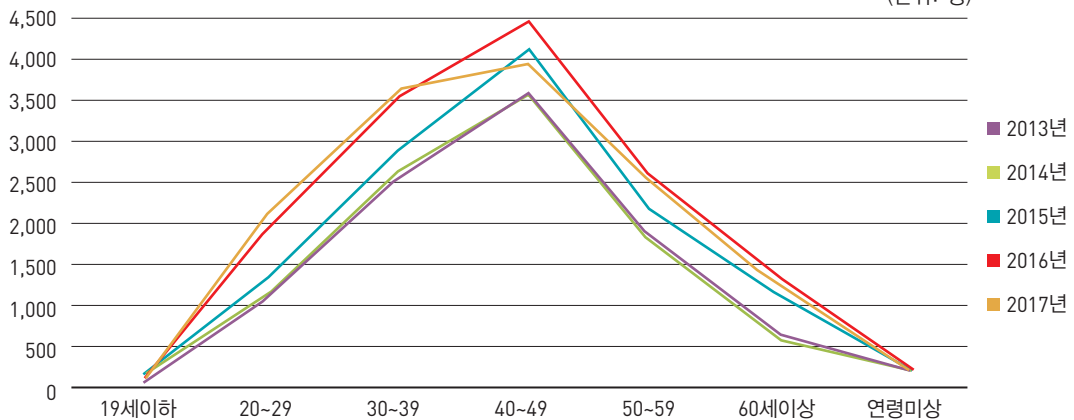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3	58	1,010	2,500	3,539	1,833	642	182	9,764
	(0.6)	(10.3)	(25.6)	(36.2)	(18.8)	(6.6)	(1.9)	(100)
2014	102	1,174	2,640	3,542	1,768	603	155	9,984
	(1.0)	(11.8)	(26.4)	(35.5)	(17.7)	(6.0)	(1.6)	(100)
2015	128	1,305	2,878	4,099	2,190	1,124	192	11,916
	(1.1)	(10.9)	(24.2)	(34.4)	(18.4)	(9.4)	(1.6)	(100)
2016	121	1,842	3,526	4,496	2,659	1,378	192	14,214
	(0.9)	(13.0)	(24.8)	(31.6)	(18.7)	(9.7)	(1.3)	(100)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0.8)	(15.0)	(26.0)	(27.8)	(18.3)	(10.6)	(1.5)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0] 연도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17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475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하였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60세 이상임.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여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마약사범의 50세 이상 점유율은 83.8%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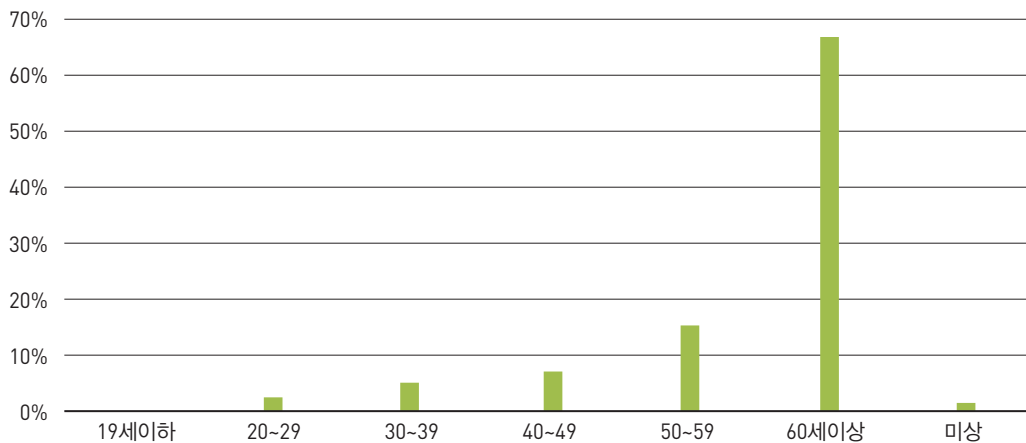
[표 3-43]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3	2	23	52	66	118	393	31	685
	(0.3)	(3.4)	(7.6)	(9.6)	(17.2)	(57.4)	(4.5)	(100)
2014	0	33	57	67	119	377	23	676
	(0.0)	(4.9)	(8.4)	(9.9)	(17.6)	(55.8)	(3.4)	(100)
2015	0	24	53	77	231	743	25	1,153
	(0.0)	(2.1)	(4.6)	(6.7)	(20.0)	(64.4)	(2.2)	(100)
2016	2	37	57	114	230	918	25	1,383
	(0.1)	(2.7)	(4.1)	(8.3)	(16.6)	(66.4)	(1.8)	(100)
2017	0	42	85	112	223	990	23	1,475
	(0.0)	(2.8)	(5.8)	(7.6)	(15.1)	(67.1)	(1.6)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1]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 2017년 향정사범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가운데 30~50대가 80.9%로 대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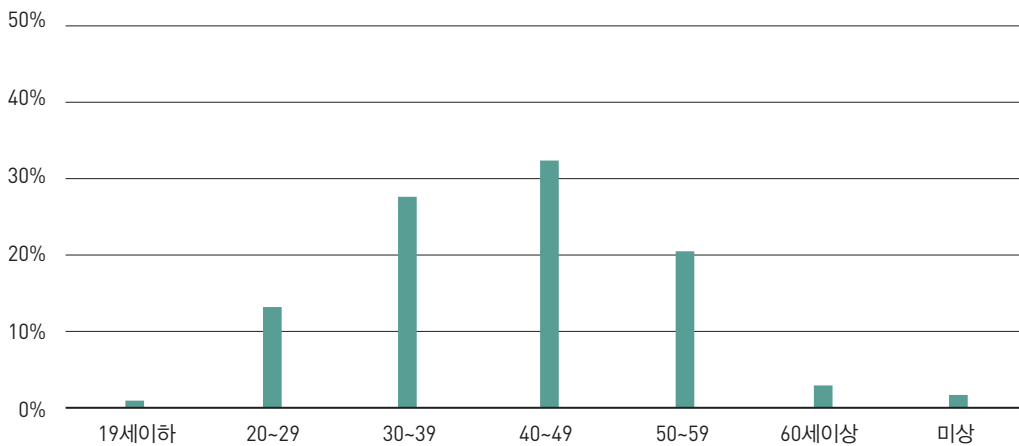
[표 3-44]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3	39	674	2,154	3,202	1,531	181	121	7,902
	(0.5)	(8.5)	(27.3)	(40.5)	(19.4)	(2.3)	(1.5)	(100)
2014	48	819	2,279	3,196	1,480	183	116	8,121
	(0.6)	(10.1)	(28.1)	(39.3)	(18.2)	(2.3)	(1.4)	(100)
2015	78	970	2,548	3,786	1,786	318	138	9,624
	(0.8)	(10.1)	(26.5)	(39.3)	(18.6)	(3.3)	(1.4)	(100)
2016	91	1,401	3,060	4,094	2,228	373	149	11,396
	(0.8)	(12.3)	(26.8)	(35.9)	(19.6)	(3.3)	(1.3)	(100)
2017	70	1,480	3,136	3,499	2,205	372	159	10,921
	(0.6)	(13.6)	(28.7)	(32.0)	(20.2)	(3.4)	(1.5)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2]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 2017년 대마사범은 전년대비 20.3% 증가하였으며, 20~40대가 74.3%로 대다수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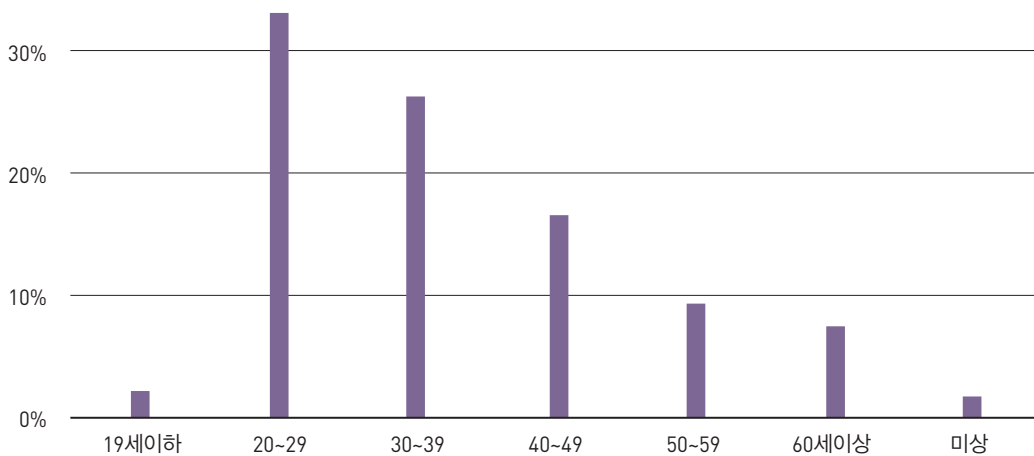
[표 3-45]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연도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3	17	313	294	271	184	68	30	1,177
	(1.4)	(26.6)	(25.0)	(23.1)	(15.6)	(5.8)	(2.5)	(100)
2014	56	320	304	279	169	43	16	1,187
	(4.7)	(27.0)	(25.6)	(23.5)	(14.3)	(3.6)	(1.3)	(100)
2015	50	311	277	236	173	63	29	1,139
	(4.4)	(27.3)	(24.3)	(20.7)	(15.2)	(5.6)	(2.5)	(100)
2016	28	404	409	288	201	87	18	1,435
	(1.9)	(28.1)	(28.5)	(20.1)	(14.0)	(6.1)	(1.3)	(100)
2017	49	590	455	308	161	129	35	1,727
	(2.8)	(34.2)	(26.4)	(17.8)	(9.3)	(7.5)	(2.0)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3]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 12. 성별 현황

- 2013~2015년 간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점유율이 14%~19%에 달하였으나, 2016년에는 20.4%를 차지하고 그 인원도 2,899명으로 전년대비 27.6%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점유율이 21.4%를 차지하고 그 인원도 3,021명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음
- 2017년 여성 마약류사범은, 마약의 경우 761명으로 전년대비 2.7%, 향정의 경우 2,026명으로 전년대비 1.4%, 대마의 경우 234명으로 전년대비 47.2% 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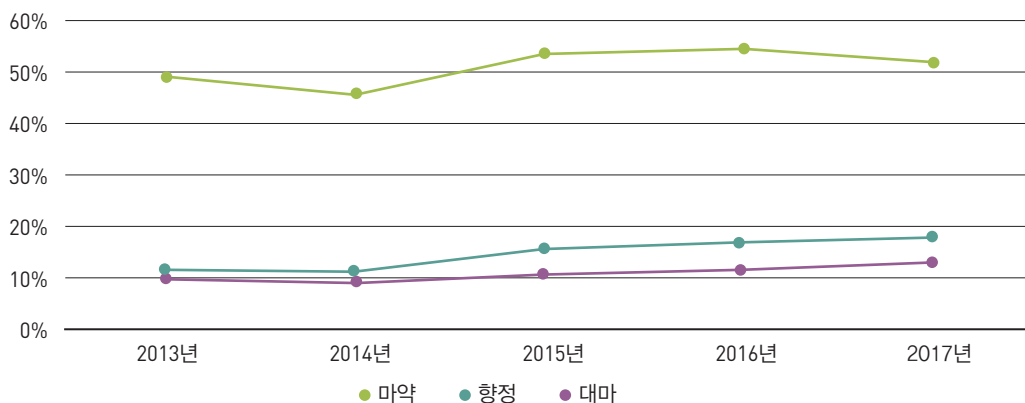
[표 3-46]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3		350	335	6,951	951	1,056	121	8,357	1,407
		(51.1)	(48.9)	(88.0)	(12.0)	(89.7)	(10.3)	(85.6)	(14.4)
2014		367	309	7,167	954	1,072	115	8,606	1,378
		(54.3)	(45.7)	(88.3)	(11.7)	(90.3)	(9.7)	(86.2)	(13.8)
2015		541	612	8,086	1,538	1,017	122	9,644	2,272
		(46.9)	(53.1)	(84.0)	(16.0)	(89.3)	(10.7)	(80.9)	(19.1)
2016		642	741	9,397	1,999	1,276	159	11,315	2,899
		(46.4)	(53.6)	(82.5)	(17.5)	(88.9)	(11.1)	(79.6)	(20.4)
2017		714	761	8,895	2,026	1,493	234	11,102	3,021
		(48.4)	(51.6)	(81.4)	(18.6)	(86.5)	(13.5)	(78.6)	(21.4)

※ ( )는 구성비 %

[그림 3-24]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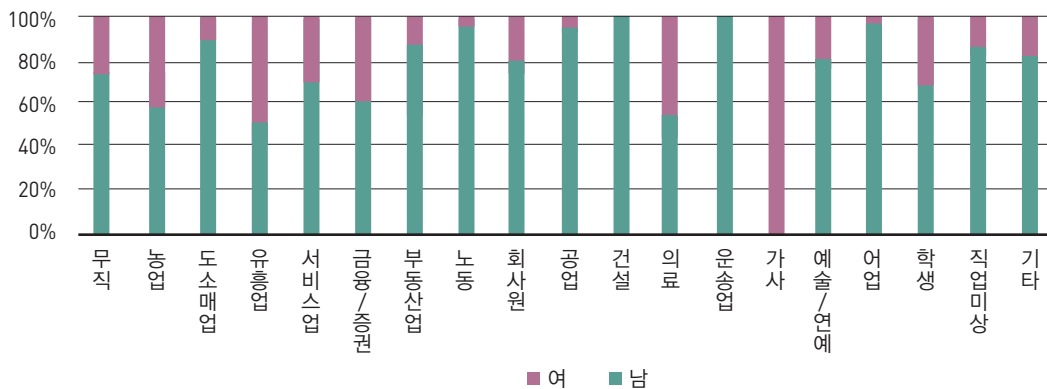
[표 3-47]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단위: 명)

직업별	성별	남		여	
		인원	구성비 (%)	인원	구성비 (%)
합계		11,102	(78.6)	3,021	(21.4)
무직		2,926	(71.8)	1,147	(28.2)
농업		290	(59.5)	197	(40.5)
도소매업		85	(88.5)	11	(11.5)
유흥업		63	(48.5)	67	(51.5)
서비스업		130	(70.7)	54	(29.3)
금융/증권		9	(60.0)	6	(40.0)
부동산업		32	(86.5)	5	(13.5)
노동		520	(97.4)	14	(2.6)
회사원		418	(80.1)	104	(19.9)
공업		226	(97.0)	7	(3.0)
건설		118	(100.0)	0	(0.0)
의료		24	(57.1)	18	(42.9)
운송업		116	(100.0)	0	(0.0)
가사		0	(0.0)	152	(100.0)
예술/연예		37	(80.4)	9	(19.6)
어업		44	(97.8)	1	(2.2)
학생		73	(69.5)	32	(30.5)
직업미상		1,039	(87.3)	151	(12.7)
기타		4,952	(82.6)	1,046	(17.4)

※ ( )는 구성비 %

[그림 3-25] 마약류사범 성별·직업별 구성비





### 13. 학력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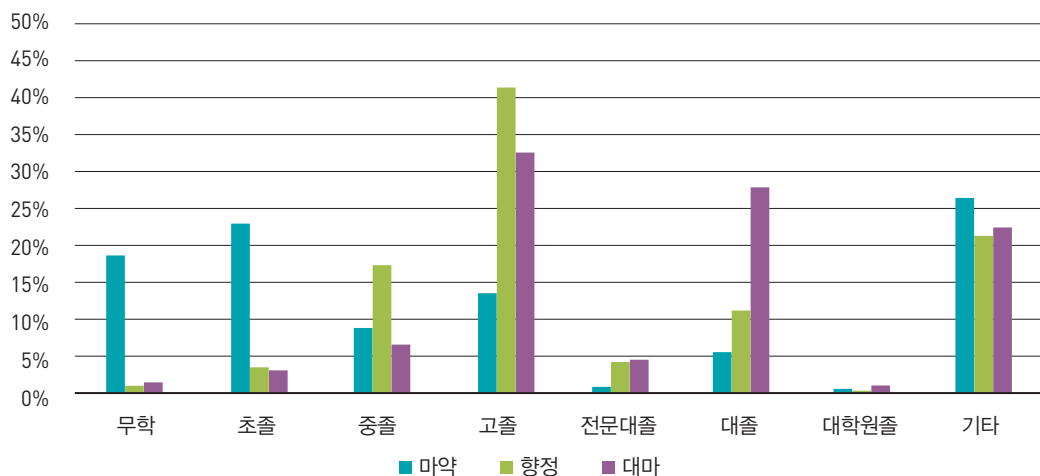
- 전체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60.7%(전년도 63.0%)로 다수를 차지함
-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는 마약사범의 경우 무학자(18.8%)와 초졸(2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향정사범의 경우 고졸, 중졸, 대졸 순이며, 대마사범의 경우 고졸, 대졸, 중졸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8]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학력별 마약류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18.8	23.4	9.3	14.2	0.9	5.5	0.8	27.1	100
향정	1.1	3.3	17.2	40.9	4.5	11.6	0.6	20.8	100
대마	1.8	2.9	6.4	32.9	4.7	28.2	1.0	22.1	100
합계	3.0	5.3	15.1	37.2	4.1	13.0	0.7	21.6	100

[그림 3-26]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 14. 범죄원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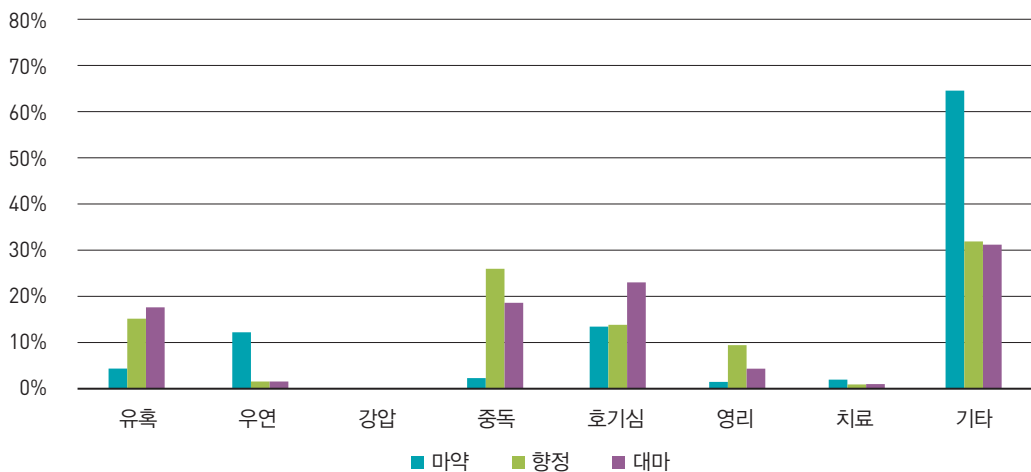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4.2%), 유혹(14.8%), 호기심(14.5%) 순으로 그 중 유혹과 호기심이 29.3%를 차지함에 따라 마약류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영리목적 마약류범죄는 향정사범이 9.5%를 차지하여 다른 마약류사범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9.8%) 3.0% 감소함

[표 3-49]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원인별 마약류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4.7	11.7	0.0	2.4	13.2	1.4	1.8	64.8	100
향정	15.5	1.7	0.1	27.8	13.3	9.5	0.9	31.2	100
대마	18.5	1.6	0.0	19.4	23.4	5.1	1.0	31.0	100
합계	14.8	2.7	0.1	24.2	14.5	8.1	1.0	34.6	100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 15. 범행 장소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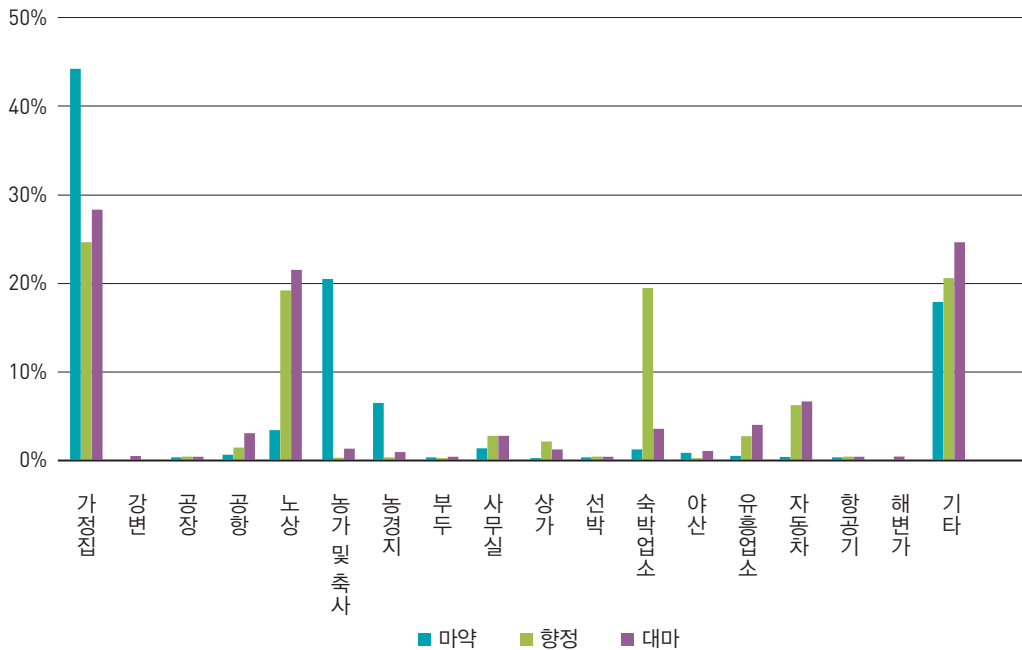
[표 3-50] 마약류사범 범행장소별 구성비

(단위: %)

범행장소별 \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가정집	44.0	24.0	28.6	26.6
강변	0.0	0.0	0.3	0.0
공장	0.1	0.2	0.2	0.2
공항	0.5	1.7	3.0	1.7
노상	3.7	19.2	21.5	17.9
농가 및 축사	20.8	0.2	0.9	2.4
농경지	6.9	0.1	0.6	0.9
부두	0.2	0.1	0.2	0.1
사무실	1.9	2.9	2.9	2.8
상가	0.1	2.4	1.2	2.0
선박	0.2	0.0	0.2	0.1
숙박업소	1.4	19.5	3.5	15.7
야산	1.0	0.1	1.1	0.3
유흥업소	0.8	2.5	3.7	2.5
자동차	0.6	6.3	6.7	5.8
항공기	0.1	0.1	0.5	0.2
해변가	0.0	0.0	0.3	0.1
기타	17.7	20.7	24.6	20.9
합계	100	100	100	100

- 범행은 가정집(26.6%), 노상(17.9%), 숙박업소(15.7%)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특별한 범행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은밀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음
- 마약류사범별로 살펴보면,
  - 마약사범 범행장소는 가정집, 농가·축사가 64.8%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도서지역 등의 소규모 양귀비 재배사범이 주종을 이루는 것에 기인함
  - 향정사범의 투약은 가정집, 노상, 숙박업소 등 비교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 장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이 큰 점유율을 차지함
  - 대마사범 범행장소는 가정집, 노상, 자동차, 숙박업소가 53.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흡연의 용이성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3-28]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 16. 검찰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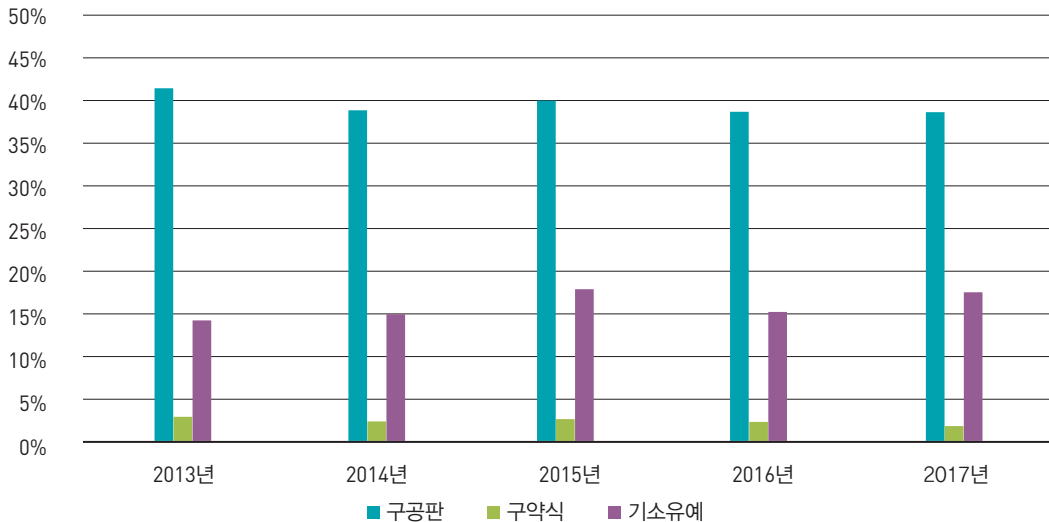
[표 3-51]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기타	
2013	10,371	4,286	335	1,495	914	945	3	1,723	224	446
	(100)	(41.3)	(3.3)	(14.4)	(8.8)	(9.1)	(0.0)	(16.6)	(2.2)	(4.3)
2014	10,222	3,949	266	1,538	919	973	13	1,808	238	518
	(100)	(38.6)	(2.6)	(15.1)	(9.0)	(9.5)	(0.1)	(17.7)	(2.3)	(5.1)
2015	12,534	5,024	404	2,240	821	1,181	2	2,033	217	612
	(100)	(40.1)	(3.2)	(17.9)	(6.6)	(9.4)	(0.0)	(16.2)	(1.7)	(4.9)
2016	14,897	5,720	418	2,327	913	1,534	1	2,799	208	977
	(100)	(38.4)	(2.8)	(15.6)	(6.1)	(10.3)	(0.0)	(18.8)	(1.4)	(6.6)
2017	15,219	5,883	354	2,603	841	1,607	6	2,909	208	808
	(100)	(38.7)	(2.3)	(17.1)	(5.5)	(10.6)	(0.0)	(19.1)	(1.4)	(5.3)

※ ( )는 구성비 %

[그림 3-29] 마약류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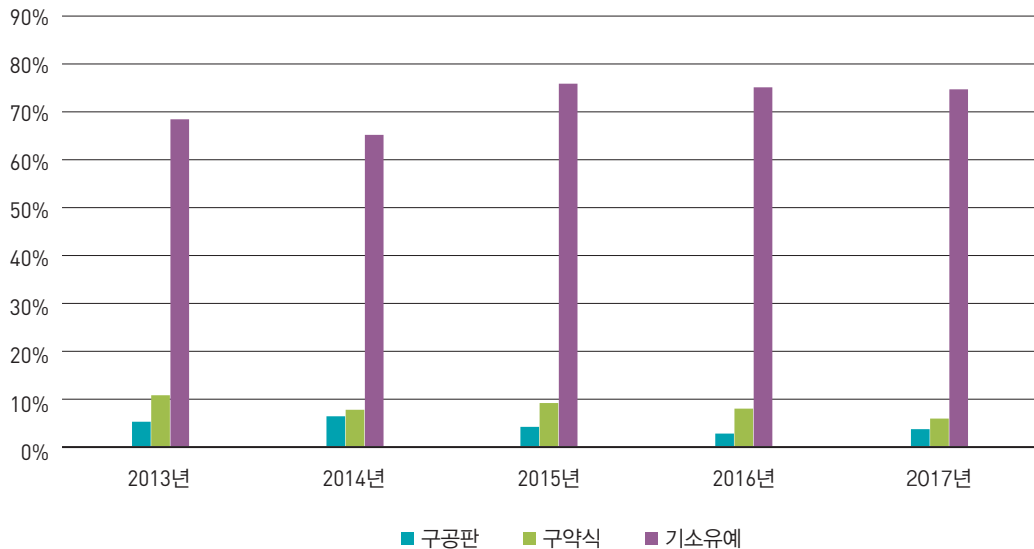
[표 3-52] 마약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3	669	36	70	457	18	36	0	19	19	14
	(100)	(5.4)	(10.5)	(68.3)	(2.7)	(5.4)	(0.0)	(2.8)	(2.8)	(2.1)
2014	677	49	59	441	18	54	0	18	30	8
	(100)	(7.2)	(8.7)	(65.1)	(2.7)	(8.0)	(0.0)	(2.7)	(4.4)	(1.2)
2015	1,111	49	100	852	14	36	0	19	21	20
	(100)	(4.4)	(9.0)	(76.7)	(1.3)	(3.2)	(0.0)	(1.7)	(1.9)	(1.8)
2016	1,354	46	117	1,005	13	96	0	40	28	9
	(100)	(3.4)	(8.6)	(74.2)	(1.0)	(7.1)	(0.0)	(2.9)	(2.1)	(0.7)
2017	1,479	60	93	1,094	29	90	0	48	44	21
	(100)	(4.0)	(6.3)	(74.0)	(2.0)	(6.1)	(0.0)	(3.2)	(3.0)	(1.4)

※ ( )는 구성비 %

[그림 3-30] 마약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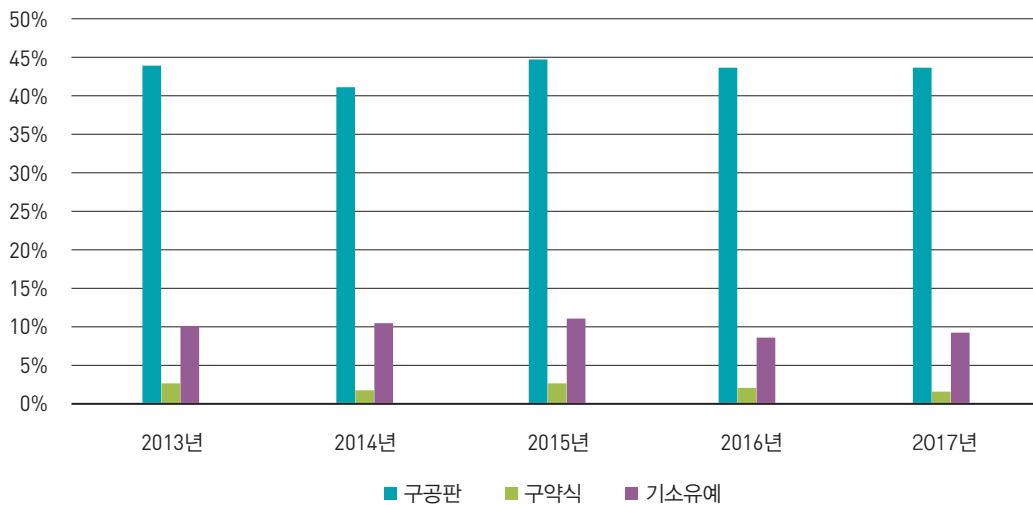
[표 3-53] 행정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3	8,495	3,745	210	857	812	807	2	1,518	172	372
	(100)	(44.1)	(2.5)	(10.1)	(9.5)	(9.5)	(0.0)	(17.9)	(2.0)	(4.4)
2014	8,347	3,485	158	890	837	818	4	1,554	180	421
	(100)	(41.8)	(1.9)	(10.7)	(10.0)	(9.8)	(0.0)	(18.6)	(2.2)	(5.0)
2015	10,223	4,561	260	1,122	749	1,030	2	1,788	168	543
	(100)	(44.6)	(2.5)	(11.0)	(7.4)	(10.1)	(0.0)	(17.5)	(1.6)	(5.3)
2016	12,116	5,217	252	1,043	839	1,311	1	2,469	150	834
	(100)	(43.1)	(2.1)	(8.6)	(7.0)	(10.7)	(0.0)	(20.4)	(1.3)	(6.8)
2017	11,919	5,141	200	1,135	742	1,358	6	2,525	146	666
	(100)	(43.1)	(1.7)	(9.5)	(6.2)	(11.4)	(0.1)	(21.2)	(1.2)	(5.6)

※ ( )는 구성비 %

[그림 3-31] 행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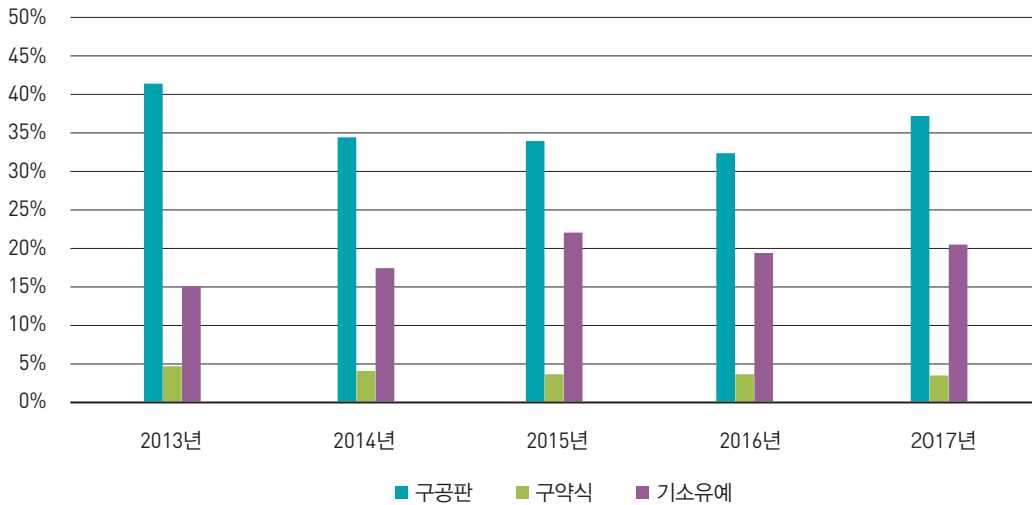
[표 3-54] 대마사범 처리내역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2013	1,207	505	55	181	84	102	1	186	33	60
	(100)	(41.8)	(4.5)	(15.0)	(7.0)	(8.5)	(0.1)	(15.4)	(2.7)	(5.0)
2014	1,198	415	49	207	64	101	9	236	28	89
	(100)	(34.7)	(4.1)	(17.3)	(5.3)	(8.4)	(0.8)	(19.7)	(2.3)	(7.4)
2015	1,200	414	44	266	58	115	0	226	28	49
	(100)	(34.5)	(3.7)	(22.2)	(4.8)	(9.6)	(0.0)	(18.8)	(2.3)	(4.1)
2016	1,427	457	49	279	61	127	0	290	30	134
	(100)	(32.0)	(3.4)	(19.6)	(4.3)	(8.9)	(0.0)	(20.3)	(2.1)	(9.4)
2017	1,821	682	61	374	70	159	0	336	18	121
	(100)	(37.5)	(3.4)	(20.5)	(3.8)	(8.7)	(0.0)	(18.5)	(1.0)	(6.6)

※ ( )는 구성비 %

[그림 3-32]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38.7%로 일반 형사사범(9.5%) 보다 높게 나타남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2.3%로 일반 형사사범(29.9%) 보다 낮은 편이나, 기소유예율은 17.1%로 일반 형사사범(13.3%) 보다 높게 나타남
- 2017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향정사범이 43.1%, 대마사범이 37.5%이나, 마약사범은 4.1%에 불과함.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 처분(74.0%)을 하고 있기 때문임

## 17. 마약류사범 1심 재판결과

[표 3-55]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재판결과	합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합계	2015	3,695	131	1,331	600	1,358	143	10	2	0	120
		(100)	(3.5)	(36.0)	(16.2)	(36.8)	(3.9)	(0.3)	(0.1)	(0.0)	(3.2)
	2016	4,609	135	1,639	741	1,756	201	18	6	0	113
		(100)	(2.9)	(35.5)	(16.1)	(38.1)	(4.4)	(0.4)	(0.1)	(0.0)	(2.5)
	2017	4,681	169	1,876	663	1,633	213	12	2	0	113
		(100)	(3.6)	(40.1)	(14.2)	(34.9)	(4.5)	(0.3)	(0.0)	(0.0)	(2.4)
마약	2015	43	8	13	2	7	4	1	0	0	8
		(100)	(18.6)	(30.2)	(4.7)	(16.3)	(9.3)	(2.3)	(0.0)	(0.0)	(18.6)
	2016	57	11	25	2	6	5	1	0	0	7
		(100)	(19.3)	(43.9)	(3.5)	(10.5)	(8.8)	(1.7)	(0.0)	(0.0)	(12.3)
	2017	58	19	16	3	12	2	1	0	0	5
		(100)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향정	2015	3,288	96	1,064	569	1,310	133	9	2	0	105
		(100)	(2.9)	(32.4)	(17.3)	(39.8)	(4.0)	(0.3)	(0.1)	(0.0)	(3.2)
	2016	4,170	95	1,356	685	1,719	192	17	6	0	100
		(100)	(2.3)	(32.5)	(16.4)	(41.2)	(4.6)	(0.4)	(0.2)	(0.0)	(2.4)
	2017	4,082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1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대마	2015	364	27	254	29	41	6	0	0	0	7
		(100)	(7.4)	(69.8)	(8.0)	(11.3)	(1.6)	(0.0)	(0.0)	(0.0)	(1.9)
	2016	382	29	258	54	31	4	0	0	0	6
		(100)	(7.6)	(67.6)	(14.1)	(8.1)	(1.0)	(0.0)	(0.0)	(0.0)	(1.6)
	2017	541	30	370	70	51	13	0	0	0	7
		(100)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2017년 1심 재판결과 점유율은 실형(53.9%), 집행유예(40.1%), 벌금(3.6%) 순으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점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정자가 많고 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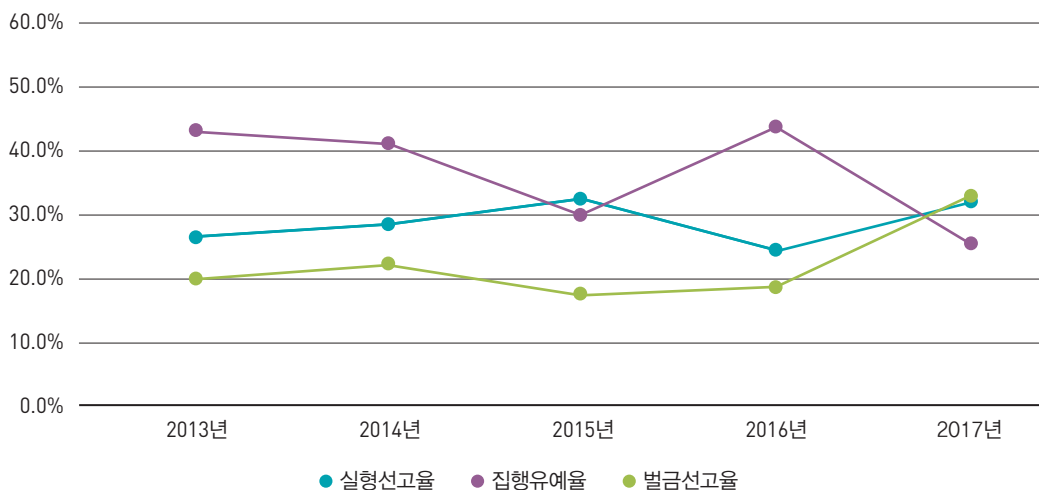
[표 3-56]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무기	기타 <sup>15)</sup>
2013	6	13	0	4	3	0	1	0	3
	(20.0)	(43.3)	(0.0)	(13.4)	(10.0)	(0.0)	(3.3)	(0.0)	(10.0)
2014	11	20	2	7	5	0	0	0	4
	(22.4)	(40.8)	(4.1)	(14.3)	(10.2)	(0.0)	(0.0)	(0.0)	(8.2)
2015	8	13	2	7	4	1	0	0	8
	(18.6)	(30.2)	(4.7)	(16.3)	(9.3)	(2.3)	(0.0)	(0.0)	(18.6)
2016	11	25	2	6	5	1	0	0	7
	(19.3)	(43.9)	(3.5)	(10.5)	(8.8)	(1.7)	(0.0)	(0.0)	(12.3)
2017	19	16	3	12	2	1	0	0	5
	(32.8)	(27.6)	(5.2)	(20.7)	(3.4)	(1.7)	(0.0)	(0.0)	(8.6)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3]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15) 무죄선고,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소년부송치, 구류·과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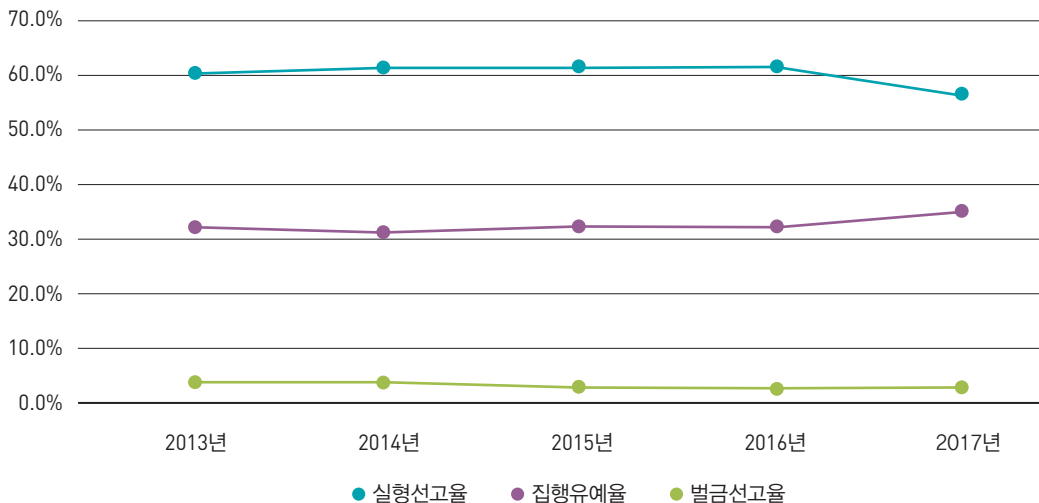
[표 3-57] 향정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3	110	934	499	1,149	103	6	2	0	107
	(3.8)	(32.1)	(17.1)	(39.5)	(3.5)	(0.2)	(0.1)	(0.0)	(3.7)
2014	103	920	462	1,202	123	15	11	0	116
	(3.5)	(31.2)	(15.7)	(40.7)	(4.1)	(0.5)	(0.4)	(0.0)	(3.9)
2015	96	1,064	569	1,310	133	9	2	0	105
	(2.9)	(32.4)	(17.3)	(39.8)	(4.0)	(0.3)	(0.1)	(0.0)	(3.2)
2016	95	1,356	685	1,719	192	17	6	0	100
	(2.3)	(32.5)	(16.4)	(41.2)	(4.6)	(0.4)	(0.2)	(0.0)	(2.4)
2017	120	1,490	590	1,570	198	11	2	0	100
	(2.9)	(36.5)	(14.5)	(38.5)	(4.8)	(0.3)	(0.0)	(0.0)	(2.5)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4] 향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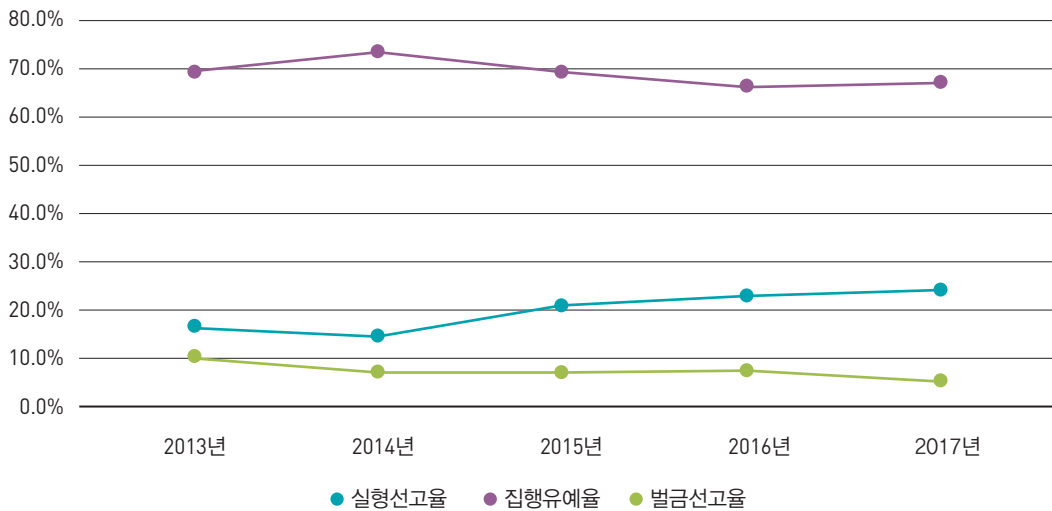
[표 3-58]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3	44	291	25	45	2	0	0	0	10
	(10.6)	(69.8)	(6.0)	(10.8)	(0.5)	(0.0)	(0.0)	(0.0)	(2.4)
2014	29	269	30	25	0	0	0	0	11
	(8.0)	(73.9)	(8.2)	(6.9)	(0.0)	(0.0)	(0.0)	(0.0)	(3.0)
2015	27	254	29	41	6	0	0	0	7
	(7.4)	(69.8)	(8.0)	(11.3)	(1.6)	(0.0)	(0.0)	(0.0)	(1.9)
2016	29	258	54	31	4	0	0	0	6
	(7.6)	(67.6)	(14.1)	(8.1)	(1.0)	(0.0)	(0.0)	(0.0)	(1.6)
2017	30	370	70	51	13	0	0	0	7
	(5.5)	(68.4)	(13.0)	(9.4)	(2.4)	(0.0)	(0.0)	(0.0)	(1.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5]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 18.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별 비율

[표 3-59]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3	26 (44.1)	24 (40.6)	2 (3.4)	7 (11.9)	59 (100)
2014	24 (34.3)	32 (45.7)	1 (1.4)	13 (18.6)	70 (100)
2015	32 (43.2)	29 (39.2)	2 (2.7)	11 (14.9)	74 (100)
2016	39 (45.9)	28 (33.0)	3 (3.5)	15 (17.6)	85 (100)
2017	47 (48.9)	35 (36.5)	4 (4.2)	10 (10.4)	9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60]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3	1,537 (61.1)	840 (33.4)	0 (0.0)	138 (5.5)	2,515 (100)
2014	1,633 (62.1)	859 (32.6)	0 (0.0)	139 (5.3)	2,631 (100)
2015	2,073 (63.5)	1,062 (32.5)	0 (0.0)	131 (4.0)	3,266 (100)
2016	1,991 (63.4)	1,057 (33.7)	1 (0.0)	91 (2.9)	3,140 (100)
2017	2,270 (58.6)	1,413 (36.5)	2 (0.1)	186 (4.8)	3,87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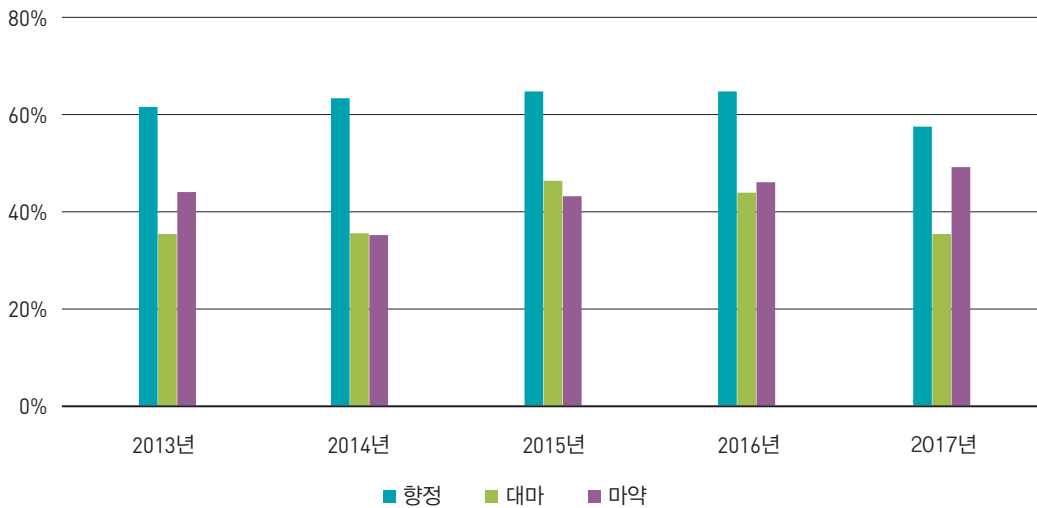
[표 3-61] 대마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3		194 (35.3)	321 (58.5)	0 (0.0)	34 (6.2)	549 (100)
2014		208 (35.8)	334 (57.6)	1 (0.2)	37 (6.4)	580 (100)
2015		293 (46.8)	297 (47.4)	1 (0.2)	35 (5.6)	626 (100)
2016		242 (44.2)	281 (51.4)	0 (0.0)	24 (4.4)	547 (100)
2017		316 (36.4)	510 (58.7)	1 (0.1)	42 (4.8)	869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6]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 19.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62]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3	0 (0.0)	7 (10.0)	21 (30.0)	19 (27.1)	23 (32.9)	1,604,286
2014	0 (0.0)	7 (12.1)	14 (24.1)	18 (31.0)	19 (32.8)	1,479,310
2015	0 (0.0)	10 (10.0)	36 (36.0)	31 (31.0)	23 (23.0)	1,278,000
2016	0 (0.0)	5 (4.6)	15 (13.9)	52 (48.2)	36 (33.3)	1,346,296
2017	0 (0.0)	11 (12.1)	23 (25.3)	32 (35.1)	25 (27.5)	1,298,901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표 3-63]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3	0 (0.0)	2 (1.1)	10 (5.5)	27 (14.7)	144 (78.7)	3,614,754
2014	0 (0.0)	2 (1.2)	14 (8.4)	24 (14.4)	127 (76.0)	3,528,144
2015	0 (0.0)	0 (0.0)	3 (1.6)	43 (22.7)	143 (75.7)	2,978,836
2016	0 (0.0)	1 (0.6)	10 (5.5)	39 (21.5)	131 (72.4)	2,709,392
2017	0 (0.0)	0 (0.0)	10 (5.6)	19 (10.6)	150 (83.8)	5,582,584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표 3-64]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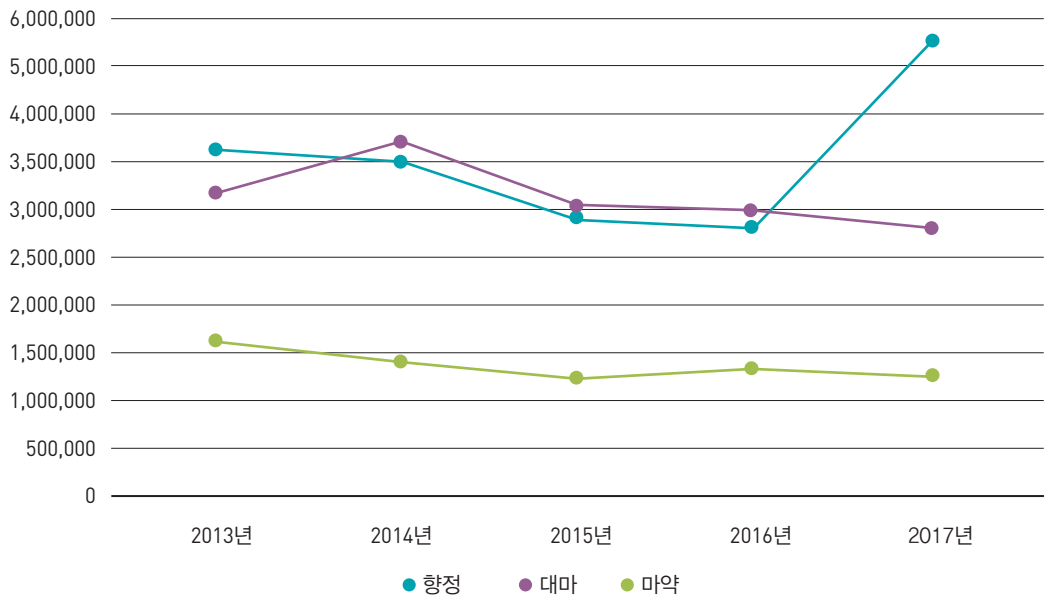
(단위: 명)

금액별 연도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3	0 (0.0)	1 (1.7)	2 (3.3)	5 (8.3)	52 (86.7)	3,163,333
2014	0 (0.0)	2 (4.1)	1 (2.0)	2 (4.1)	44 (89.8)	3,716,327
2015	0 (0.0)	0 (0.0)	1 (2.6)	7 (18.4)	30 (79.0)	3,057,895
2016	0 (0.0)	0 (0.0)	2 (4.9)	5 (12.2)	34 (82.9)	3,000,000
2017	0 (0.0)	0 (0.0)	4 (6.6)	5 (8.2)	52 (85.2)	2,868,852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그림 3-37]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 20. 실행자 · 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 2017년 향정 및 대마사범의 실행 형기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마약사범의 실행 형기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표 3-65] 마약류별 실행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구분 연도별	마약		향정		대마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3	16.9	28.7	17.1	28.3	26.5	31.5
2014	17.7	27.5	17.8	27.4	24.9	29.6
2015	15.8	26.1	16.7	26.1	23.2	26.9
2016	26.6	28.7	17.4	26.7	18.3	27.9
2017	19.7	28.6	18.2	28.3	21.7	31.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21.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66]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3	1 (4.2)	11 (45.8)	12 (50.0)	0 (0.0)	24 (100)
2014	0 (0.0)	22 (68.8)	9 (28.1)	1 (3.1)	32 (100)
2015	1 (3.4)	22 (75.9)	5 (17.3)	1 (3.4)	29 (100)
2016	3 (10.7)	16 (57.1)	8 (28.6)	1 (3.6)	28 (100)
2017	3 (8.6)	20 (57.1)	8 (22.9)	4 (11.4)	3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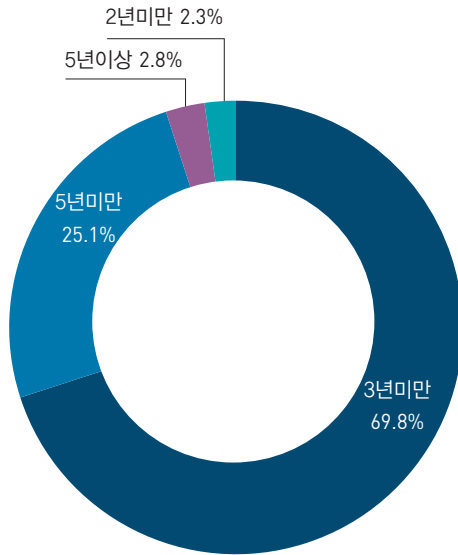
[표 3-67]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3	20 (2.4)	573 (68.2)	233 (27.7)	14 (1.7)	840 (100)
2014	12 (1.4)	653 (76.0)	182 (21.2)	12 (1.4)	859 (100)
2015	36 (3.4)	844 (79.5)	174 (16.4)	8 (0.7)	1,062 (100)
2016	26 (2.5)	807 (76.3)	217 (20.5)	7 (0.7)	1,057 (100)
2017	32 (2.3)	988 (69.8)	354 (25.1)	39 (2.8)	1,41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8] 향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표 3-68]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3	9 (2.8)	210 (65.4)	94 (29.3)	8 (2.5)	321 (100)
2014	12 (3.6)	236 (70.7)	82 (24.5)	4 (1.2)	334 (100)
2015	14 (4.7)	226 (76.1)	57 (19.2)	0 (0.0)	297 (100)
2016	4 (1.4)	199 (70.8)	75 (26.7)	3 (1.1)	281 (100)
2017	23 (4.5)	332 (65.1)	139 (27.3)	16 (3.1)	51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22. 실행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69] 마약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3	1 (3.8)	14 (53.9)	6 (23.1)	2 (7.7)	3 (11.5)	26 (100)
2014	5 (20.8)	11 (45.9)	2 (8.3)	3 (12.5)	3 (12.5)	24 (100)
2015	11 (34.3)	12 (37.5)	4 (12.5)	3 (9.4)	2 (6.3)	32 (100)
2016	3 (7.7)	17 (43.6)	5 (12.8)	12 (30.8)	2 (5.1)	39 (100)
2017	12 (25.5)	17 (36.2)	13 (27.6)	3 (6.4)	2 (4.3)	47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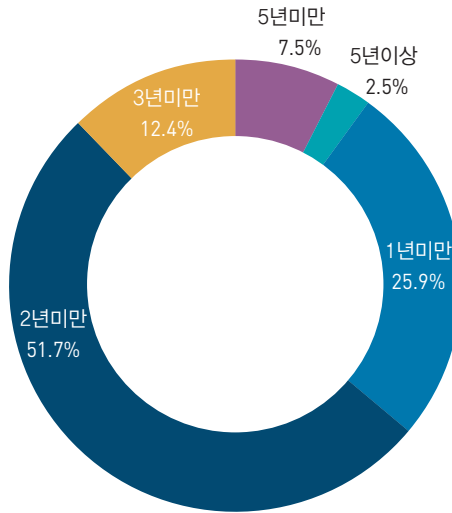
[표 3-70] 향정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3	448 (29.2)	823 (53.5)	159 (10.3)	72 (4.7)	35 (2.3)	1,537 (100)
2014	414 (25.3)	934 (57.2)	153 (9.4)	85 (5.2)	47 (2.9)	1,633 (100)
2015	587 (28.3)	1,119 (54.0)	215 (10.4)	110 (5.3)	42 (2.0)	2,073 (100)
2016	518 (26.1)	1,118 (56.2)	186 (9.3)	121 (6.0)	48 (2.4)	1,991 (100)
2017	590 (25.9)	1,173 (51.7)	280 (12.4)	171 (7.5)	56 (2.5)	2,270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9] 향정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표 3-71] 대마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3	54 (27.8)	104 (53.6)	23 (11.9)	10 (5.2)	3 (1.5)	194 (100)
2014	62 (29.8)	108 (51.9)	20 (9.6)	12 (5.8)	6 (2.9)	208 (100)
2015	79 (27.0)	163 (55.6)	35 (12.0)	13 (4.4)	3 (1.0)	293 (100)
2016	83 (34.3)	108 (44.6)	27 (11.2)	17 (7.0)	7 (2.9)	242 (100)
2017	85 (26.9)	127 (40.2)	64 (20.3)	31 (9.8)	9 (2.8)	31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23. 재범 현황

[표 3-72] 연도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사범	9,764	9,984	11,916	14,214	14,123
재범인원	3,891	3,817	4,499	5,285	5,131
재범률(%)	39.8	38.2	37.8	37.2	36.3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2017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6.3%로 매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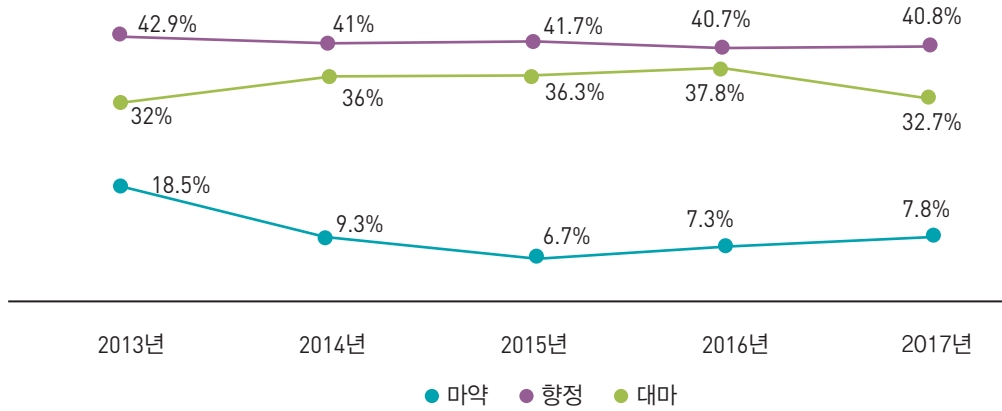
[표 3-73]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685	7,902	1,177	676	8,121	1,187	1,153	9,624	1,139	1,383	11,396	1,435	1,475	10,921	1,727
재범인원	127	3,387	377	63	3,327	427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재범률 (%)	18.5	42.9	32.0	9.3	41.0	36.0	6.7	41.7	36.3	7.3	40.7	37.8	7.8	40.8	32.7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대마·마약사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향정사범 재범률은 40.8%로 여전히 대마, 마약사범보다 높음

[그림 3-40]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표 3-74]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연도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127	3,387	377	63	3,327	427	77	4,009	413	101	4,641	543	115	4,451	565
동종(마약류) 전과인원	35	2,753	236	15	2,731	257	32	3,269	242	41	3,795	328	47	3,711	372
이종(마약류) 전과인원	64	103	53	32	92	69	39	90	72	52	135	87	58	106	85
복합전과 인원	28	531	88	16	504	101	6	650	99	8	711	128	10	634	108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2017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5,131명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과 인원은 4,130명으로 80.5%를, 이종 마약류범죄 전과 인원은 249명으로 4.9%를, 복합 전과인원도 752명으로 14.7%를 각각 차지함



## 2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감호 실적

### 가. 근거 법령

- 치료보호<sup>16)</sup>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치료감호<sup>17)</sup>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구 치료감호법)

### 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 2017년도 치료보호 인원은 총 330명으로 전년대비 31.1% 증가함. 이는 마약류 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업을 외래 치료까지 확대 시행(2014. 6. 19.)한 것에 따른 결과임
- 전체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 등 의뢰자는 13명으로 전년대비 18.8%(전년도 16명) 감소함

[표 3-75]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65	73	191	252	330
입원	자의	50	51	90	82	108
	검찰의뢰	14	15	10	7	3
	기타의뢰	1	-	1	-	-
외래	자의		6	83	154	209
	검찰의뢰		-	7	9	10
	기타의뢰		1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16) 전국 22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외래 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임

17)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표 3-7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명)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인원	20	73	91	102	208	135	74	87	131	140	421	503	648	722	3,355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 2017년 치료감호 현황은 총 16명으로 전년대비 36.0%(전년도 25명) 감소함

[표 3-77] 치료감호 실적

(단위: 명)

연도별 마약류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36	28	32	25	16
마약	0	0	0	1	0
향정	35	28	30	24	16
대마	1	0	2	0	0

자료 : 치료감호소 감호과, 입소자 기준

## 다.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22개 병원)

[표 3-78] 치료보호 시설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22개 의료기관	330	65	73	191	252	330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2		1		1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2	4	4		2
	강남을지병원	2		6	83	146	20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1	4		
	참사랑병원	8					29
대전	참다남병원	4			1	2	
대구	대구의료원	2	3	4	6	2	2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1	2	5	4
울산	큰빛병원	12					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5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2		1	2	
	용인정신병원	10	3	11	8	3	1
	계요병원	10	2	4	3	3	3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1
충북	청주의료원	2					
충남	국립공주병원	10					
경북	포항의료원	3					
경남	국립부곡병원	200	53	41	78	86	81
	양산병원	2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2				2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제주	연강병원	2			1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마약류 중독자 치료감호 시설

- 치료감호소「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함

## 25.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발생 현황

### 가. 개 요

- 마약류 투약 등으로 환각상태에서의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난동, 수사관 상해 등 2차 강력범죄, 즉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환각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거나 마약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강도 등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마약류 사범의 환각상태 범행이 흉포화되고 있음

### 나.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표 3-79] 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유형별 연도별	살인		과다투약 사망·자살		강·절도		인질극, 난동		수사관보복 살해·상해		기타		계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013	1	1	2	2	0	0	3	3	0	0	3	3	9	9
2014	1	1	1	1	0	0	1	1	1	1	1	1	5	5
2015	1	1	3	3	0	0	1	1	2	2	11	13	18	20
2016	1	1	0	0	0	0	1	1	0	0	0	0	2	2
2017	1	1	0	0	0	0	0	0	0	0	1	1	2	2
합계	5	5	6	6	0	0	6	6	3	3	16	18	36	38

## 다. 대표적 사례

### 살인 사건

- 2001. 3.경 서울 중구 식품점에서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중독증세를 보이던 피의자(23세, 공익근무요원)가 러미라 판매상인 피해자와 러미라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칼로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01. 8.경 서산시 부석면 야산에서 피의자 3명(30세, 무직 / 28세, 무직 / 28세, 무직)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곡괭이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서산지청)
- 2001. 9.경 서산시 석림동 주택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평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투약하던 내연녀를 칼로 찔러 살해 (서산지청)
- 2002.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여관에서 러미라 중독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윤락녀인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라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 (서울동부지청)
- 2004.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필로폰 24g에 대한 흥정을 하며 가격문제로 다투던 중 잭나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가슴 등을 찔러 살해 (부산지검)
- 2005. 6.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16층, 10층 등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2명의 어깨,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23:30경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하고, 다음날 00:55경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 (서울북부지검)

- 2006. 1.경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1시간 가량 때리고 짓밟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12. 12.경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피의자(30세, 무직)가 필로폰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 (인천지검)
- 2013. 2.경 피의자(50세, 무직)가 자신의 형이 필로폰 중독으로 자살을 하자 형에게 필로폰을 알게 해 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 (서울중앙지검)
- 2014. 6.경 피의자(34세, 중고차 매매)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와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금니 1개를 뽑아내고, 왼쪽 안구를 적출한 후, 식칼로 두피 전체를 벗겨내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장에 벗어남으로써 살인 미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 2015. 2.경 노래방 업주인 피의자(41세, 상업)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2명(노래방 여자종업원)이 동성애로 보일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트집 잡아 화를내며 덤벨, 금속봉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그 중 피해자 1명을 살해 (천안지청)
- 2016. 12.경 마약류 전과 5범인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아내와 가정불화로 다투던 중 아내의 목을 베어 살해 (대구지검)
- 2017. 4.경 피의자(5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양팔로 아버지의 목부위를 감싸 쥐어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 (대구지검)



## 자살·과다투약 사망 사건

- 2001. 3.경 대구시 수성구 자택에서 51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1. 8.경 대구 북구 칠성동 여관에서 37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2002. 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모텔에서 36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모텔 승강장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 과다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2012. 10.경 부산 서구 암남동 모텔에서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부산지검)
- 2013. 1.경 필로폰을 절취, 사용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복역 후 출소한 58세 남성(무직)이 자살 (부산지검)
-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의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부천시청)
- 2014.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동파」 추종자인 33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 공사현장으로 난입한 후 ‘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다. 두목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다’라고 소리 지르며 40여분 간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 (울산지검)
- 2015. 3.경 안산 단원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성형외과의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안산지청)
- 2015. 6.경 경기 동두천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4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및 디아제팜 과다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58세 남성(사업가)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사망. 위 남성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40g, 아바 76.5g, 엑스터시 3.12g, 대마 34.9g 등 발견 (서울서부지검)

### 강·절도 등 사건

- 2001. 5.경 피의자들(27세, 무직 / 28세, 무직)이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폐치딘 10앰플을 절취하고, 2002. 2.경 의료원에서 모르핀 108앰플, 펜타닐 19앰플, 폐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2001. 7.~12.경 안산시 고잔동 병원에서 피의자(28세, 간호사)가 의사의 마약 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폐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 인질극·난동 등 사건

- 2001. 3.경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피의자(34세, 노동)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 가량 대치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2001. 4.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의자들(30세, 무직 / 25세,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운전차량으로 검찰 수사차량 및 경찰 순찰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의자 1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울산지검)
- 2001. 6.경 군산시 자택에서 피의자(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 (군산지청)



- 2001.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여관에서 피의자(4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 (서울남부지청)
- 2002. 1.경 대전 중구 여관에서 피의자(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뒤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 2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치하며 난동 (대전지검)
- 200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자수한 피의자(29세, 무직)가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하던 중, 형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놓여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 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인천지검)
- 2002. 1.경 피의자(36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백화점 화장품 코너 직원을 죽여 버리겠다고 흥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 (서울서부지청)
- 2002.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29세, 운전기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검사를 만나야겠다고 대구지검으로 갈 것을 요구, 같은 날 08:30경 대구지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 (대구지검)
- 2006. 11.경 대구 동구 신기동 아파트에서 피의자(50세, 무직)가 대구지검에 전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수 의사를 표명한 후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동네 할머니를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2012.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남자 친구를 흥기로 찌르는 등 난동 (부산지검)

- 2013. 2.경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 환각상태에서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가 볼펜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수회 찌르고 당직실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난동 (대구지검)
- 2013. 7.경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피의자(30세, 요리사)가 평소 과용해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환각상태에서 검사실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 (서울북부지검)
- 2013.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피의자(47세, 무직)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오른손에 식칼을 들고 동거녀의 목을 겨누어 협박하는 등 난동 (광주지검)
- 2014. 9.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 혐의로 창원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43세, 무직)가 교도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여 자해 (마산지청)
- 2015. 4.경 피의자(49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김천지청을 방문하여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난동 (김천지청)
- 2015. 5.경 피의자(47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됨 (대구지검)
- 2015. 12.경 필로폰 환각상태의 피의자(40세, 무직)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 후 복용할 수 있도록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줄 수 없다’며 그 요구를 거부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의 목에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환자와 피의자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병원 측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질강요 (인천지검)



## 수사관 살해·상해 사건

- 1997. 9.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7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함 (인천지검)
- 1998. 1.경 대마 밀매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1998.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1998. 10.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5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의 중상을 가함 (의정부지청)
- 1999. 1.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원인 피의자(30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을 가함 (진주지청)
- 2006. 8.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6세, 무직)가 검찰수사관을 등산용 칼로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함 (성남지청)
- 2014.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누범기간 중인 필로폰 소지혐의 피의자(52세, 무직)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대전지검)
- 2015. 1.경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피의자(54세, 회사원)가 검거과정에서 범퍼로 경찰관의 무릎 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함 (수원지검)
- 2015. 10.경 필로폰 약 8g을 소지한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조직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체포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여 검찰수사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힘(의정부지검)

## 기타(상해·협박·강간·주거침입 등) 사건

- 2004.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피의자(37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 유흥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백미러를 부순 후 위 차량 후드 위로 올라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려다 그곳으로 달려온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승합차 안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함(인천지검)
- 2004. 11.경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의자들(46세, 44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대구지검)
- 2005. 6.경 통영시 광도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통영지청)
- 2006. 7.경 진주시 개동 미용실 앞에서 피의자(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며 협박함 (남원지청)
- 2006. 9.경 여수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4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이 있는데 너 아니냐.’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007. 6.경 위 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전처와 함께 여수 경찰서에서 오동도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약 1시간 동안 전처의 목, 귀, 이마, 양쪽 무릎, 손목, 발목 등 전신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

## 에게 상해를 가함 (순천지청)

- 2008. 3.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 하면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제추행함 (의정부지검)
- 2009. 10.경 서울 중구 신당동 모텔에서 피의자(37세, 무직)가 피해자와 함께 수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함 (서울중앙지검)
- 2013. 2.경 경기지역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남성들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17세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을 구속 (부산지검)
- 2013. 6.경 오산시 궤동 건물 계단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혐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으로 도망을 간 후 다른 건물로 뛰어 넘어가려다 건물 사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검)
- 2013. 6. ~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16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강간 (서울 서부지검)
- 2014. 12.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피해자 주거지 주변 승용차에서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라고 욕설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2:30경 안양시 동안구 도로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좌수 중지열상의 상해를 입음 (안양지청)

- 2015. 1.경 피의자(34세, 기업인)가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교통 사고를 내고 다른 자동차를 절취하여 도주함 (서울중앙지검)
- 2015. 3.경 필로폰 판매 범죄사실로 수배 중인 피의자(43세, 무직)가 경찰의 검문 검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충돌하고 도주함 (성남지청)
-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샴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 (서울동부지검)
-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음 (인천지검)
-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졸피뎀, 로라제팜을 복용케하여 항거 불능상태 야기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가함 (부천시청)
-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함 (부산동부지청)
-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기업인 / 22세, 프로골퍼)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함 (서울중앙지검)
- 2015. 1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조직원인 피의자(50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필로폰 공급자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대구지검)
- 2015.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모텔에서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객실 침대 위에 있던 티슈에 불을 질러 모텔을 전소하게 하여 위 모텔 투숙자인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4명에게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힘 (인천지검)



-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의 피의자(44세, 무직, 마약전과 5범)가 모친이 필로폰 복용으로 인한 증세가 염려되어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 시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모친의 손가락, 팔 등을 잡아당겨 골절, 타박상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부산동부지청)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의 피의자(43세, 무직)가 대구 북구 소재 00 아파트에 이르러 지하 1층 창문으로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감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를 손으로 밀쳐 환풍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재물을 손괴함 (대구지검)

## 제4절 마약류 투약자 자수내역

### 1. 개 요

#### 가. 자수기간

2017. 4. 1. ~ 2017. 6. 30.(3개월)

#### 나. 자수대상자

- 마약류 투약자

#### 다. 자수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내사중 또는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수사관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 처리 가능

#### 라. 처 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입소 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입소교육보다 더욱 강력한 치료재활 효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22개 지정 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22개 기관, 약 330개 병실)은 [표 3-78] 자료참조



- 마약류 중독자를 종래 범죄자로 인식하던 격리위주의 형사처벌 정책에서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는 치료재활보호 정책으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사업을 외래치료까지 확대 시행(2014. 6. 19.)
- 마약 투약 후 자수, 과거 치료재활처분 경력 소유자, 밀매, 밀수 등 범죄유형 혼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기소 시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여 치료감호시설(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개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sup>18)</sup>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참조

\*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2004. 4. 「약물중독 재활센터」를 개관하여 마약 등 약물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 자수실적

### 가. 마약류별 자수실적

- 2017년 자수실적은 88명으로 전년도 92명 대비 4.3% 감소하였으며, 전체 자수자 중 향정사범이 78명으로 88.6%를 점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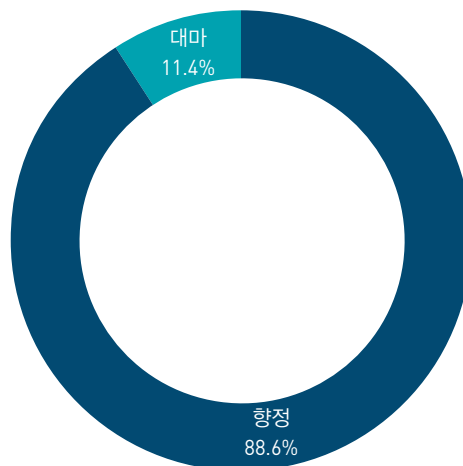
[표 3-80] 자수실적 마약류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구분	합계			기소유예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건수	인원	구성비			
합계		88	88	100	30	14	24
마약		0	0	0.0	0	0	0
향정		78	78	88.6	25	13	24
대마		10	10	11.4	5	1	0

※ 기소유예·구공판 사범 이외에는 '혐의 없음' 처분 또는 '미처리' 상태임

[그림 3-41] 자수실적 마약류별 구성비



[표 3-81]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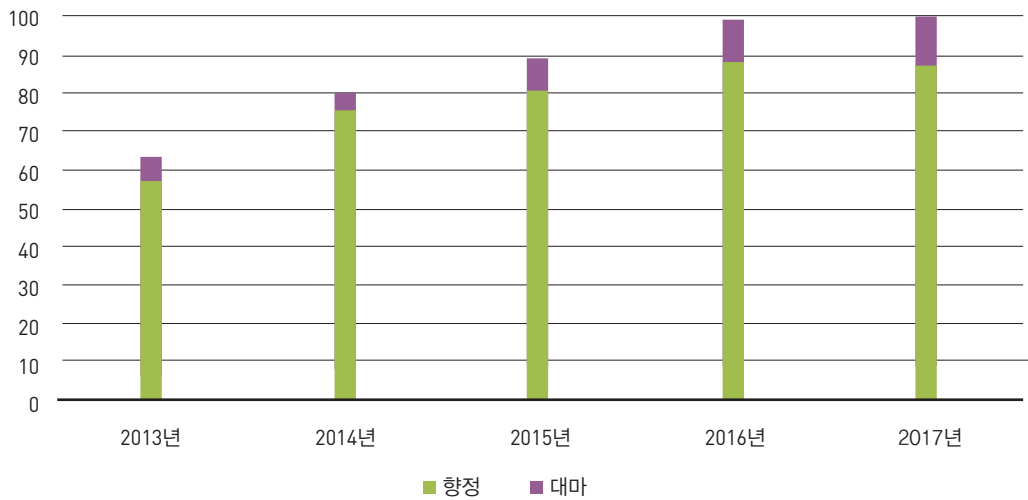
(단위: 명)

마약류 \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63 (100)	80 (100)	89 (100)	92 (100)	88 (100)
마약	0 (0.0)	0 (0.0)	0 (0.0)	0 (0.0)	0 (0.0)
향정	57 (90.5)	76 (95.0)	81 (91.0)	82 (89.1)	78 (88.6)
대마	6 (9.5)	4 (5.0)	8 (9.0)	10 (10.9)	10 (11.4)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42] 자수실적 연도별 현황

(단위: 명)



## 나. 자수자 처리현황

[표 3-82] 자수자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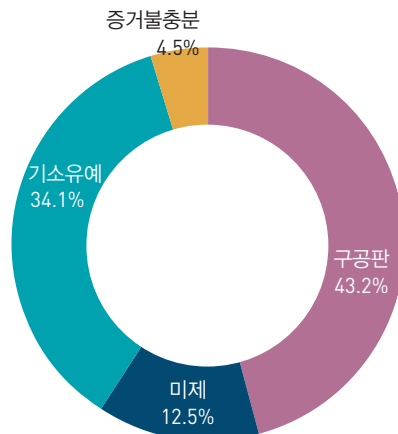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합계	처리현황									
		불입건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이송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타관 이송	미제
2013	63 (100)	2 (3.2)	42 (66.6)	0 (0.0)	8 (12.7)	0 (0.0)	0 (0.0)	1 (1.6)	0 (0.0)	10 (15.9)	0 (0.0)
2014	80 (100)	0 (0.0)	44 (55.0)	5 (6.3)	18 (22.5)	1 (1.3)	0 (0.0)	3 (3.6)	0 (0.0)	5 (6.3)	4 (5.0)
2015	89 (100)	0 (0.0)	59 (66.3)	6 (6.7)	16 (18.1)	0 (0.0)	0 (0.0)	6 (6.7)	0 (0.0)	2 (2.2)	0 (0.0)
2016	92 (100)	0 (0.0)	24 (26.1)	0 (0.0)	17 (18.5)	0 (0.0)	0 (0.0)	5 (5.4)	0 (0.0)	0 (0.0)	46 (50.0)
2017	88 (100)	4 (4.5)	38 (43.2)	0 (0.0)	30 (34.1)	1 (1.1)	0 (0.0)	4 (4.5)	0 (0.0)	0 (0.0)	11 (12.5)

\* 기준일 : 2009년~2012년 특별자수기간 종료 직후, 2013년부터는 자수자 처리 이후, ( )는 구성비 %

- 구공판 처리된 자수자 38명은 필로폰 밀매자, 동종 전과 다수자, 필로폰 중독자로 환각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한 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죄질이 중한 자들이 대부분임

[그림 3-43] 자수자 처리현황 구성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26명,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1명임 (3명은 일반 기소유예)
- 기관별 자수자 및 점유율은 검찰 19명(21.6%), 경찰 69명(78.4%)임

[표 3-83] 자수실적 기관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검찰		경찰		합계
	소계	구성비(%)	소계	구성비(%)	
자수자	19	21.6	69	78.4	88

### 다. 연령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40대 33명(37.5%), 30대 20명(22.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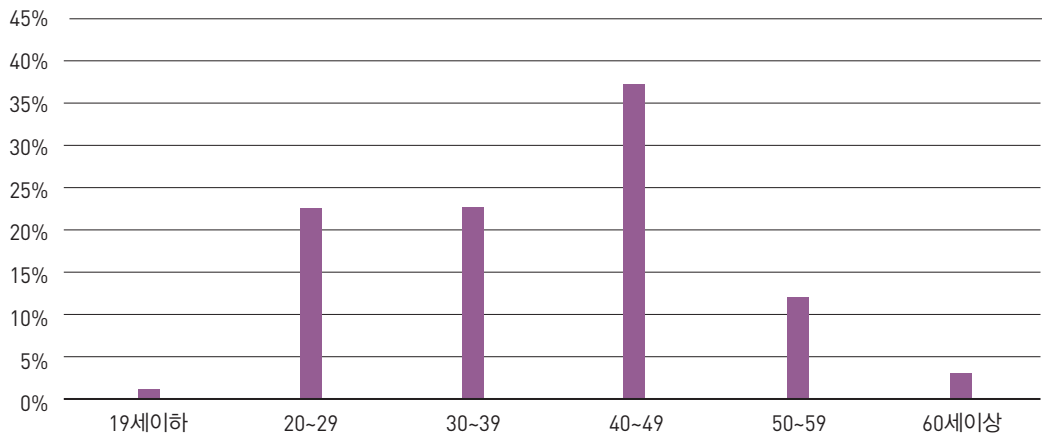
[표 3-84] 자수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령별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합계
사범수	1	20	20	33	11	3	88
(%)	(1.2)	(22.7)	(22.7)	(37.5)	(12.5)	(3.4)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44] 자수자 연령별 구성비



## 라. 성별 현황

- 전체 자수자 중 남성은 65명(73.9%), 여성은 23명(26.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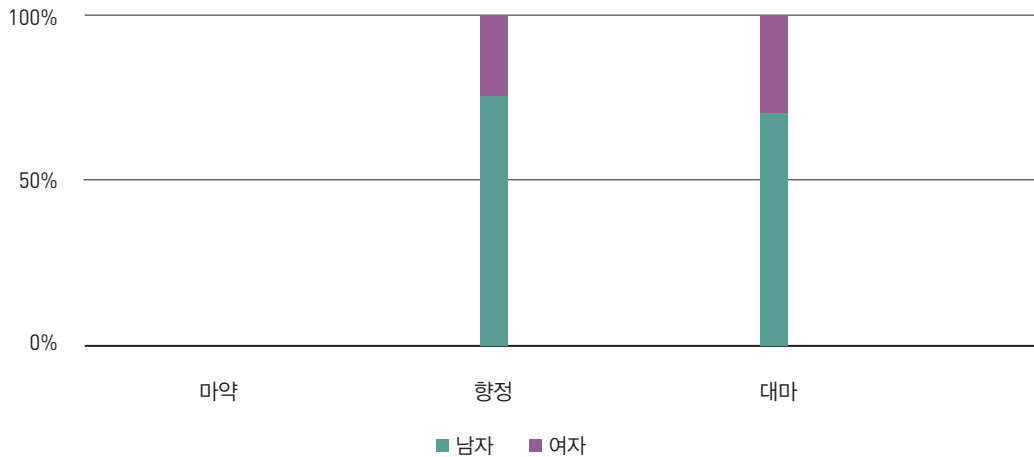
[표 3-85] 자수자 성별 현황

(단위: 명)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성별								
사범수	0	0	58	20	7	3	65	23
(%)	(0.0)	(0.0)	(74.4)	(25.6)	(70.0)	(30.0)	(73.9)	(26.1)

※ ( )는 구성비 %

[그림 3-45] 자수자 성별 구성비



### 마. 직업별 현황

- 직업별로는 무직 31명(35.2%), 자영업 13명(14.8%), 회사원 12명(13.6%)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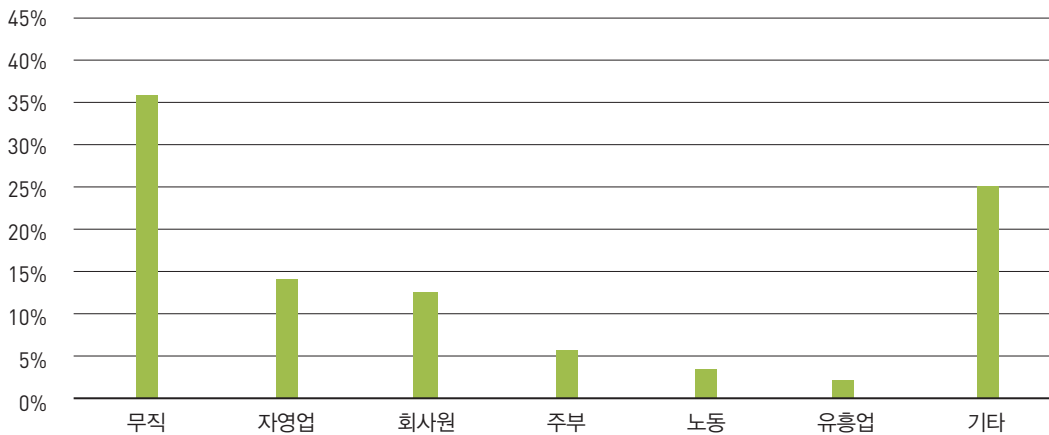
[표 3-86] 자수자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무직	자영업	회사원	주부	노동	유형업	기타	합계
사범수	31	13	12	5	3	2	22	88
(%)	(35.2)	(14.8)	(13.6)	(5.7)	(3.4)	(2.3)	(25.0)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46] 자수자 직업별 구성비





### 3. 시행 결과 및 향후 계획

#### 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결과

- 2017. 4. 1.~ 6. 30. 3개월 동안 시행된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중 전국 검찰·경찰에 향정사범 78명, 대마사범 10명, 합계 88명이 자수
- 자수자로서 사안이 중하지 않고, 개전의 정(단약 의지 등)이 뚜렷한 투약사범 30명(전체자수자의 34.1%)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상습투약 및 마약류 밀거래 범죄에 관여한 경우 등 그 죄질이 무거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기소함

#### 나. 홍보 강화를 통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활성화

- 관공서, 언론사, (도시)철도·도로공사, 터미널(버스, 항구, 공항 등)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 방송, 신문,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블로그, 전광판, 시정소식지, 반사회보, 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마약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홍보하고, 단순투약자로 치료·재활의지가 분명한 자수자에 대하여는 특별자수기간의 취지에 따라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치료·재활 기회 적극 부여

## 제5절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1. 개 요

#### 가. 단속기간

- 양귀비 : 2017. 4. 중순 ~ 6. 하순(개화기)
- 대마 : 2017. 6. 중순 ~ 7. 하순(수확기)

#### 나. 단속방법

- 각 청 마약수사 전담검사의 지휘 하에 검찰 마약수사관, 시·군·구 유관기관 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이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귀비·대마 다량 흡연자, 대마 재배 허가지 및 대마 도난신고 사실 등 사전 확인 후 단속
- 밀경작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탐문수사 등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답사 등 효과적인 단속활동 전개
- 특히, 서해안 및 남해안 지역을 관할하는 청에서는 취약지역인 도서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계획 수립, 시행

#### 다.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사용자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흡연자
- 기타 관련사범

## 2. 단속실적

### 가. 단속 인원 및 실적 추이

- 2017년 특별단속기간 내 양귀비·대마사범은 1,681명으로 전년 대비 5.2% (전년 1,774명) 감소

[표 3-87]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범별	합계		구속		불구속		불입건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합계	1,681	(100)	49	(2.9)	1,290	(76.7)	342	(20.3)
양귀비	1,330	(100)	0	(0.0)	993	(74.7)	337	(25.3)
대마	351	(100)	49	(14.0)	297	(84.6)	5	(1.4)

※ ( )는 구성비 %

- 양귀비사범은 1,330명으로 전년대비 14.5%(전년 1,555명) 감소, 대마사범은 351명으로 전년대비 60.3%(전년 219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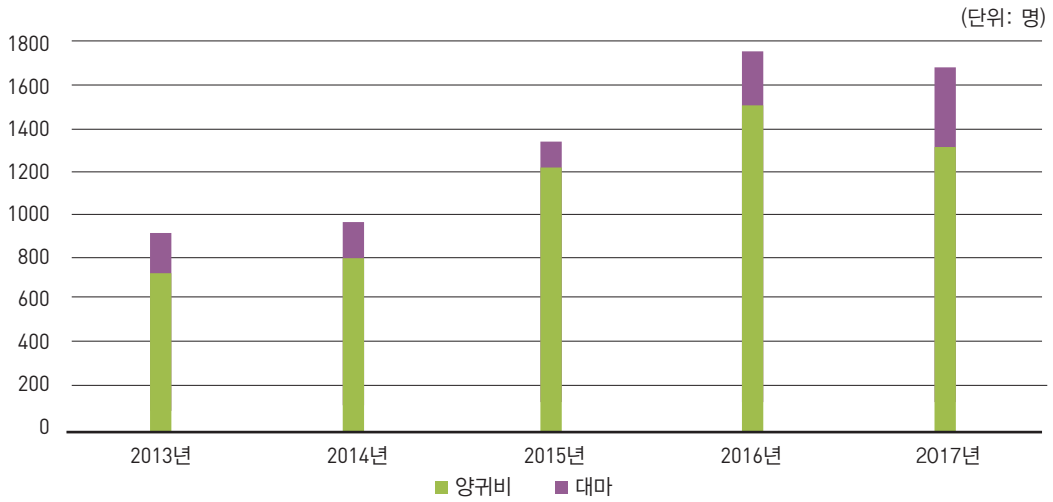
[표 3-88]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실적 추이

(단위: 명)

사범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양귀비	727 (-10.4)	808 (11.1)	1,209 (49.6)	1,555 (28.6)	1,330 (-14.5)
대마	180 (-32.3)	153 (-15.0)	154 (0.7)	219 (42.2)	351 (60.3)
합계	907 (-15.8)	961 (6.0)	1,363 (41.8)	1,774 (30.2)	1,681 (-5.2)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그림 3-47] 연도별 단속 현황



나. 유형별 단속실적

- 양귀비 밀경작사범은 1,276명으로 전년대비 10.8%(전년 1,431명) 감소하였고, 대마 밀경작사범은 28명으로 전년대비 45.1%(전년 51명) 감소함
- 양귀비사범의 경우 유형별 분포에서 밀경작사범이 95.9%를 차지하였으나, 대마사범의 경우는 흡연 사범이 56.4%로 다수를 차지함
- 양귀비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213명으로 전년대비 30.4%(전년 306명) 감소하였고, 대마 100주 초과 밀경작사범은 6명으로 전년대비 62.5%(전년 16명) 감소함

[표 3-89] 양귀비·대마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사범별	밀수	밀조	밀경	밀매	사용 (흡연)	취급 (소지)	기타
양귀비	0 (0.0)	0 (0.0)	1,276 (95.9)	41 (3.1)	0 (0.0)	4 (0.3)	9 (0.7)
대마	1 (0.3)	11 (3.1)	28 (8.0)	67 (19.1)	198 (56.4)	31 (8.8)	15 (4.3)
합계	1 (0.1)	11 (0.7)	1,304 (77.6)	108 (6.4)	198 (11.7)	35 (2.1)	24 (1.4)

※ ( )는 구성비 %

### 다. 직업별 분포 현황

- 양귀비사범은 직업별 분포에서 농업이 44.2%로 가장 많았으나, 대마사범은 무직이 36.2%로 가장 많았음

[표 3-90] 양귀비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종류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직	227	(31.2)	231	(28.7)	309	(25.6)	565	(36.3)	479	(36.0)		
농업	410	(56.4)	476	(58.9)	694	(57.4)	711	(45.7)	588	(44.2)		
유형업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상업	8	(1.1)	6	(0.7)	15	(1.2)	29	(1.9)	26	(2.0)		
주부	29	(4.0)	69	(8.5)	78	(6.5)	92	(5.9)	59	(4.4)		
노동	15	(2.1)	6	(0.7)	12	(1.0)	14	(0.9)	26	(2.0)		
회사원	7	(1.0)	5	(0.6)	22	(1.8)	28	(1.8)	28	(2.1)		
학생	0	(0.0)	0	(0.0)	0	(0.0)	0	(0.0)	0	(0.0)		
의료인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31	(4.3)	15	(1.9)	79	(6.5)	116	(7.5)	124	(9.3)		
합계	727	(100)	808	(100)	1,209	(100)	1,555	(100)	1,330	(100)		

※ ( )는 구성비 %

[표 3-91] 대마사범 직업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종류	연도		2013		2014		2016		2016		2017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무직	66	(36.7)	56	(36.6)	54	(35.0)	73	(33.3)	127	(36.2)		
농업	27	(15.0)	13	(8.5)	14	(9.1)	39	(17.8)	11	(3.1)		
유형업종사자	6	(3.3)	4	(2.6)	2	(1.3)	7	(3.2)	22	(6.3)		
상업	7	(3.9)	11	(7.2)	18	(11.7)	25	(11.4)	26	(7.4)		
주부	3	(1.7)	1	(0.7)	0	(0.0)	2	(0.9)	1	(0.3)		
노동	4	(2.2)	9	(5.9)	22	(14.3)	16	(7.3)	34	(9.7)		
회사원	10	(5.6)	20	(13.1)	16	(10.4)	12	(5.5)	56	(16.0)		
학생	16	(8.9)	9	(5.9)	6	(3.9)	6	(2.7)	11	(3.1)		
의료인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41	(22.7)	30	(19.5)	22	(14.3)	39	(17.9)	63	(17.9)		
합계	180	(100)	153	(100)	154	(100)	219	(100)	315	(100)		

※ ( )는 구성비 %

## 라. 압수물 현황

- 2017년도 양귀비(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122.9% 증가하였으며, 대마(주) 압수량은 전년대비 90.2% 감소하였음

[표 3-92]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압수물 현황

종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양귀비(주)	58,596	101,605	113,270	166,641	371,443
대마(주)	2,321	5,959	3,707	45,963	4,527
대마초(g)	1,018	851	7,167	1,033.46	7,734.3
대마종자(g)	2,381	3,983	72	58.15	10.09

### 3. 단속 결과 및 향후 계획

#### 가. 양귀비·대마사범 단속 결과

- 양귀비·대마 밀경작 규모는 대부분 100주 이하의 소규모이며, 특히 양귀비 사범의 경우 95.1%가 50세 이상임. 이는 벽지농촌, 산간 및 도서지역 등의 고령층 주민들이 가정상비약 및 가축의 질병치료 등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밀경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규모 및 경위를 고려할 때 그 처벌 가치는 크지 않음
  - 양귀비·대마 총 단속인원 1,681명 중 1,288명이 불입건(342명) 또는 기소유예(946명) 처분됨

#### 나. 양귀비·대마사범 단속 방향

- 아편·대마의 밀거래 및 흡연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밀경작사범에 대하여는 현행 단속기간 및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수사하되 각 청의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효율적인 단속방안 운영

#### 다. 대국민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양귀비·대마 파종기,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를 전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계몽활동을 강화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 불법성 홍보 정책 추진
-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마 절취 우려가 있거나 도난방지 대책이 없는 도로변 또는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의 대마 재배 허가제한을 유도하는 등 재배 농가의 경각심 고취토록 조치

## 제6절 환각물질<sup>19)</sup> 흡입사범 범죄동향 및 분석

### 1. 의의

- 환각물질 흡입사범<sup>20)</sup>들이 향후 마약류사범으로 전환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환각물질 흡입사범 범죄동향 분석 필요

### 2. 동향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 환각물질 흡입사범 관련 사건통계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3. 범죄유형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19)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물질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또는 '동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및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를 말함

20)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 분장사무에 포함됨



## 4. 현황

### 가.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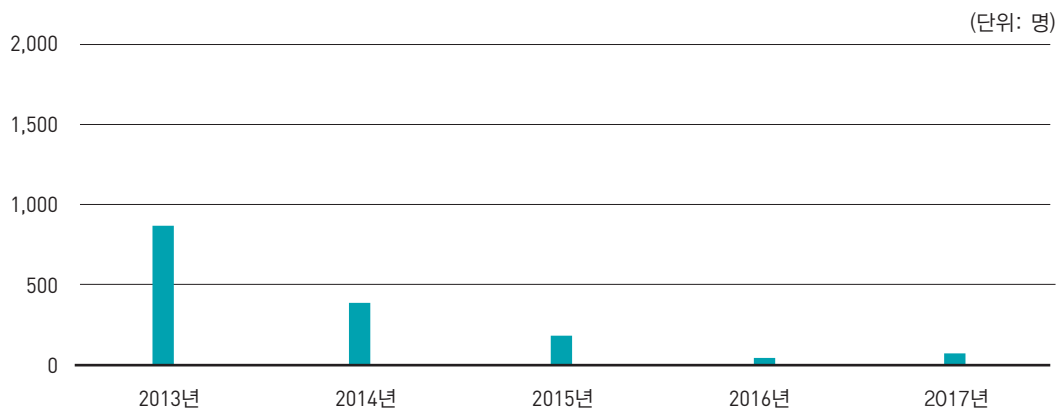
[표 3-93]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단속 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인원(명)					
		합계(점유율)		구속		불구속	
2013	563	862	(100)	186	(21.6)	676	(78.4)
2014	254	374	(100)	96	(25.7)	278	(74.3)
2015	97	138	(100)	25	(18.1)	113	(81.9)
2016	16	18	(100)	6	(33.3)	12	(66.7)
2017	14	22	(100)	1	(4.5)	21	(95.5)

※ ( )는 구성비 %

-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7년에는 22명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함
- 최근 20 ~ 30대 사이,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 별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sup>21)</sup>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함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21)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령(아산화질소 흡입 등 처벌)’ 시행

## 나. 기관별 현황

[표 3-94] 기관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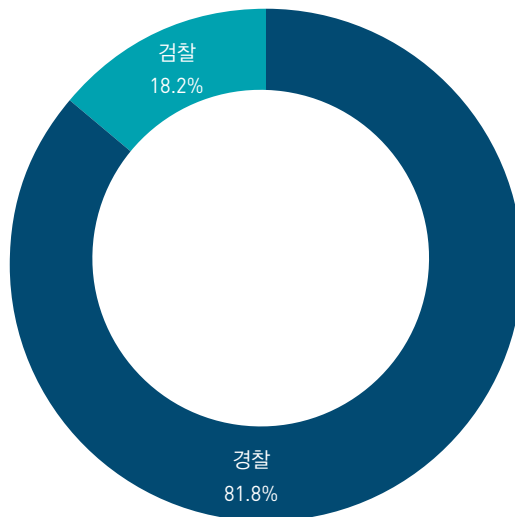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기관별	검찰	경찰	기타	합계
2015		19	119	0	138
		(13.8)	(86.2)	(0.0)	(100)
2016		2	16	0	18
		(11.1)	(88.9)	(0.0)	(100)
2017		4	18	0	22
		(18.2)	(81.8)	(0.0)	(100)

※ ( )는 구성비 %

- 2017년도 기관별 단속 점유율은 검찰 18.2%, 경찰 81.8%를 각 차지함

[그림 3-49] 환각물질 흡입사범 기관별 구성비



## 다. 지역별 현황

[표 3-95]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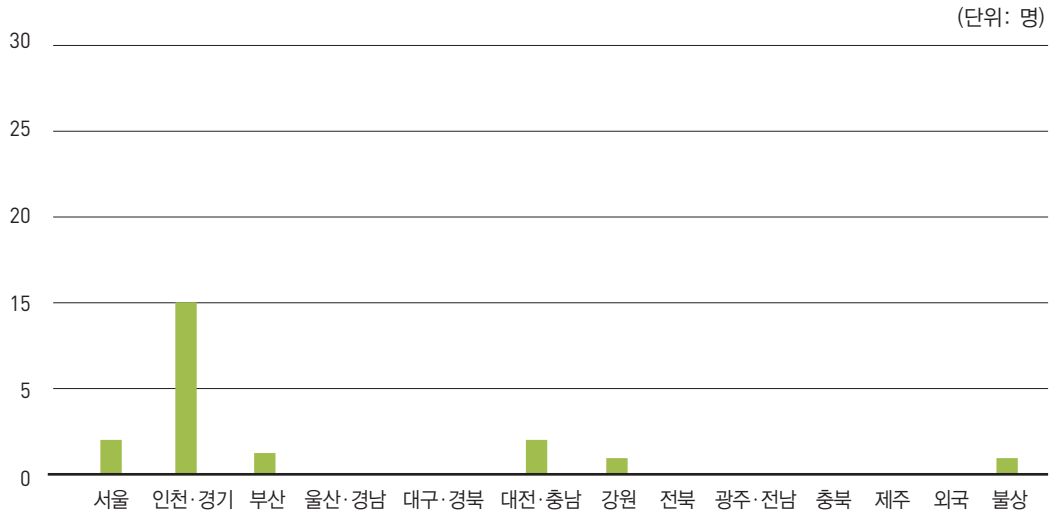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5	2016	2017
합계	138 (100)	18 (100)	22 (100)
서울	24 (17.4)	3 (16.7)	2 (9.1)
인천·경기	74 (53.6)	6 (33.3)	15 (68.2)
부산	9 (6.5)	1 (5.5)	1 (4.5)
울산·경남	14 (10.1)	2 (11.1)	0 (0.0)
대구·경북	1 (0.7)	0 (0.0)	0 (0.0)
대전·충남	9 (6.5)	3 (16.7)	2 (9.1)
강원	0 (0.0)	0 (0.0)	1 (4.5)
전북	0 (0.0)	0 (0.0)	0 (0.0)
광주·전남	3 (2.2)	0 (0.0)	0 (0.0)
충북	1 (0.7)	0 (0.0)	0 (0.0)
제주	0 (0.0)	0 (0.0)	0 (0.0)
외국	0 (0.0)	0 (0.0)	0 (0.0)
불상	3 (2.2)	3 (16.7)	1 (4.5)

※ ( )는 구성비 %

- 2017년도 지역별 점유율은 인천·경기(68.2%), 서울·대전·충남(18.2%), 부산·울산·경남(4.5%)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 사범의 50.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50]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 라. 직업별 현황

[표 3-96]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직업별 \ 연도별	2015	2016	2017
합계	138	18	22
	(100)	(100)	(100)
농업	0	0	0
	(0.0)	(0.0)	(0.0)
도소매업	0	0	0
	(0.0)	(0.0)	(0.0)
유흥주점업	0	0	0
	(0.0)	(0.0)	(0.0)
제조업	0	0	0
	(0.0)	(0.0)	(0.0)
건설업	2	0	0
	(1.4)	(0.0)	(0.0)
요식업	1	0	0
	(0.7)	(0.0)	(0.0)
노점	0	0	0
	(0.0)	(0.0)	(0.0)
용역업	0	0	0
	(0.0)	(0.0)	(0.0)
기타사업	1	0	1
	(0.7)	(0.0)	(4.5)
공익요원	0	0	0
	(0.0)	(0.0)	(0.0)
행상	0	0	0
	(0.0)	(0.0)	(0.0)
운전자	0	0	0
	(0.0)	(0.0)	(0.0)
요식업종사자	0	2	0
	(0.0)	(1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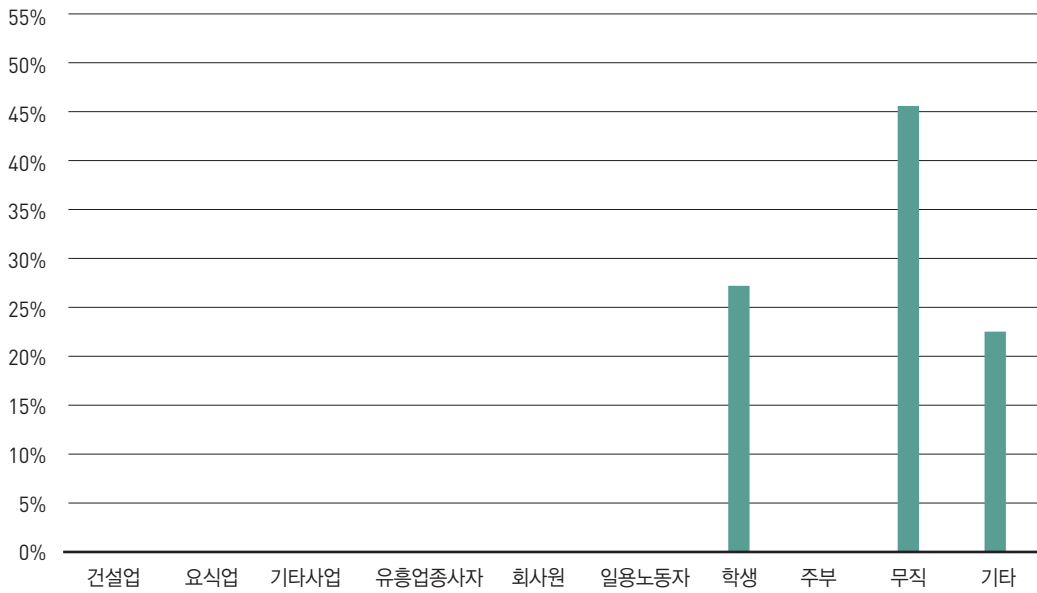
직업별	연도별		
	2015	2016	2017
유형업종사자	1	0	0
	(0.7)	(0.0)	(0.0)
일반회사원	1	0	0
	(0.7)	(0.0)	(0.0)
기술자	0	0	0
	(0.0)	(0.0)	(0.0)
기능공	0	0	0
	(0.0)	(0.0)	(0.0)
선원	0	0	0
	(0.0)	(0.0)	(0.0)
일용노동자	12	0	0
	(8.7)	(0.0)	(0.0)
기타종사자	0	0	0
	(0.0)	(0.0)	(0.0)
종교인	0	0	0
	(0.0)	(0.0)	(0.0)
예술인	0	0	0
	(0.0)	(0.0)	(0.0)
육군	0	0	0
	(0.0)	(0.0)	(0.0)
학생	27	0	6
	(19.7)	(0.0)	(27.3)
주부	2	0	0
	(1.4)	(0.0)	(0.0)
무직	52	9	10
	(37.8)	(52.9)	(45.5)
직업미상	5	0	0
	(3.6)	(0.0)	(0.0)
기타	34	7	5
	(24.6)	(35.3)	(22.7)

※ ( )는 구성비 %



- 2017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5.5%), 학생(27.3%), 기타(22.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5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 마. 연령별 현황

[표 3-97]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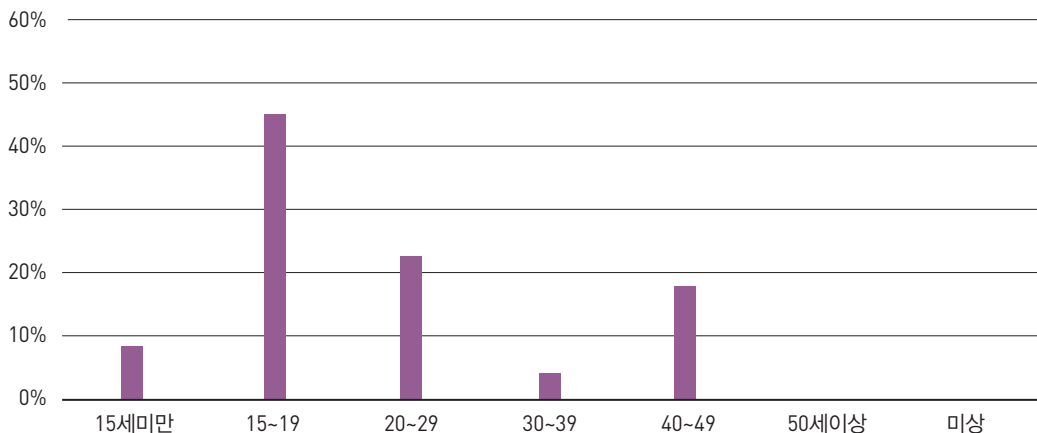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별 연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3	94	420	62	179	83	12	12	862
	(10.9)	(48.7)	(7.2)	(20.8)	(9.6)	(1.4)	(1.4)	(100)
2014	50	164	24	74	56	4	2	374
	(13.4)	(43.9)	(6.4)	(19.8)	(15.0)	(1.1)	(0.4)	(100)
2015	10	70	9	27	19	2	1	138
	(7.2)	(50.7)	(6.5)	(19.6)	(13.7)	(1.4)	(0.7)	(100)
2016	0	5	3	2	5	1	2	18
	(0.0)	(27.8)	(16.7)	(11.1)	(27.8)	(5.5)	(11.1)	(100)
2017	2	10	5	1	4	0	0	22
	(9.1)	(45.5)	(22.7)	(4.5)	(18.2)	(0.0)	(0.0)	(100)

※ ( )는 구성비 %

- 본드나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범죄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해 마약류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특성상 19세 이하 청소년(12명)이 54.5%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3-52]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 바. 성별 현황

[표 3-98]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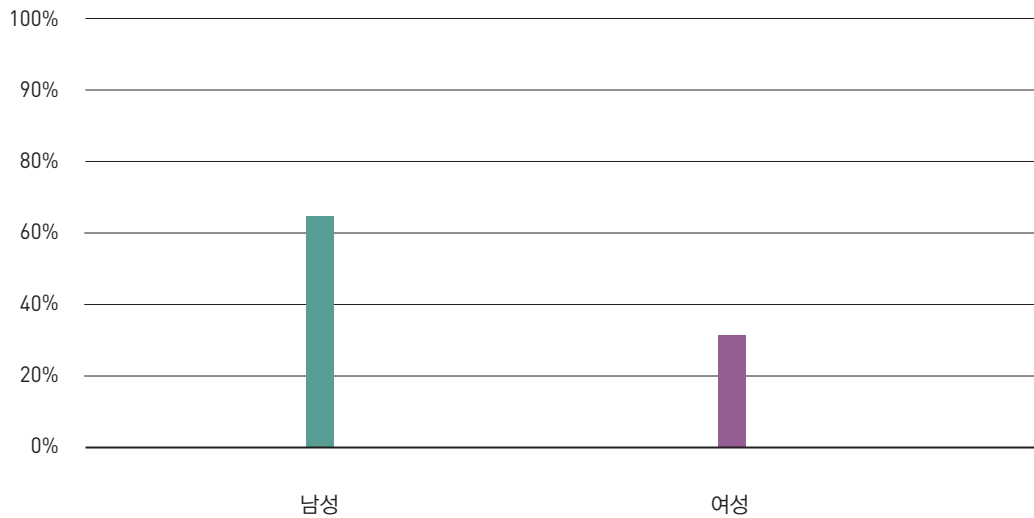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성별	남	여	합계
2013		686 (79.6)	176 (20.4)	862 (100)
2014		299 (79.9)	75 (20.1)	374 (100)
2015		103 (74.6)	35 (25.4)	138 (100)
2016		17 (94.4)	1 (5.6)	18 (100)
2017		14 (63.6)	8 (36.4)	22 (100)

※ ( )는 구성비 %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63.6%, 여성이 36.4%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3-53]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 사. 검찰 처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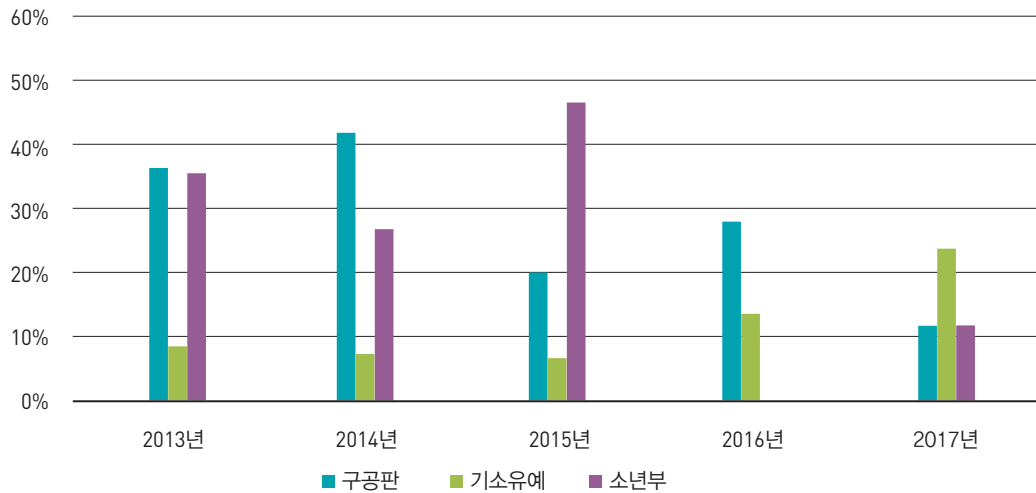
[표 3-99]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내역

(단위: 명)

연도	검찰처분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타관	기타	미제	합계
2013	341 (36.1)	47 (5.0)	35 (3.7)	87 (9.2)	47 (5.0)	337 (35.6)	31 (3.3)	10 (1.1)	12 (1.3)	947 (100)
2014	184 (41.9)	25 (5.7)	29 (6.6)	35 (7.8)	33 (7.5)	118 (26.9)	12 (2.7)	1 (0.3)	2 (0.6)	439 (100)
2015	21 (20.0)	8 (7.6)	7 (6.7)	7 (6.7)	1 (1.0)	48 (45.7)	9 (8.5)	2 (1.9)	2 (1.9)	105 (100)
2016	2 (28.6)	2 (28.6)	0 (0.0)	1 (14.2)	0 (0.0)	0 (0.0)	0 (0.0)	2 (28.6)	0 (0.0)	7 (100)
2017	2 (11.8)	0 (0.0)	4 (23.5)	4 (23.5)	0 (0.0)	2 (11.8)	0 (0.0)	5 (29.4)	0 (0.0)	17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54]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 아.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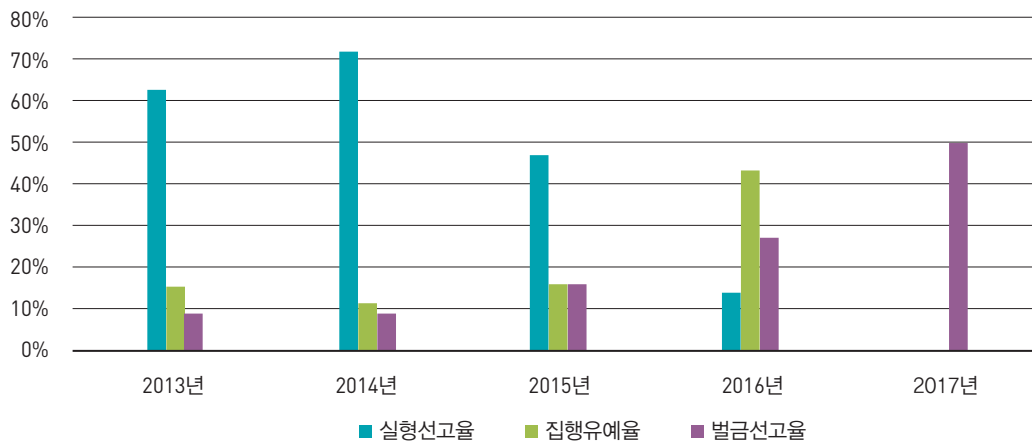
[표 3-100]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단위: 명)

구분 연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13	27	49	87	102	0	0	0	0	37
	(9.0)	(16.3)	(28.9)	(33.8)	(0.0)	(0.0)	(0.0)	(0.0)	(12.3)
2014	14	18	48	64	0	0	0	0	13
	(8.9)	(11.5)	(30.6)	(40.8)	(0.0)	(0.0)	(0.0)	(0.0)	(8.2)
2015	7	7	12	8	0	0	0	0	8
	(16.7)	(16.7)	(28.6)	(19.0)	(0.0)	(0.0)	(0.0)	(0.0)	(19.0)
2016	2	3	0	1	0	0	0	0	1
	(28.6)	(42.8)	(0.0)	(14.3)	(0.0)	(0.0)	(0.0)	(0.0)	(14.3)
2017	1	0	0	0	0	0	0	0	1
	(50.0)	(0.0)	(0.0)	(0.0)	(0.0)	(0.0)	(0.0)	(0.0)	(50.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55]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 자.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101]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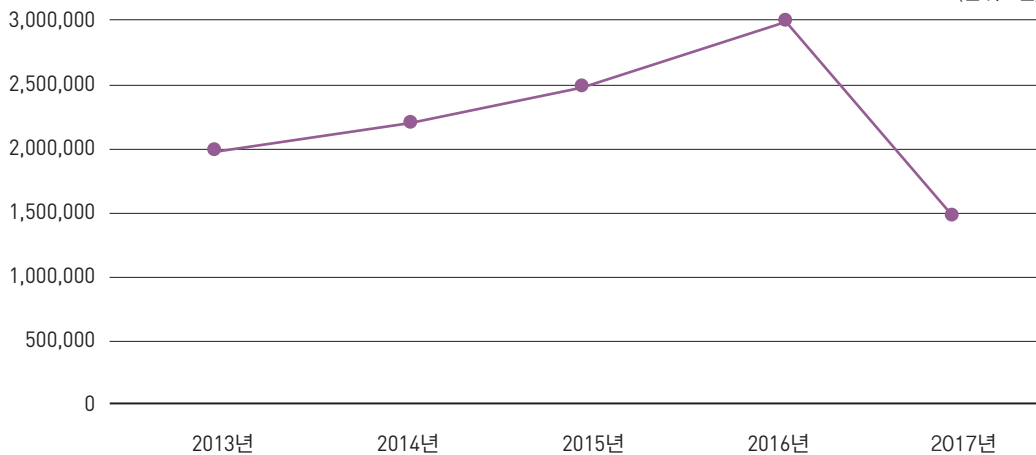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 원)
2013	0 (0.0)	0 (0.0)	2 (5.0)	10 (25.0)	28 (70.0)	2,025,000
2014	0 (0.0)	0 (0.0)	0 (0.0)	5 (21.7)	18 (78.3)	2,182,609
2015	0 (0.0)	0 (0.0)	0 (0.0)	2 (15.4)	11 (84.6)	2,500,000
2016	0 (0.0)	0 (0.0)	0 (0.0)	0 (0.0)	1 (100)	3,000,000
2017	0 (0.0)	0 (0.0)	0 (0.0)	1 (50.0)	1 (50.0)	1,500,0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56]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 차. 실행자·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표 3-102]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행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구분	실행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3		13.3	22.8
2014		17.7	23.4
2015		12.5	24.0
2016		14.2	0.0
2017		12.0	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카.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103] 환각물질 흡입사범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3		7 (17.5)	31 (77.5)	2 (5.0)	0 (0.0)	40 (100)
2014		2 (10.0)	17 (85.0)	1 (5.0)	0 (0.0)	20 (100)
2015		0 (0.0)	3 (100)	0 (0.0)	0 (0.0)	3 (100)
2016		0 (0.0)	0 (0.0)	0 (0.0)	0 (0.0)	0 (0.0)
2017		0 (0.0)	0 (0.0)	0 (0.0)	0 (0.0)	0 (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타.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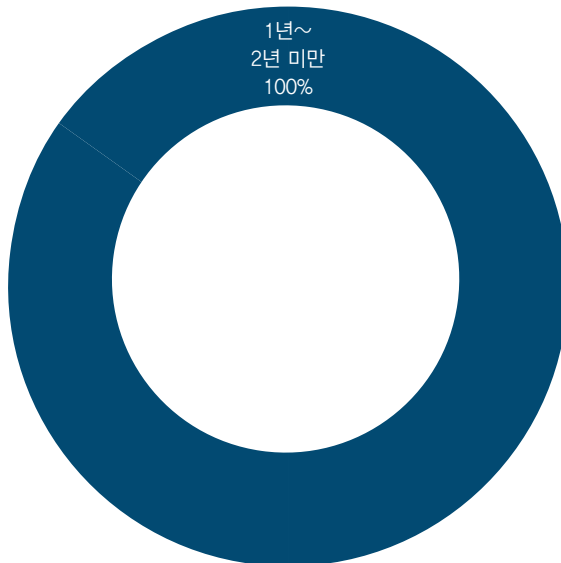
[표 3-104]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분포

(단위: 명)

기간별 연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13	81 (43.3)	93 (49.7)	8 (4.3)	3 (1.6)	2 (1.1)	187 (100)
2014	34 (38.6)	44 (50.0)	7 (8.0)	0 (0.0)	3 (3.4)	88 (100)
2015	11 (40.7)	14 (51.9)	2 (7.4)	0 (0.0)	0 (0.0)	27 (100)
2016	2 (33.3)	3 (50.0)	1 (16.7)	0 (0.0)	0 (0.0)	6 (100)
2017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57]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 5. 분석 결과

### 가. 최근 5년 간 환각물질 흡입사범 대폭 감소

-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2013년 862명이래 2017년 22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대폭 감소추세, 그 원인은 최근 대부분의 본드 제조업체가 소매용 본드 생산 시 환각 물질이 아닌 대체 물질로 제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나. 2017년도 환각물질 흡입사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령(아산화질소 흡입 등 처벌)’ 시행에 따라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6. 향후 대책

### 가. 환각물질흡입 폐해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 지자체 등은 중소형 마트,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분드, 니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필요

### 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 방지

- 아산화질소(캡슐 형)는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누구든지 손쉽게 구매가능하여 신속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1980~1990년대 사회문제로 비화된 ‘청소년 분드·부탄가스 흡입 유행’과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중 단속하여 유통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 라. 치료재활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재범 방지

- 환각물질 흡입사범 또한 잠재적 마약류사범으로 분류, 적극적인 치료재활제도 활용